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FEBUARY 1986 NO. 203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6. 2

(주)화승

30년 동안 연료비 없이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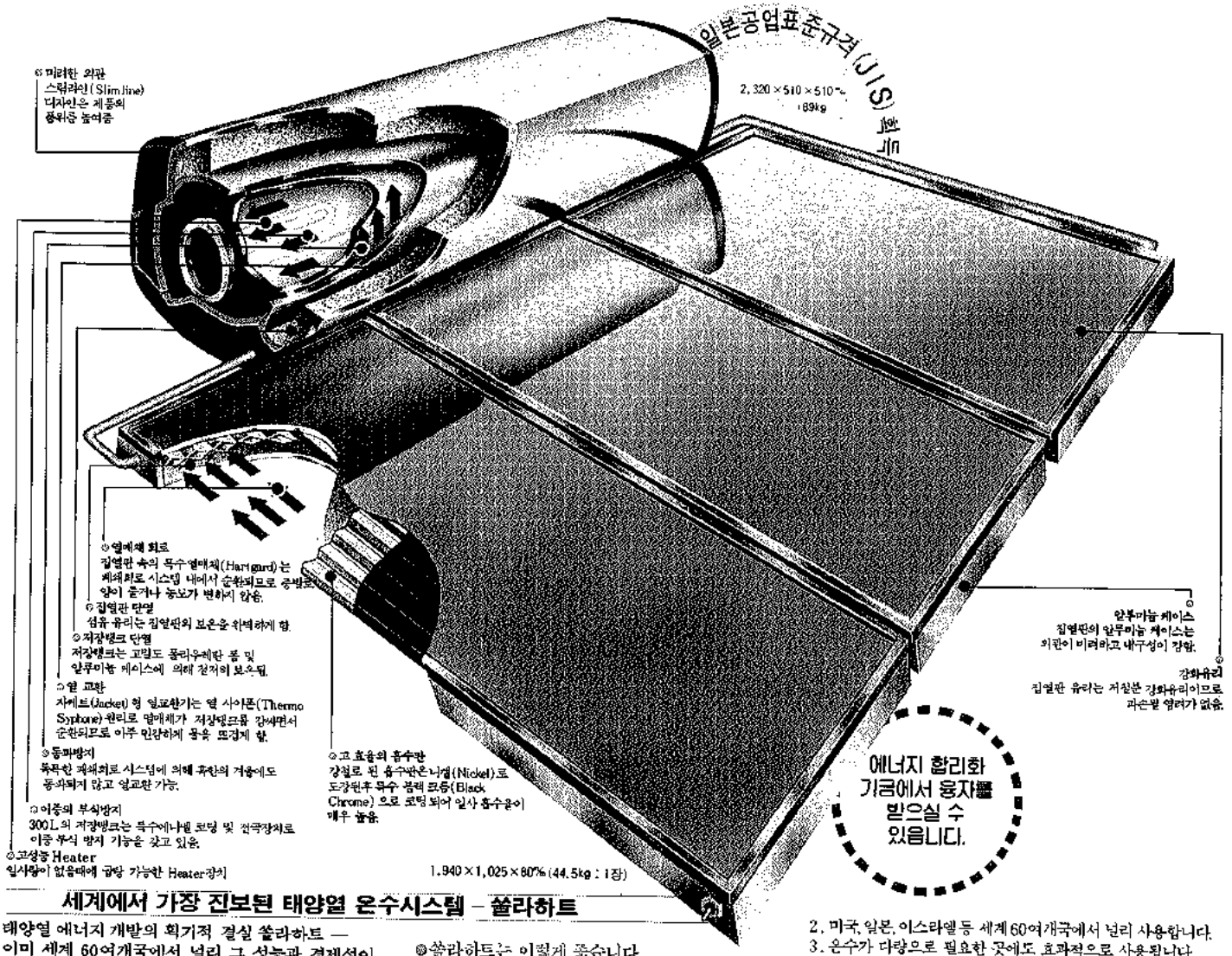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태양열 온수시스템 – 쏠라하트

태양열 에너지 개발의 획기적 결실 쏠라하트 —
이미 세계 60여개국에서 널리 그 성능과 경제성이 입증되었읍니다.
쏠라하트는 시공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던 기존의 태양열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단 하루만에 간단히 설치가 끝나는 사계절 태양열 온수시스템 쏠라하트 —
무더운 중동에서도, 혹한의 북구에서도, 쏠라하트는 태양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30년동안 연료비없이 뜨거운 물을 공급해 줍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택의 품위와 경제성을 위해, 쏠라하트를 설치하십시오.
국가의 외화절감 시책에도 한 몫을 하시게 됩니다.
호주 정부의 디자인상을 받은 쏠라하트가 지붕위에서 아름답게 빛나면, 그때부터 뜨거운 물은 무료입니다.

◎쏠라하트는 이렇게 좋습니다.

경제성
1. 기존 주택에도 단 하루만에 간단히 설치됩니다.
2. 하루 2~3시간의 일조량으로 50℃~80℃의 온수 300ℓ를 공급합니다.
3.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내구성
1. 수명이 30년이나 됩니다.
2. 별도의 물탱크, 모터가 필요없기 때문에 전혀 고장이 없읍니다.
3. 부동액 사용 및 철저한 보온설계로 혹한에도 동파되지 않습니다.
4. 장마철 등을 대비한 보조전기 히터가 내장되어 있읍니다.

선진성
1. 30년의 연구·노력으로 완성된, 공해없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2.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세계 60여개국에서 널리 사용합니다.
3. 온수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품질보증 및 아프터써비스
◎ (주)화승의 5년간 품질보증 및 철저한 아프터써비스
◎ 소비자 상담실 운영 : 546-7471~2

세계적인 태양열 온수시스템

쏠라하트

본사 : ◎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34-7 동양빌딩 (대표) ☎757-8711, 757-9711 ◎부산 :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6가69번지 ☎462-1421~8 ◎삼성전시장 : 서울546-7471~2
대리점 : 서울(서부)313-8688, 8383, (동부)424-9501/2, 인천522-9330, 수원32-1486~8, 대전253-8989, 254-4949, 춘천53-3442, 부산83-9342, 82-6429, 광주365-6766, 이리52-5919, 제주53-7531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FEBUARY 1986. NO. 203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發行人=吳雄錫
編輯=出版事業部

編集委員會

委員長 安將元
副委員長 金麟
委員 姜哲求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尹錫祐
委員 呂鴻九

發行=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山61-3
郵便番號=135
電話=서울(02) 交 581-5711(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第라-1251
登錄日字=1967年 3月23日
U.D.C.69/72(054-2) : 0612 (519)
印刷人=全允珪
(成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一. 建築士는 造形創作 藝術人으로서 創意力을 發揮하여 建築文化 暢達에 이바지 한다.

一.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業務를 誠實히 遂行한다.

一.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다한다.

一. 建築士는 友愛와 信義를 바탕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同하여 名譽와 品位를 保全한다.

一. 建築士는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國家建設의 先鋒이 되어 國家와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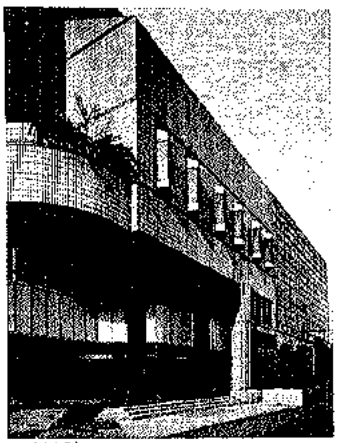

표지설명
코오롱스포렉스
설계 : 조동영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사진 : 임정의

1986年 2月號 **目次**

會員作品

코오롱스포렉스 趙東榮
박시우치과의원 金重業
보광동K교수댁 朴研心
대해빌딩 田燦珍

會員 PLAZA

4 論壇 / 노력한 자에게 그 댓가를 李永熙
20 李圭孝建設部長官 就任辭
22 協會消息
32 전국복지회장간담회 "福祉會則統一化와 年金制度研究를"
44 北京紀行 1 崔昌奎
48 54층건물구조계산을 하면서 李昌男
52 感傷紀行 5 金錫澈
55 대화의 광장 / 우리에게 전문건축가 시대가 올것인가? 金善洋
63 정화칼럼 / 우리와 사회 趙貞鎬
71 일하며 생각하며 / 출발 金武彦

研究論文

56 都市環境分科委員會研究報告 2 / 造景事例調査研究
64 古建築研究 2 秋史故宅 李應默
72 建築照明 3 자연채광을 이용한 照明에너지節約 金正泰
78 建築藝術論考(Ⅱ) 崔椿煥
82 建築設備基礎 4 空氣調和負荷計算法 金信道
85 設備分科委員會研究 / 病院建築의 空氣調和 조닝計劃 孫章烈

資料·其他

70 에너지절약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88 建築改定法令
91 會員動靜
93 新入會員
96 建築士會館 賃貸案內

1986年 2月 15日 發行

■ 논단

노력한자에 그 댓가를

To makes compensation for a manual workers

李 永 熙

「정의사회구현」이란 용어는 이젠 우리 귀에 아주 친숙하고 언제 어디서나 즐겨 쓰는 말이다. 이 말이 뜻하는 소박한 의미는 노력의 댓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 노력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개체이든 조직체의 단위이든 간에 그가 기울인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곧 선진사회의 질서이고 도덕적 규범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오늘만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한낱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신입사원은 몇 년 후에는 과장이 되고 10년 후에는 부장이 되어 축적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미래의 자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된 노고를 즐거이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모 지방 시청의 주관으로 종합문화회관의 설계공모가 있었다. 주관처의 인력부족 탓인지 설계치침이 극히 원초적이었지만 경향 각지에서 많은 건축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출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당해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축작품을 심사하는데 건축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시청관계자와 서양화가, 그 곳 언론인들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개인이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곳 행정가는 탁월한 판단력을 소지하신 분인가 보다. 문화회관이란 건축은 어느 용도의 건축물보다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을 보고 심사하였을까? 그림 한장이었을까? 지어진 건축물은 비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문화계 인사라면 다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건축사라는 직업의식이 앞선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축에 대한 이 사회의 이해부족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례야말로 현상설계 공해다. 작품의 우열을 가름하기 전에 출품자는 심사능력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심사를 받음으로 해서 상호의 발전이 도모되고 신뢰성 있는, 다시 말해서 정의사회의 풍토가 정착될 것이다.

몇달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애를 써서 성안된 작품이 전연 의외의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난도질 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품자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심사를 하여 정확한 심사기록을 공개하는 길만이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출품한 작가들 에게 노력의 댓가를 보상하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설계경기의 근본목적은 좋은 작품과 능력있는 작가를 발굴하는데 있다.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최측의 객관성 있는 면밀한 배려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설계경기(현상공모)방식이 한낱 설계자 선정을 위한 수단으로만 남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건축인들은 참으로 피곤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의 낭비는 결코 생산적이 못될 것이며 유능한 인재 발굴의 길은 멀기만 하다. 건축은 사회의 공기이며, 그 시대 그 민족의 문화를 대변하는 매체가 된다는 논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진데 건축에 대한 이해부족은 우리들 건축사들에게 창작의욕을 상실케 하는 직접손실도 손실이거니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적 유산을 고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결코 건축사들의 의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 투자가나 시행청의 깊은 이해의 바탕이 없이는 한낱 종이조각으로 창고속에서 영원히 사장되고 말 것이다. 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전문성을 상호 존중해 줄 때 그 사회야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진 사회의 질서가 서게되지 않을까?

설계란 길을 택해서 20여년간 한 우물을 파 왔고 앞으로도 계속 외길을 걷겠지만 불행히도 나는 아직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나와 호흡을 같이 하는 보다 젊은 소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은 더욱 안타깝다. 건축에 대한 양식과 이해가 깊은 「클라이언트」를 운 좋게 만났다고 기뻐한 것도 한순간, 얼마 안 가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사례가 얼마나 허다한가. 의뢰자측의 최고경영자가 인사이동됨에 따른 계획변경 내지 내용변경으로 인한 이중 삼중 작업을 몇번이나 되풀이 하였는가. 조령모개의 법령조례에 민감할대로 민감해져야 하는 건축사라는 직업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불확실한 작업을 연속해야 하는 허울좋은 개살구인지도 모르겠다. 전문두뇌를 활용하는 직업인에게 노력한 시간에 비례하여 그 댓가가 보상되는 사회적 통념이 정착되는 길은 그렇게 멀고도 험난한 길인가?

지난 20여년간 우리 주변의 건축의 양적인 팽창은 그야말로 초능력적이었다. 무계획한 양의 흐름속에서 파생된 뼈아픈 시행착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한다. 성급한 결정권자는 관계 분야의 전문인들의 의침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고 전문인들 또한 허약한 체질을 스스로 보강치 않았다고 본다.

지금 건축계의 일반 여론으로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실패작의 표본이라고들 한다. 국회의사당 건물이 포용하고 있는 공공성과 상징성에 대한 건축적 의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국회의사당 설계경기 공모요강이 지상에 발표되었을 때 당시의 건축계에서는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명경기방식과 일반공모를 병행한 것 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나 당선작에게 저작권과 실시설계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당국의 강한 고집이 오늘의 세평을 감수해야 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생각된다. 국가적 건축이니 만큼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된다는 의도는 탓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배가 되고 말았다.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하는 실패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노력의 댓가는 반드시 노력한 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반추해 본다.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03 호
구입년월일	1988. 3. 7.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會員作品

코오롱스포렉스
KOLON SPOLEX

趙 東 榮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박시우치과의원
PARK'S DENTISTRY BLD.

金 重 業
(주)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보광동K교수택
BOKWANGDONG K'S RESIDECE

朴 研 心
건축사사무소 장원

대해빌딩
DAI HAI BUILDING

田 燦 珍
건축사사무소환경동인

KOLON SP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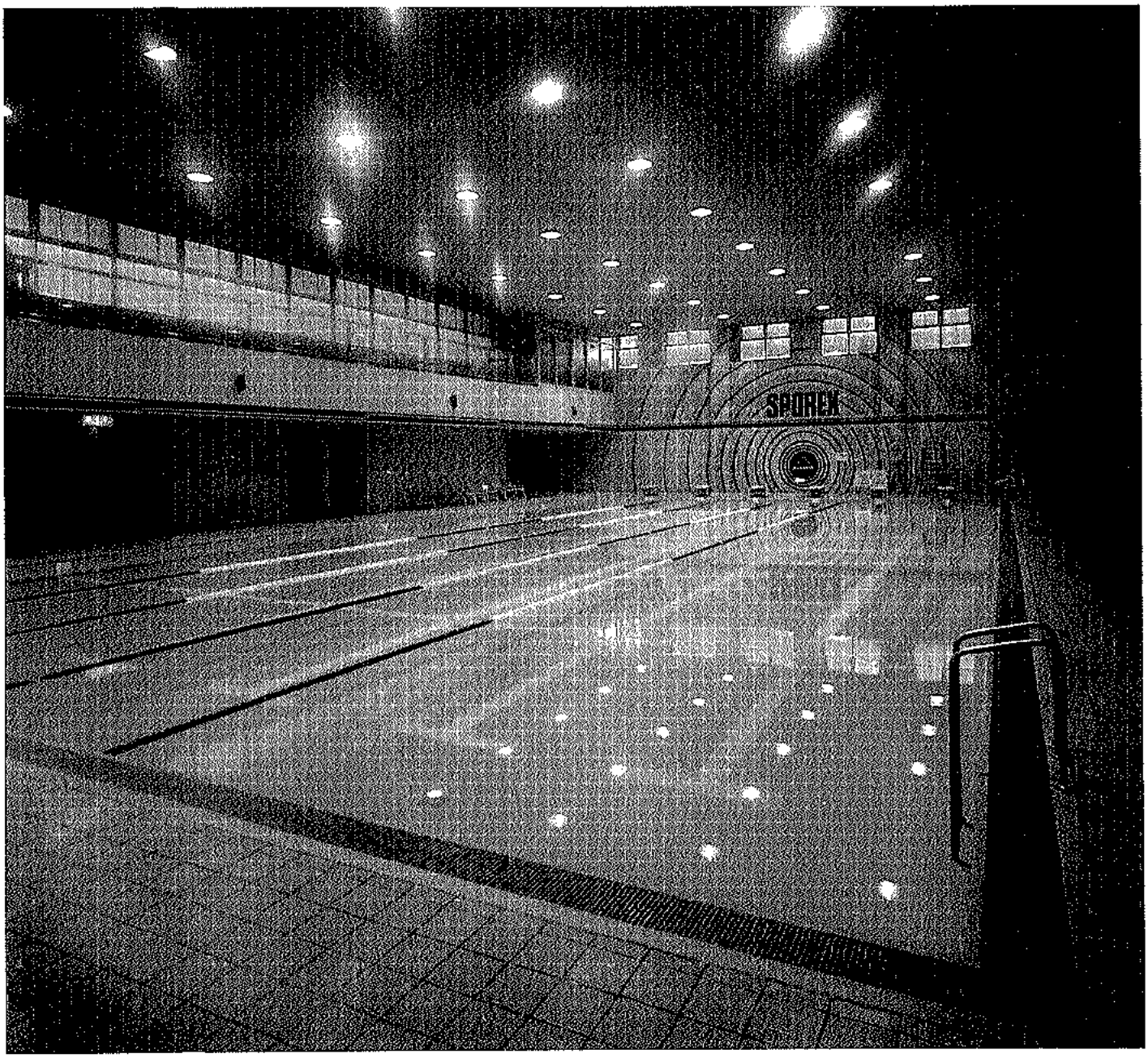

會員作品1

코오롱스포렉스
KOLON SPOLEX

趙東榮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Dong Young

□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대지면적 : 3.322㎡
건축면적 : 1.632㎡
연 면 적 : 9.228㎡
규　　모 : 지하3층, 지상4층
건 폐 율 : 49.1%
용 적 율 : 144%
외부마감 :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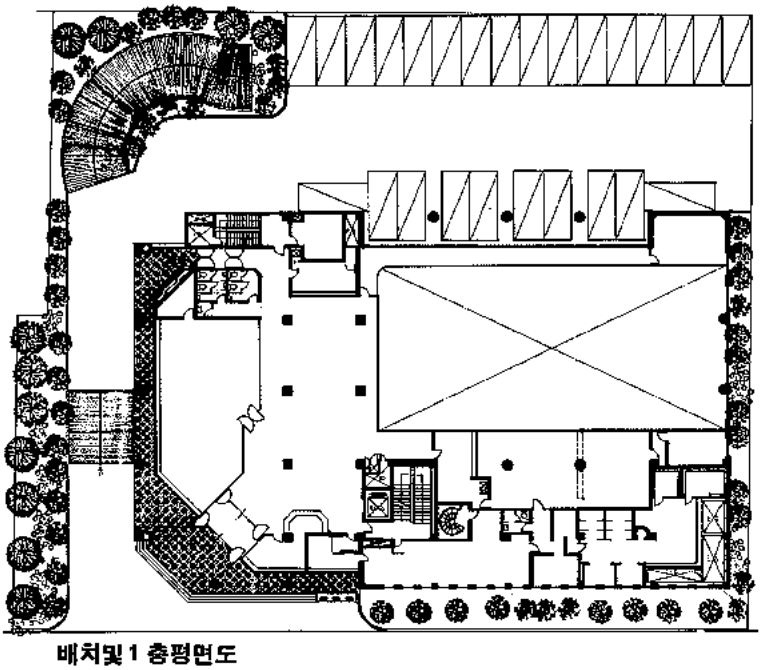

배치및1층평면도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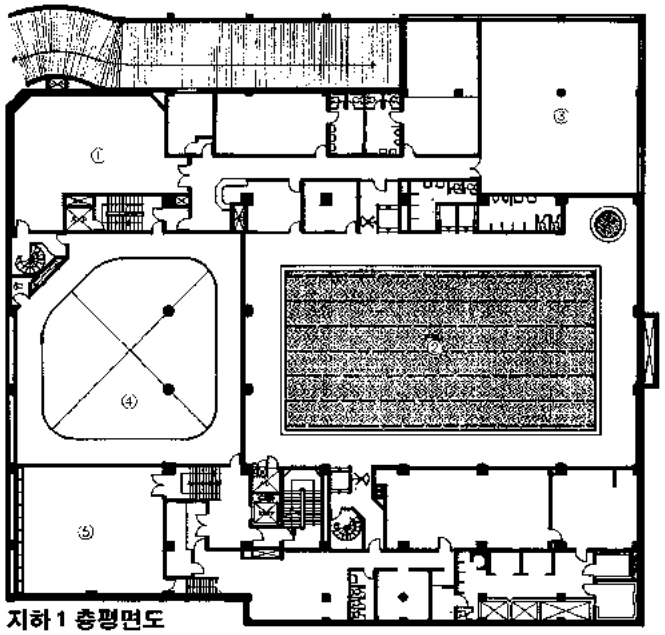

지하 1 층평면도

① 의원 ②수영장 ③어린이체련장 ④조깅트랙 ⑤체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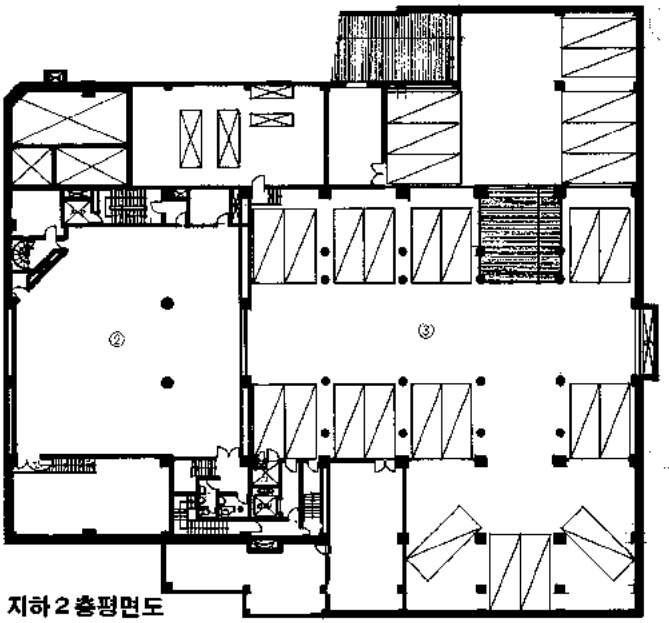

지하 2 층평면도

①의무실 ②체련장 ③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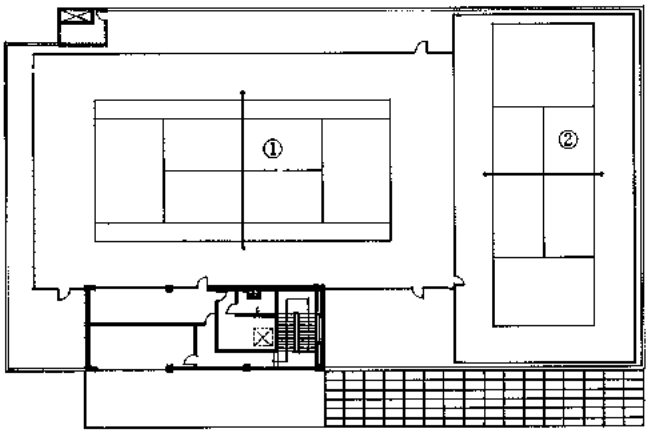

①복식테니스장 ②단식테니스장

옥탑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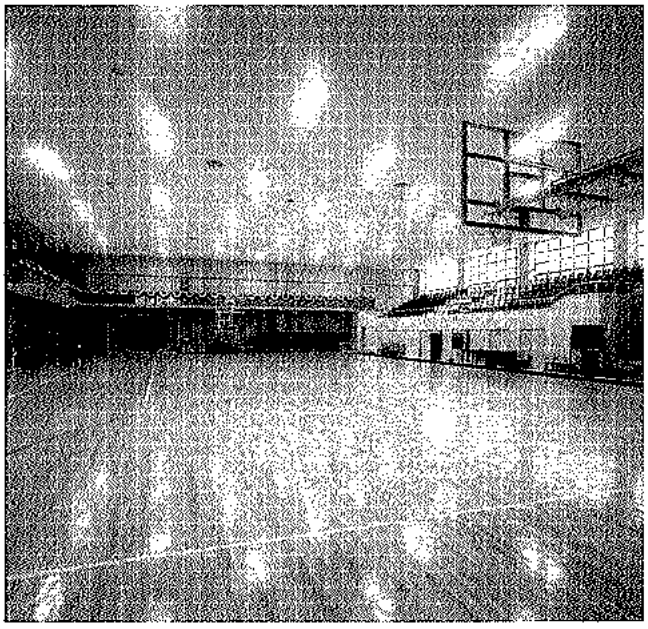

농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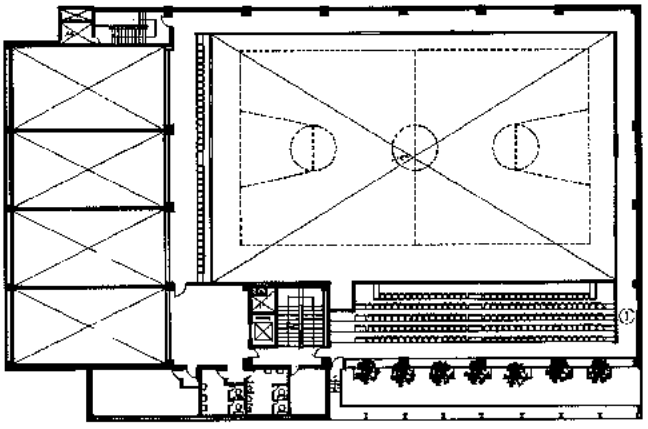

①관람석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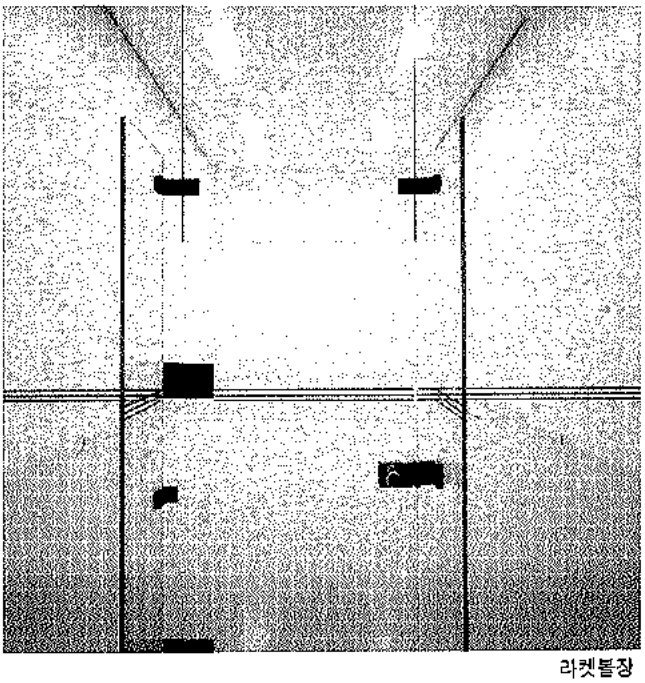

라켓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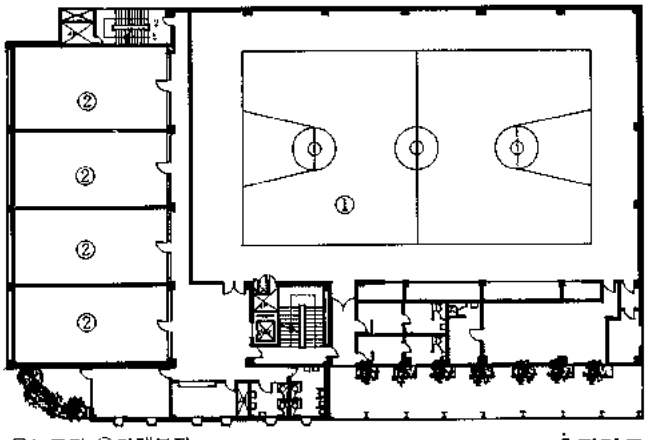

①농구장 ②라켓볼장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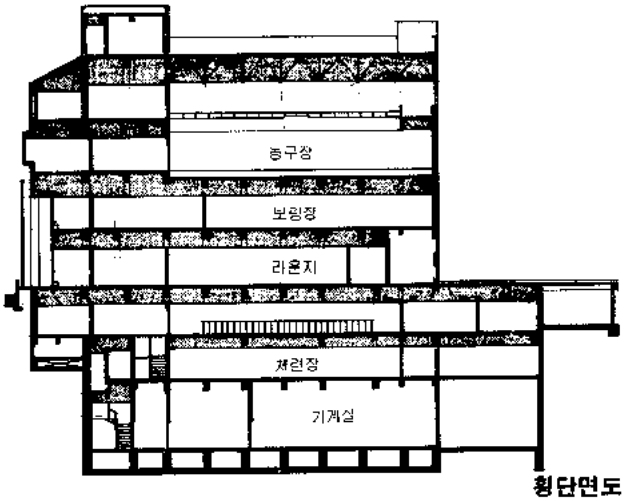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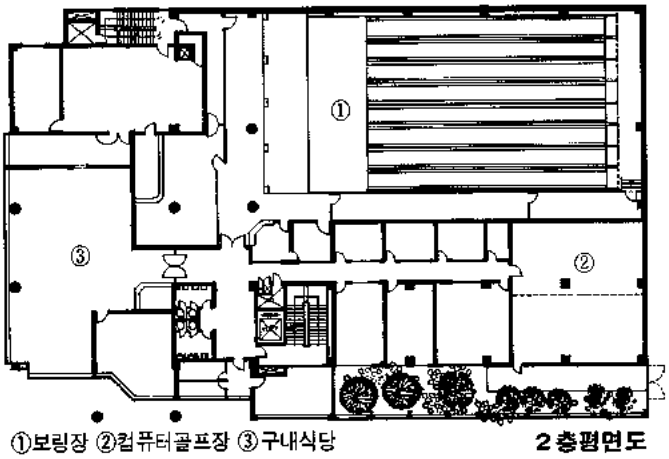

①보링장 ②컴퓨터골프장 ③구내식당

2층평면도

會員作品 2

박시우치과의원

Park,Si Woo Dentistry Building

金重業 / (주)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ung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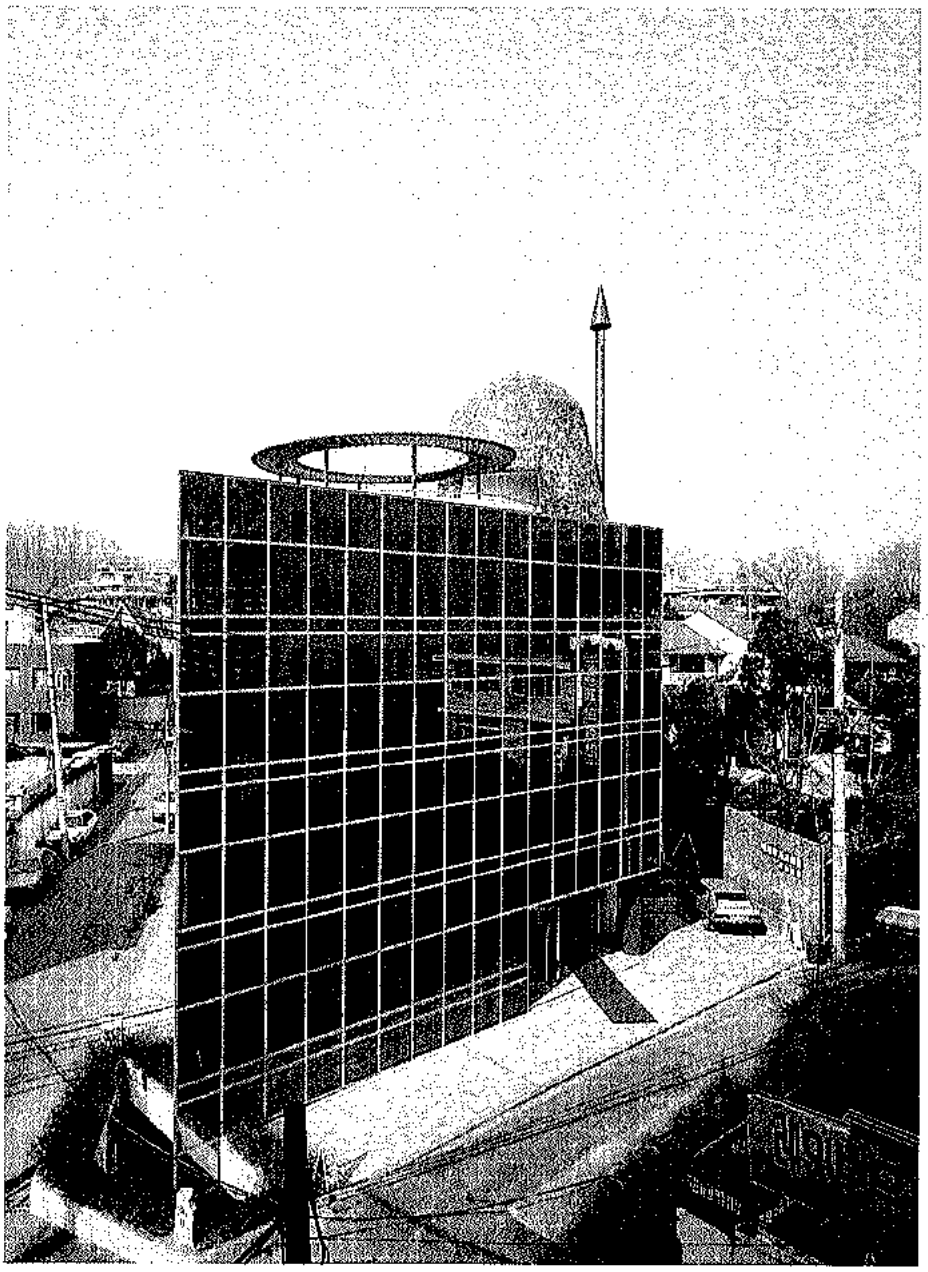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종로구 신문로 2 가
대지면적 : 377.2㎡
건물규모 : 지하 2 층, 지상 4 층
건물용도 : 의원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 169.05㎡
연 면 적 : 970.32㎡
건 폐 율 : 44.87%
용 적 율 : 167.239%
주차대수 : 7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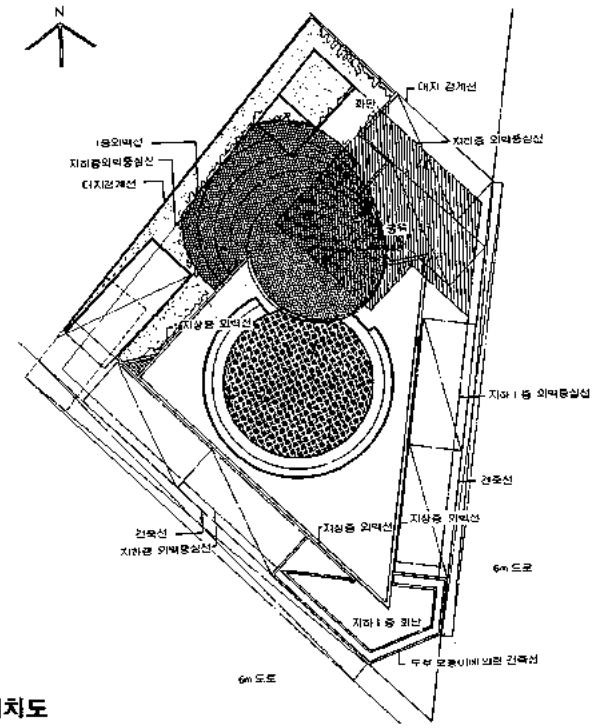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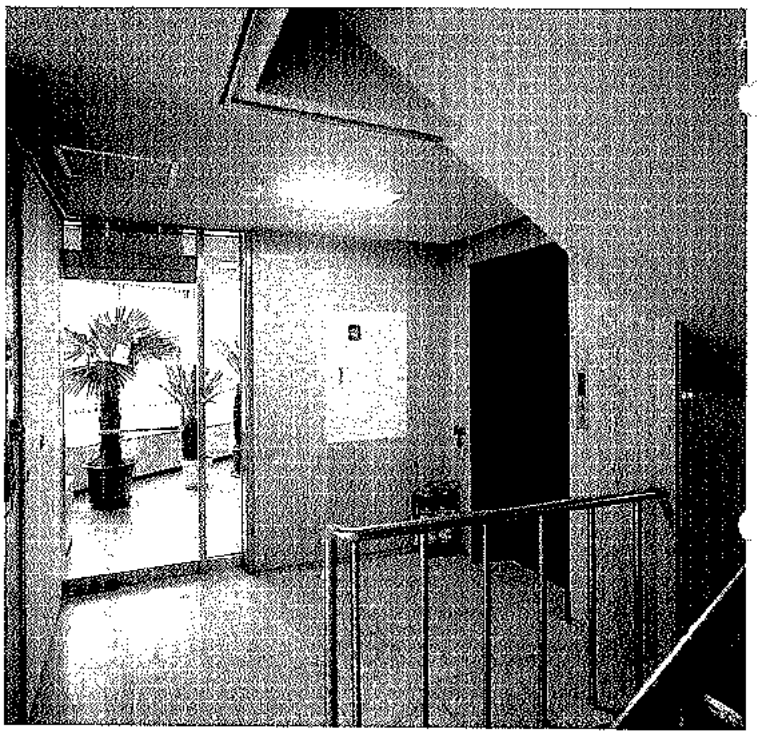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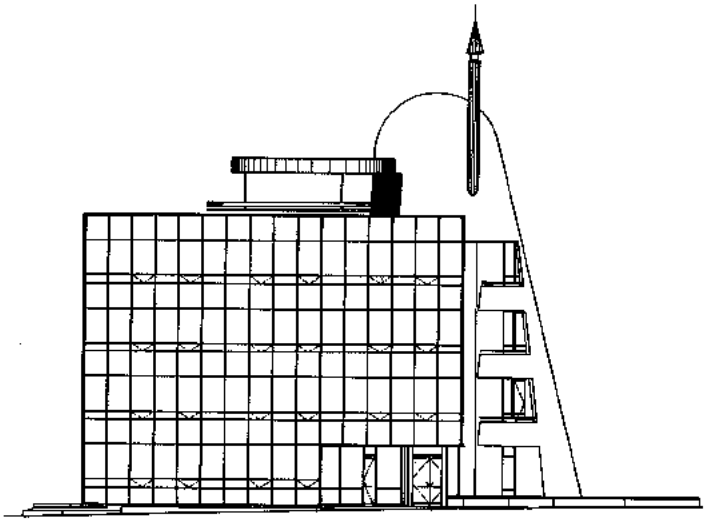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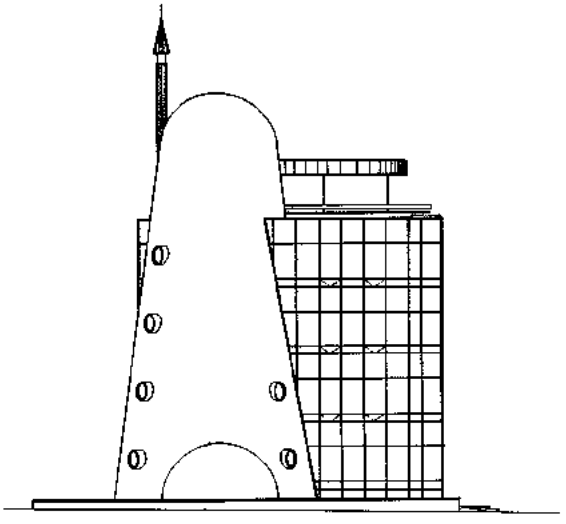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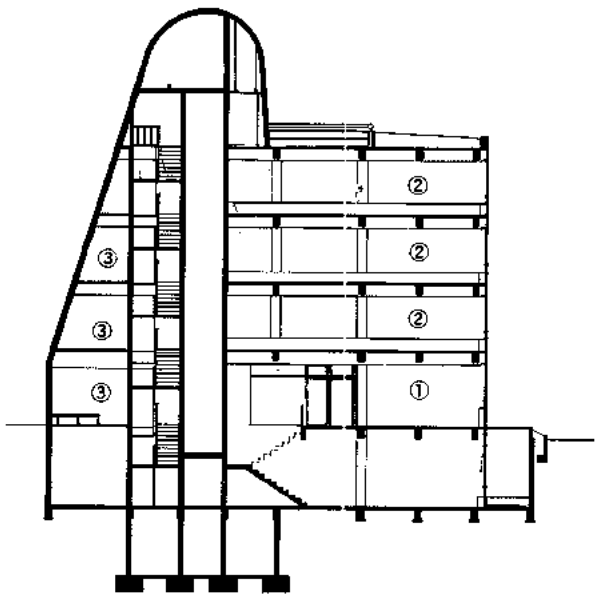

①근린생활시설 ②의원 ③계단실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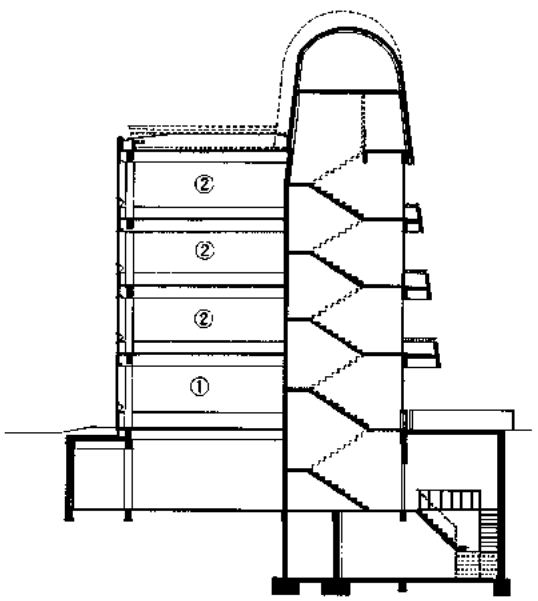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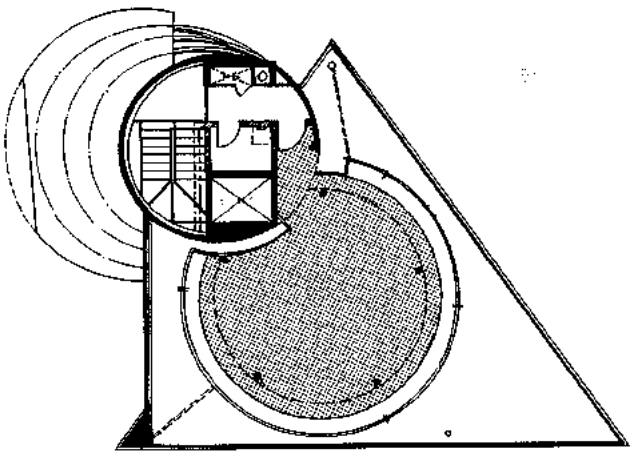

옥탑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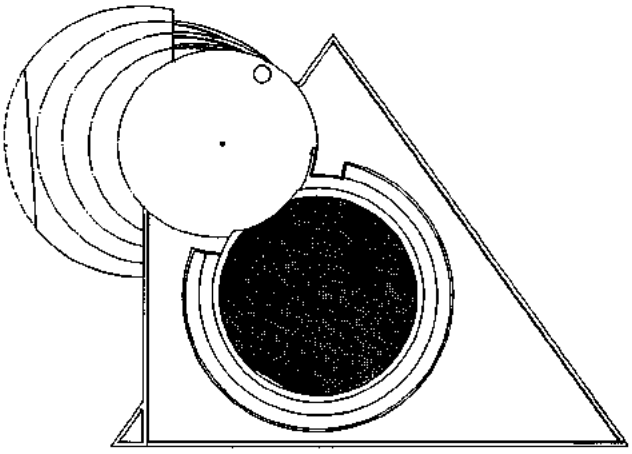

지붕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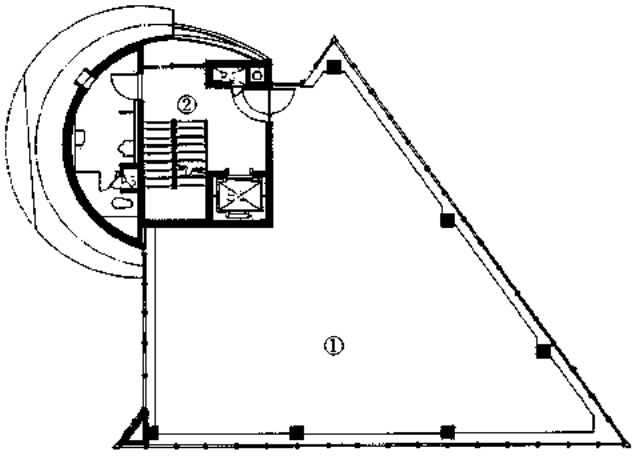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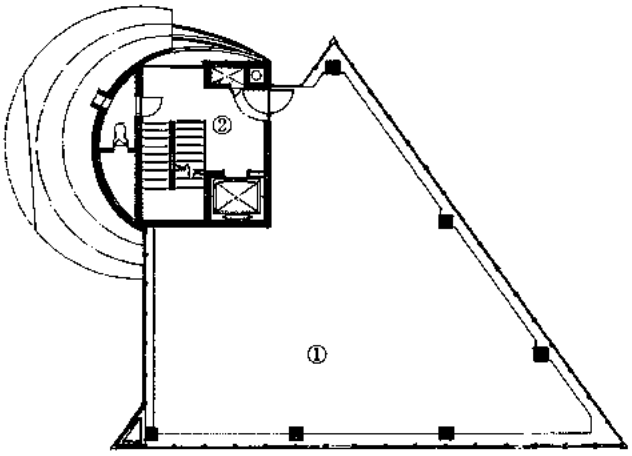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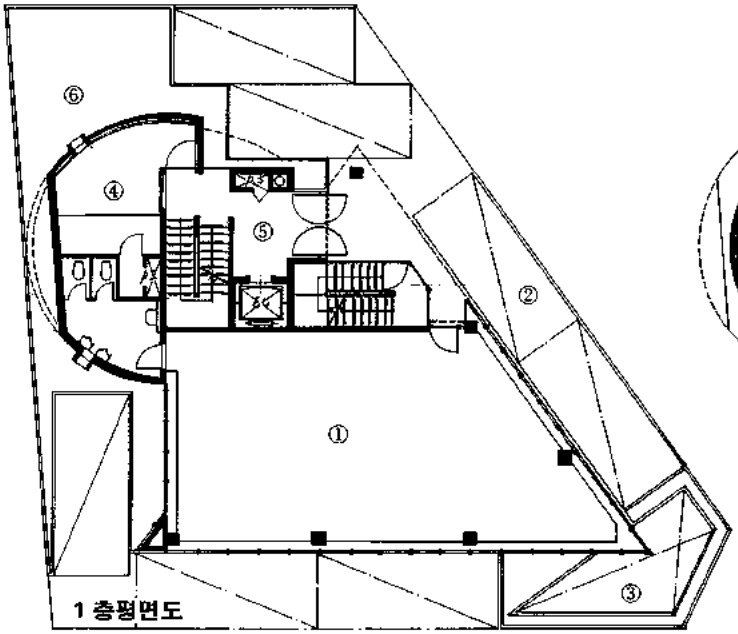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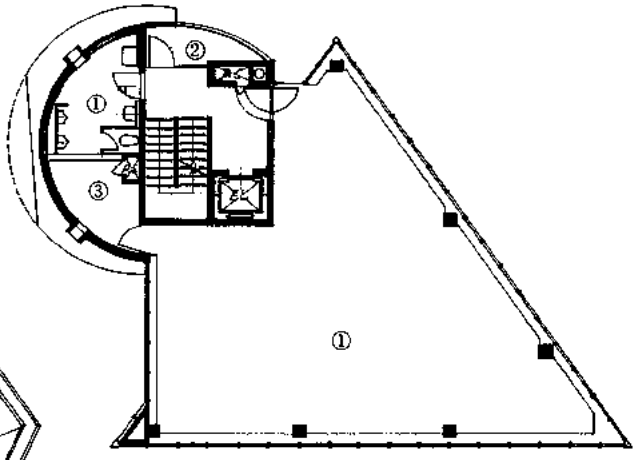

2층평면도

①근린생활시설 ②계단실 ③선큰가든 ④관리실 ⑤현관홀 ⑥화단 ⑦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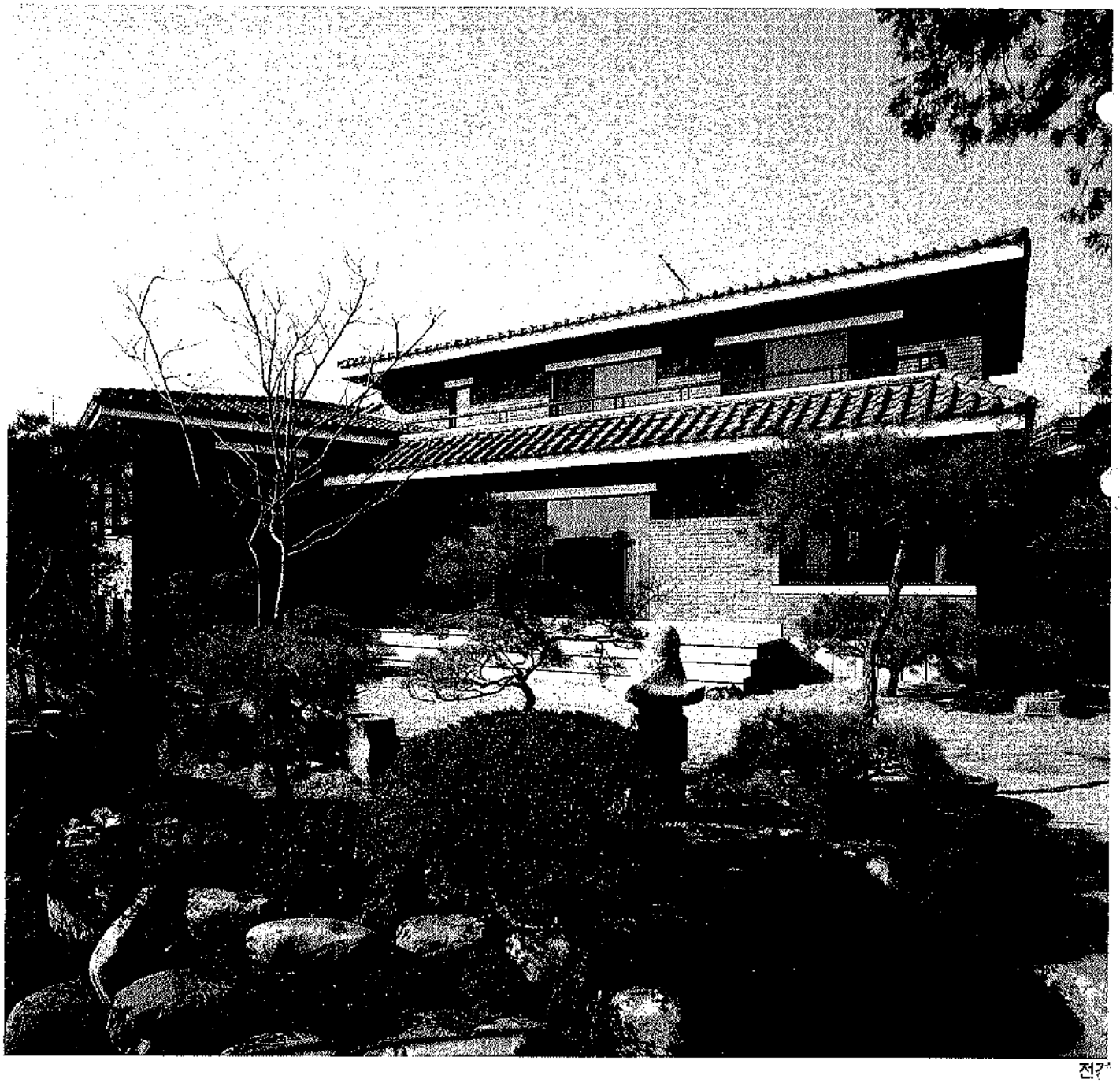

전경

會員作品 3

보광동K교수댁

BOKWANGDONG K'S RESIDENCE

朴研心 / 건축사사무소장원
Designed by Park, Yeon S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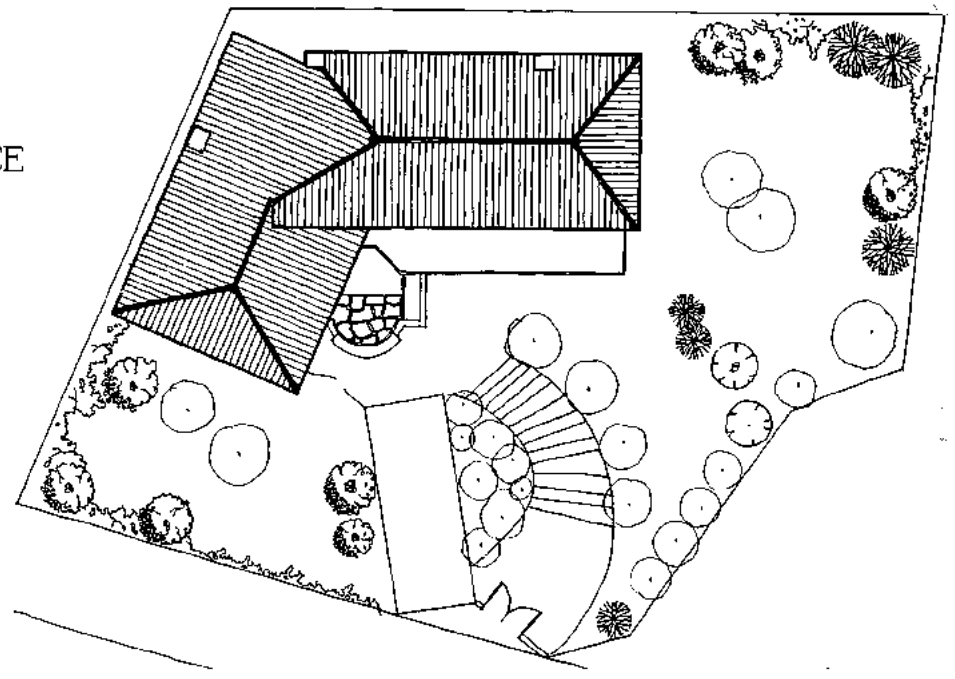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대지면적 : 466.20㎡
건물면적 : 274.77㎡
건 폐 율 : 29.02㎡
용 적 율 : 42.78㎡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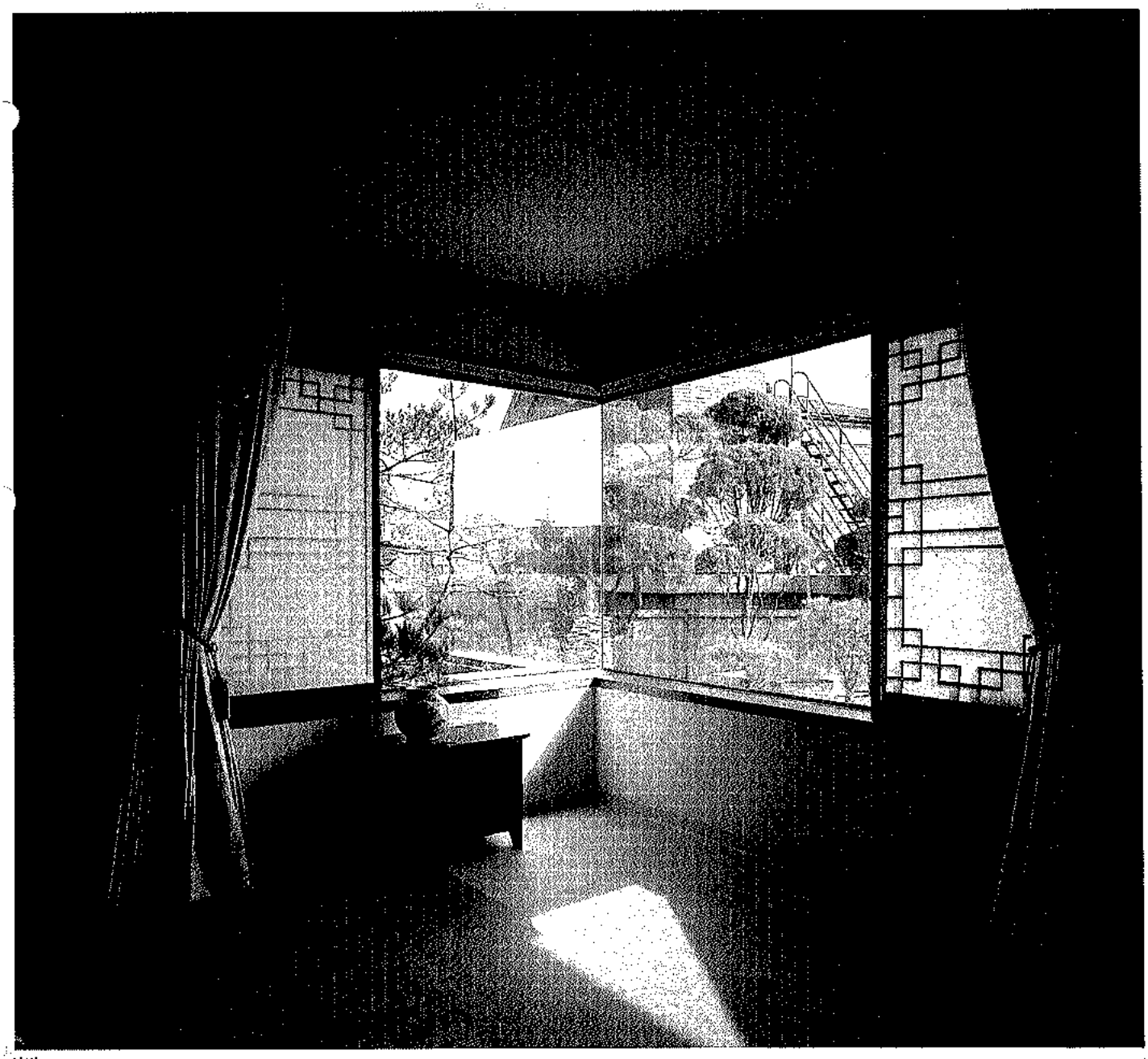

안방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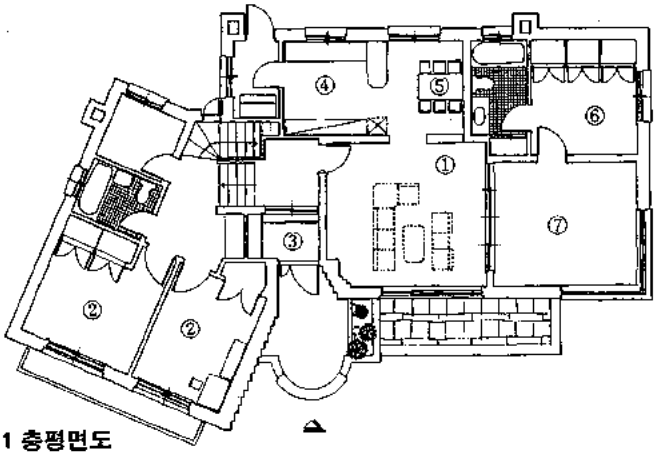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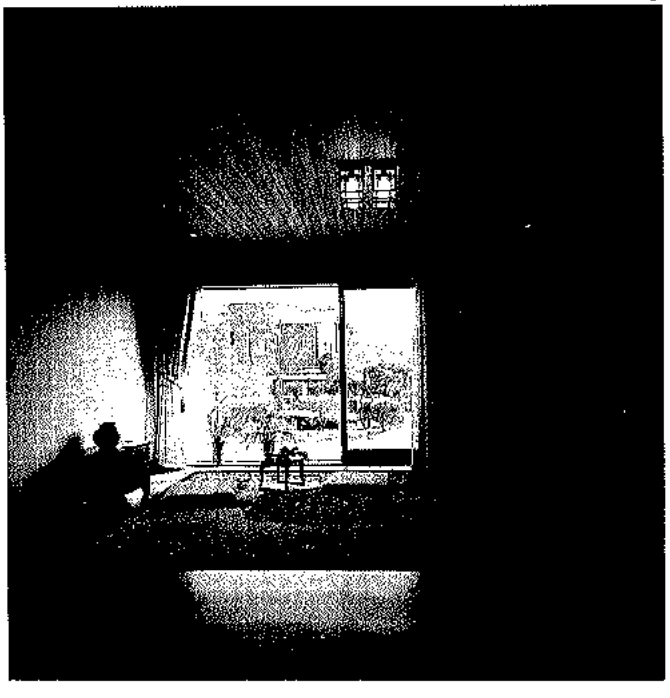

①거실 ②자녀방 ③현관 ④부엌 ⑤식당 ⑥부부침실 ⑦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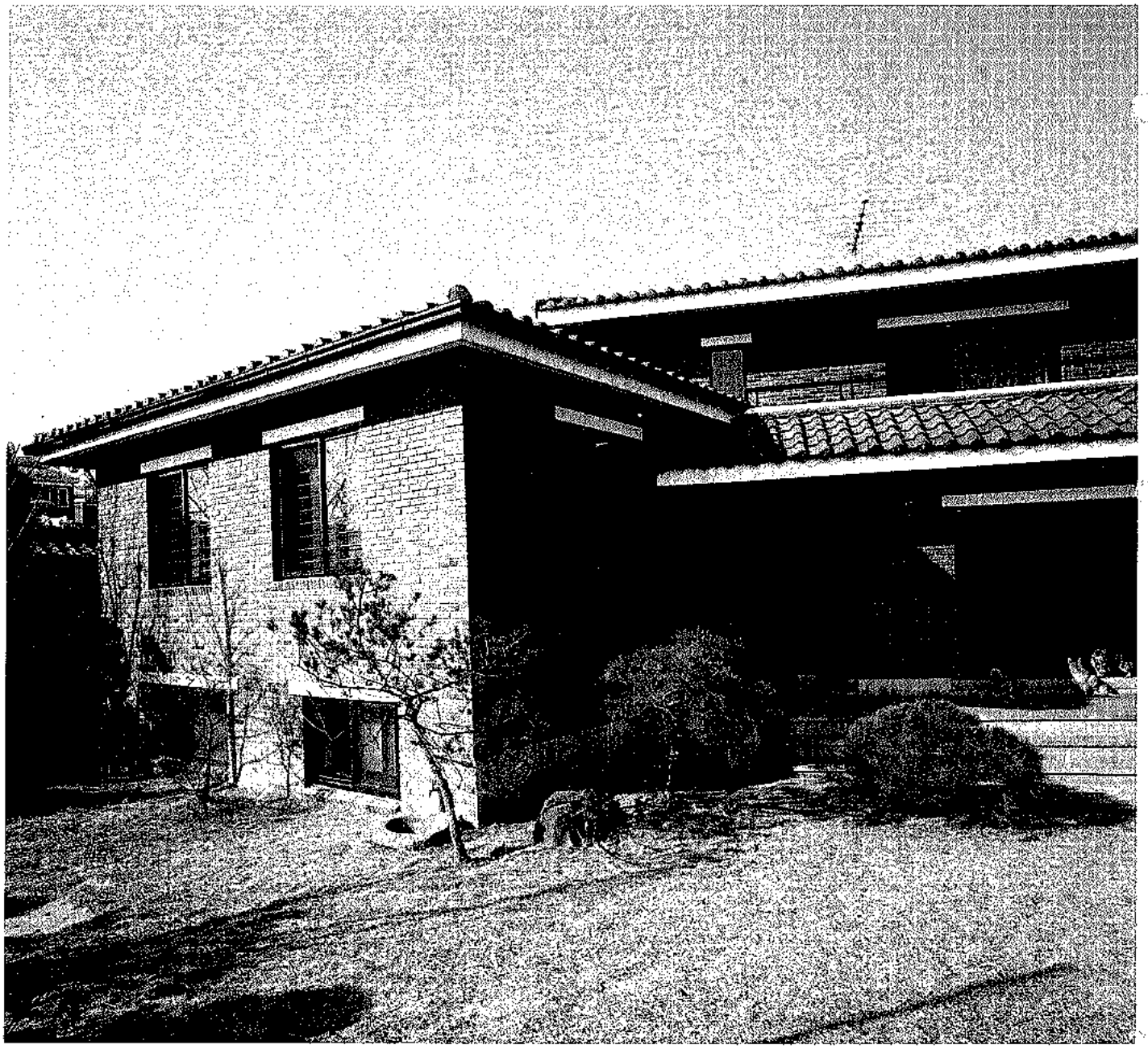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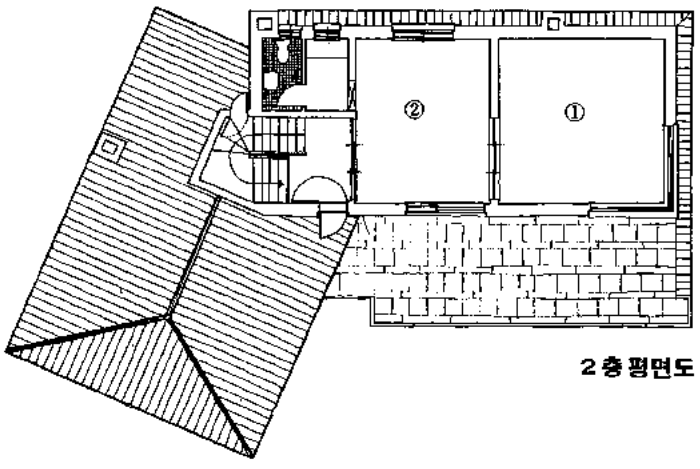

2층평면도

①서재 ②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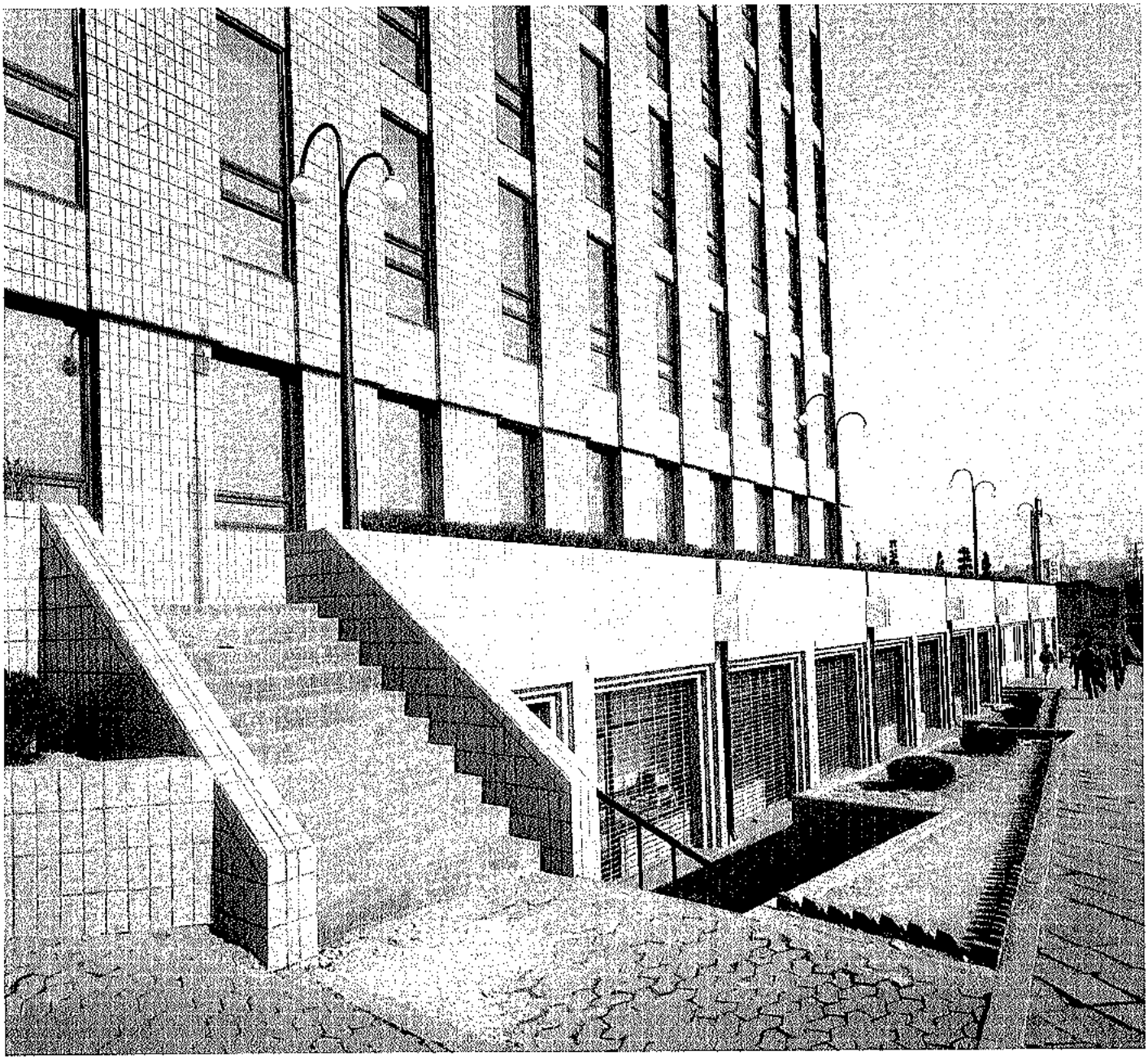

會員作品 4

대해빌딩
DAI HAI BUILDING

田燦珍 / 건축사사무소환경동인 회운
Designed by Chun, Chan-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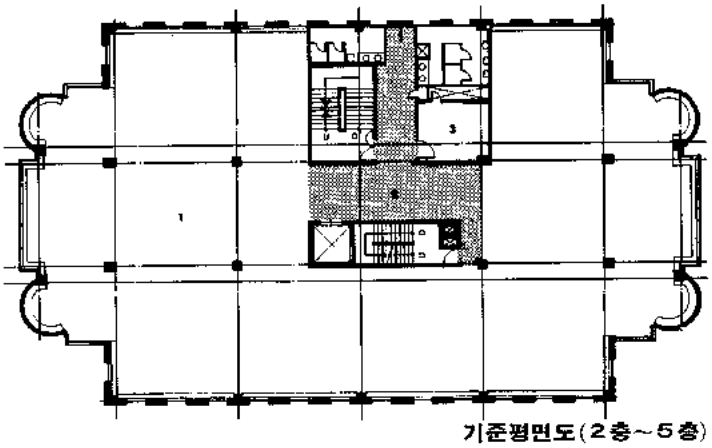

기준평면도(2층~5층)

□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대지면적 : 1,924㎡ (582평)
건축면적 : 809㎡ (245평)
연 면 적 : 5,644㎡ (1,707평)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건 폐 율 : 42.06%
용 적 율 : 209.34%
외부마감 : 타일마감 12㎜ 페어그라스

①사무실 ②홀 ③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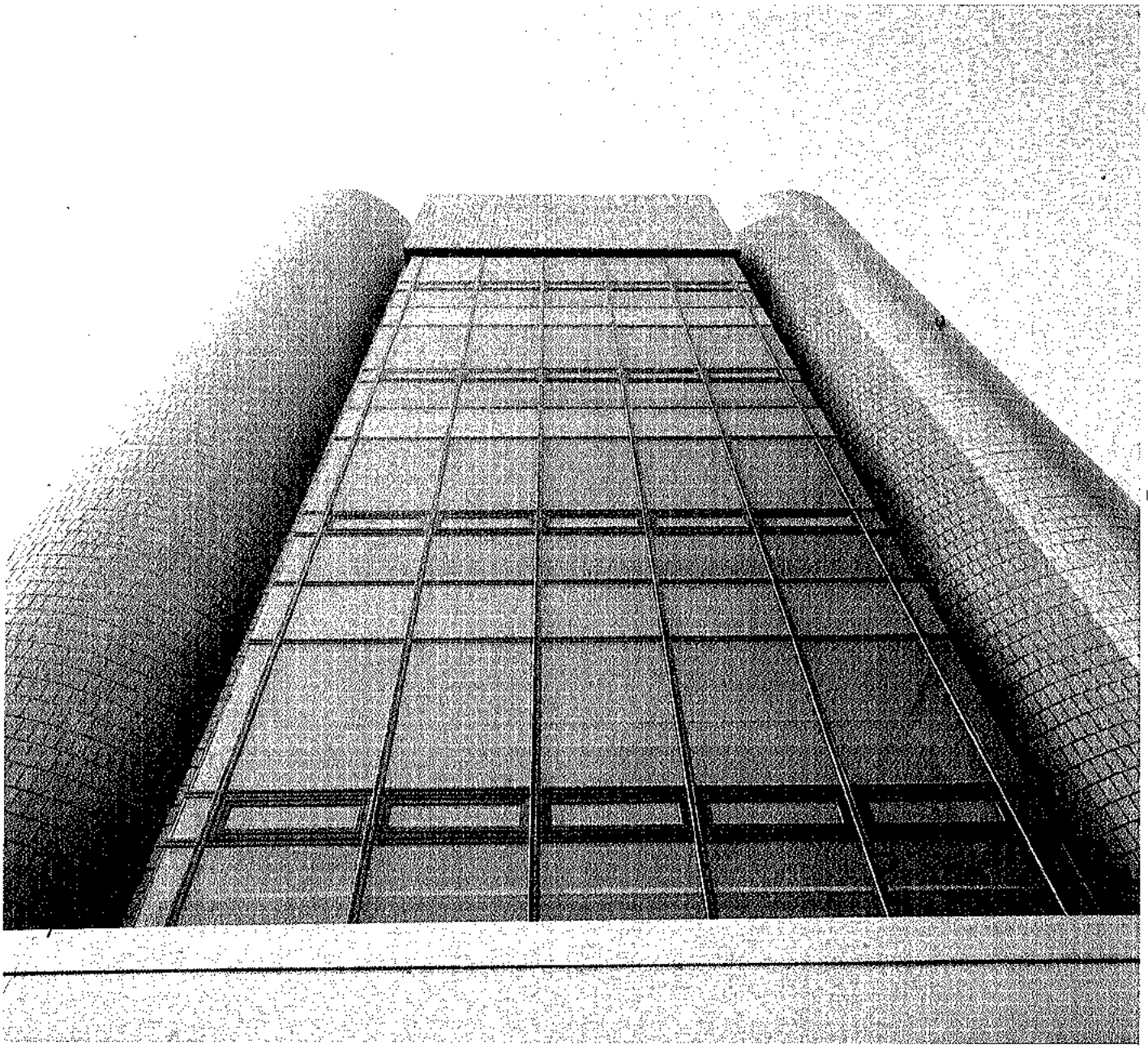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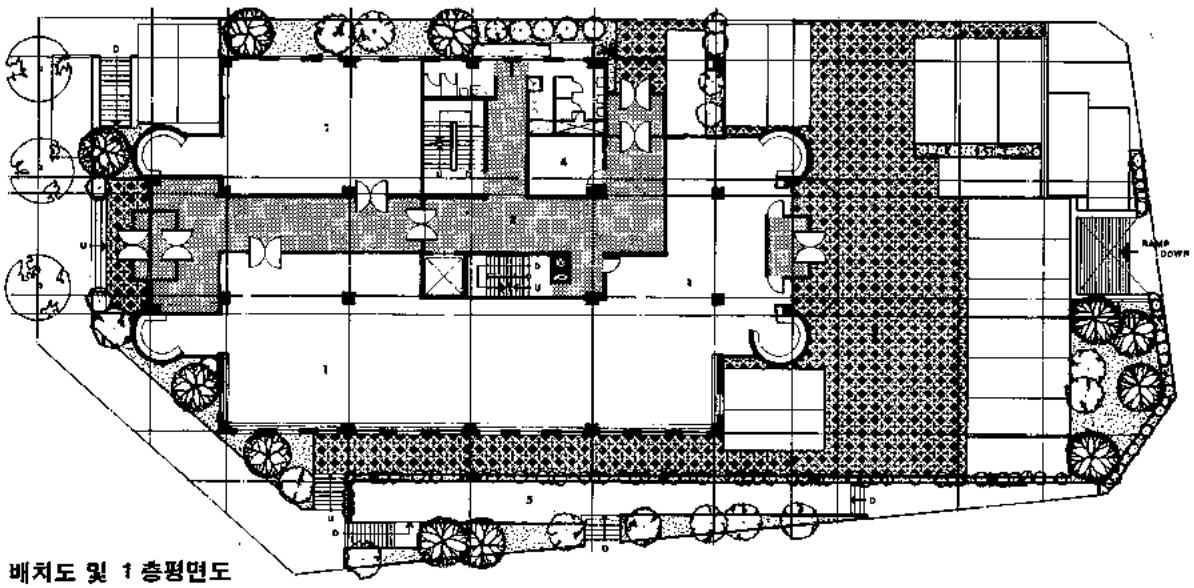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① 점포
② 홀
③ 옥외주차장
④ 경비실
⑤ 아케이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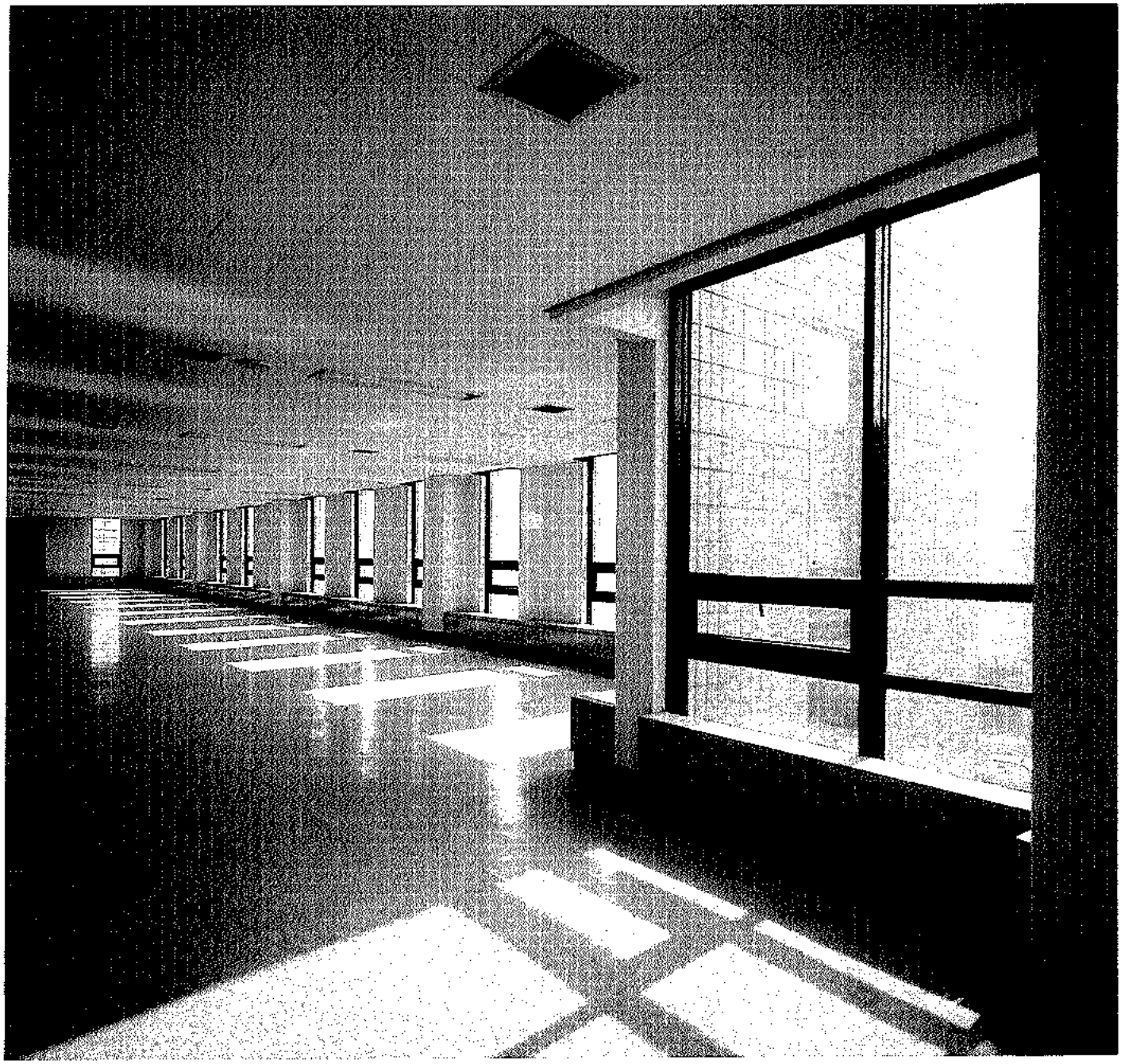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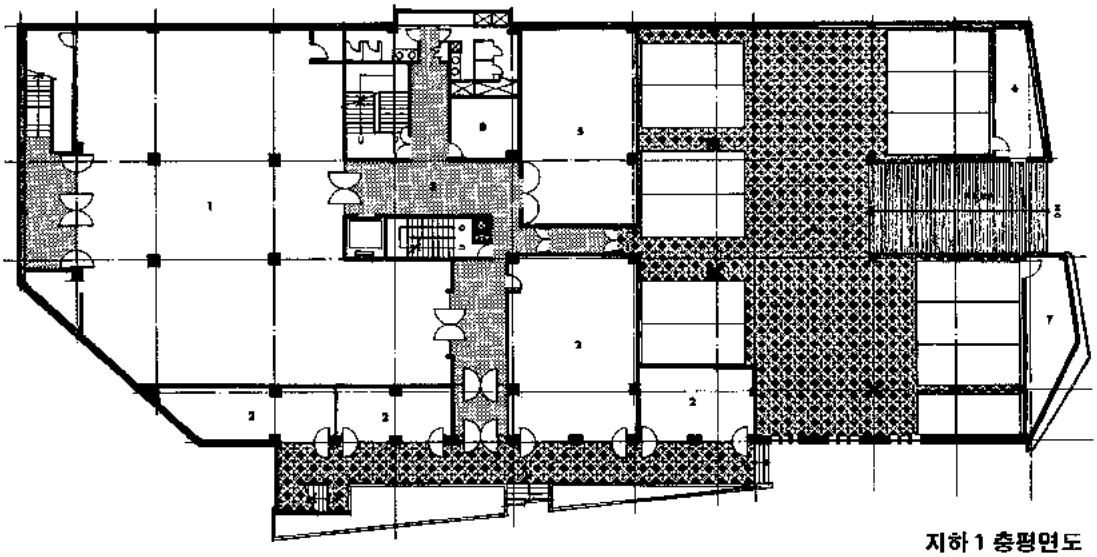

①점포
②아케이드
③홀
④주차장
⑤점포
⑥기사대기실
⑦환기기계실
⑧공조실

지하 1 층평면도

李圭孝 建設部長官 就任辭

The Inaugural Address of Lee, Kyu Hyo-The Minister of Construction

존경하는 산하 機關長 및 산하 團體社長 여러분!
또한 建設部 幹部 및 職員 여러분!

본인은 오늘 大統領閣下로부터 建設行政의 大任을 받고 3년 7개월만에 다시 전에 몸담았던 이곳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기쁘고 반갑기 한량없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기쁘기 이전에 책임을 더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國內外情勢가 급속하게 변화될 조짐이 있고 또한 어려운 經濟與件과 周圍環境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본인에게 왜 大統領閣下께서 建設行政의 大任을 맡기셨나 하는 점을 곰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러한 時代的 狀況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建設行政의 運營에 대한 몇가지 생각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協調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建設行政의 大道를 國民經濟의 전체적인 調和속에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業務만을 떼어서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解決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소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行政觀입니다.

이번 改閣의 촛점이 經濟팀의 재구성에 있었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副總理를 중심으로 한 經濟長官들이 각부처의 長官으로서 보다는 經濟國務委員이라는 차원에서 합심 협력하여 우리 經濟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라 하는 것이 大統領閣下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國民經濟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建設部만을 위한 업무에 연연하거나 구태여 고집하지 아니할 생각입니다.

둘째는,

본인은 大統領閣下의 國土觀이며 國土哲學인 "國土의 均衡開發"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입니다.

국민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국토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깊은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國土管理의 큰 줄기로 하여 만전을 기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土均衡開發이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읍니다.

적어도 한 世代가 지나야만이 모든 국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지 않고 전 국토의 방방곡곡에 옹기종기 모여살면서 삶의 행복을 구가하는 그러한 均衡과 調和의 時代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이러한 時代가 30년후 또는 그보다 더한 아득한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國土哲學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간단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만 된다면 그 가능성은 반드시 국민의 가슴에 와 닿을 것이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과 여러분이 앞으로 짜내는 建設施策은 國土均衡開發이라는 大軸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역행하는 施策은 가급적 삼가토록 해야하고 도움이 되는 大小政策은 과감하게 立案되고 推進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新聞紙上을 통해 보면 國土均衡開發이라는 시책을 표방하면서도 그 施行過程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시책이 눈에 띄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었읍니다.

물론 일부 시책이 만부득이하게 軌道를 약간씩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궤도를 달리하거나 크게 이탈하는 시책은 앞으로 삼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는,

建設施策의 立案이나 推進過程에서 民力, 다시말해서 民間의 역량을 結集·活用하는데 주력해나갈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政府의 힘과 民力이 協合만 된다면 엄청난 建設力이 提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와 사안을 정부단독으로, 또한 우리 공무원들만의 머리에서 짜내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우리의 經濟規模, 經濟의 質, 그리고 國民의 意識이 용인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建設施策을 立案하거나 開發計劃을 세울 때에는 물론이요 특히 建設頭腦産業의 육성과 활용, 施工建設産業의 近代化는 우리가 民間의 지혜와 힘을 빌려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現行法令과 制度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만일 역행한다면은 時代潮流에 맞게 이를 과감히 정비하는 작업을 전개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네째는,

國民生活의 편의를 提高시키기 위한 시책의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불만의 원인이 되는 法令이나 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汎內閣的으로 많은 업적을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 餘地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建設行政分野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 살펴보고 과감하게 시정하고 새로이 개발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국민의 불만과 불평을 制度上에 그대로 남겨두고 建設施策이 원만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建設部가 어느 部處보다도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社

會間接資本의 정비 확충에 그동안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 국민으로 부터 찬사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土地管理 등에 얽힌 불합리와 이로 인한 여러가지 불평과 불만을 국민들이 갖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建設行政의 大道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더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얽히고 섥힌 잡다한 民願을 해결하는 시책도 계속 연구되지 않으면 국민의 支持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建設施策 때문에 때로는 별 이유없이, 큰 명분없이 많은 국민들이 울고, 또한 政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公職者는 紀綱과 秩序를 바탕으로 和合과 團結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그 構成員의 和合과 秩序가 없이는 참다운 目標實現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慶南道政을 이끌어가면서 "和合과 衆智로 樂道慶南 建設"을 표방한 바 있읍니다.

和合과 衆智가 한사람의 힘과 지혜보다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잘 익혀 왔읍니다.

때문에 和合을 깨뜨리고, 位階秩序를 깨뜨리고, 우리의 團合, 合心을 깨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公職社會의 紀綱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閣下의 統治理念이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先進祖國 創造를 향한 거창한 국민의 和合 隊列을 흐트러지게 하고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反逆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우리 公職者가 국민에 대해서 和合을 외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화합을 못한다면 어찌 국민에게 화합을 호소할 수 있겠읍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紀綱을 세우고 合心協力體制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앞날에 불가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合心協力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는 바 입니다.

여섯째는,

建設政策의 立案이나 施工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모든 계획은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생각하여야 하겠읍니다.

인간사회에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마는 보다 완전에 가까운 不完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 建設人들의 基本精神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쉽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동안 開發行政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른 것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言論이나 國民으로부터 政府의 시행착오에 대하여 비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기 싫어하지 말고 성의어린 忠告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나 시책이 결코 實驗臺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1인당 국민소득 2천불을 넘어서는 이 단계에서 지난날처럼 施行錯誤를 거듭한다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규탄의 물결이 보다더 거셀 것으로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1천불 이하의 시대에는 그래도 없던 것이 생기고 보지 못하던 것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신기해서라도 그것이 다소 施行錯誤가 되었더라도 寬容될 수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더 근본적인, 보다더 본질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完璧主義를 지향해 주실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은 걸려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항상 갖고있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년후에는 본인이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만든 造形物과 構造物이 격조높은 예술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가장 값지게 살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建設部 職員은 自然災害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민한 豫察과 기동적 對應은 우리 防災體制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의 災害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국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設公職者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은 先進祖國 創造를 향하여 다같이 변혁의 시대에 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읍니다.

어느 분인가 "當代는 언제나 絶望한다" 하였읍니다. 유사이래 자금까지 인간사회에 실망과 절망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없는 시대가 없었으며 만족스러운 태평성대도 없었읍니다.

그 나름대로의 時代的 問題點은 항상 안고 있었으며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고 한탄하는 소리도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를 극복하고져 그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하여 항상 고심하였으며 그로부터 끊임없는 탈출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류사회는 오늘의 이 위대한 文明社會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歷史는 大衆에 의해 움직여질 수는 있어도 創造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책임있는 創造的 知性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 책임있는 創造的 知性 主體가 적어도 韓國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들 公職者라고 또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상목표인 祖國의 平和統一과 先進祖國 創造를 위한 우람한 새 歷史創造 대열에 다함께 전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 1. 8

建設部長官 李 圭 孝

제1회 理事會 개최

1월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副會長·理事·監事·서울支部長등이 참석한 가운데 吳雄錫회장의 주재하에 제1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이날 理事會는 전회 회의록 승인, 부의안건 심의, 추가안건 심의, 기타사항 협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의 의안 처리결과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회 회의록 승인

전회 회의록 내용 승인중 기타 사항을 기타협의 사항으로 자구수정하고 원안대로 승인

○주요 업무 보고

보고 사항중 공정거래 위원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 대책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위임.

○부의안건

제1호의안 : 건축행정 상담실 업무 이관 승인의 건

결 의 :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분소 명칭 변경 승인의 건

결 의 :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편찬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승인의 건

결 의 : 편찬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계는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총칙을 차기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전문 위원으로 위촉토록 결의

○추가안건

제4호의안 : 임시 총회 일정 결정의 건

결 의 : 임시총회 개최 일자를 3월 28일로 하되 시간과 안건 상정 관계는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결의

제5호의안 : 연수 위원회 특별 전형 소위원회 위원 결정의 건

결 의 :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연수 위원장께 위임하여 회장과 협의 위원을 구성토록 함.

제6호의안 : 전시장 임대 결정의 건

결 의 : 회관 임대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후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함.

제7호의안 : 국제 위원회 영문 자문 위원 위촉의 건

결 의 : 자문 위원 위촉은 국제 위원회 위원장께 위임하여 회장과 협의 결정키로 하되 용역비 예산을 국제 위원회 예산에서 사용토록 함.

제8호의안 : 아카시아 회장 초청에 관한 건

결 의 : 초청을 원칙으로 하되 초청인원은 아카시아 회장을 포함한 2인으로 하고 초청일자와 초청인 1인 선정은 아카시아 회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체류비는 국제위원회 예산에서 사용토록 함.

제9호의안 : 출판사업부 양 원석의 특별승급 및 과장 직무대리 직책부여 승인의 건

결 의 :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함.

○협의사항

제1호의안 : '8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협의

협 의 : 유인물로 대신하여 참고사항으로 함.

제2호의안 : 각 지부 순회 간담회 개최 일정 및 참석인원 결정

협 의 : 회장, 부회장이 결정토록 위임함.

제3호의안 : '86년도 중점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협 의 : 원안대로 추진토록 협의

기타협의사항 : 경기지부 고양분소 업무 개시에 관한 건

협 의 : 고양분소의 분소장 취임 승인전에 업무 개시는 부당하니 각종 인장 사용 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분소장 취임 승인 후 업무를 개시토록 조치키로 함. (담당 직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도록 함)

임시이사회

臨時理事會 개최

2월13일, 副會長, 理事, 서울特別市支部長 등이 참석한 가운데 吳雄錫 회장 주재하에 臨時理事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臨時理事會에서 협의된 내용을 요약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의사항

제1호의안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 승인

결 의 : ○건축법 개정 건의 (안) 자료를 일단 건설부에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이나 좋은 안이 나올시는 재 건의 하는 것으로 하여 법규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

○건축사법개정건의(안) 자료중 일부조항을 자구수정한후 건축법과 같이 제출토록 함.

○수정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 창작예술의 진흥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항6호 삭제

제14조(응시자격) 자격 5년을 7년으로 하되 수련기간 2년을 삽입(자격 연수를 2년씩 연장)

제16조(시험과목등) ②항삭제

※ 특별전형 시험과목에서 2급건축사는

설계를 면제토록 함

제19조(업무내용) 현행 대로

제20조(업무상의 성실등 의무) ②항 보고를 통보로함

③항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해지 했을시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책임 한계를 명시토록 함)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실무(연수)를 마친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23조의 2(검사사무의 대행)

(1안)으로는 23조의 2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과 (2안)으로는 23조의 2⑤항을 삭제하는 방법

제34조(임원) 부회장 3인, 이사 11인으로 증원

제2호의안 : 건축사업무 및 보수 기준 제15호1항4호 시행지침(안) 승인

결 의 : 각기 다른 대지에 동일설계로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계약인 경우로 하고, 연동요율 공식을 적용하되 각기 다른 대지별 총 합계동수에 대한 설계비의 실적회비 징수율과 실비보상 가산식에 의한 금액은 각 대지별로 연동요율에 의한 산출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실적회비를 산출키로 함.

제3호의안 : 경향신문사 주최주택설계작품전시회 개최 협조사항 승인

결 의 : 다음 사항을 검토후 이상없을시는 회장께 위임추진토록 함.

'86. 하우징 페어 확인사항

①전설부 협조 관계 추진 사항

②자재 전시회의 성격 확인

③자재업자선정관계(광고료 징수등)

④전시회장 위치 확인 및 본협회의 참가 성격

제4호의안 : 위원회 운영총칙 개정(안) 승인

결 의 :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 위원회명칭개칭승인(세무위원회)

결 의 : 명칭 개칭에 대하여는 보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함.

제6호의안 : '86년도 회원명부 내용변경(안) 승인

결 의 : 본적란만 삭제키로 하고 종전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되 발간시기는 임시 총회 이전에 제작 완료키로함.

○건의사항

서울지부장 : '86년도 임시총회시 회관 지분관계를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제1회 支部長會議 개최

1월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理事·監事와 전국 市道支部長이 연석한 가운데 吳雄錫 회장 주재하에 支部長會議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주요업무보고, 협의사항, 기타사항 협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협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 내용중 대구 지부 작품 전시회 개최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2. 10 -2. 15까지를 2. 12-2. 17로 변경)

○협의사항

제1호의안 : 8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협의

협 의 :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총회에서 확정한 연간 사업계획의 세부추진 계획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고 지부실정에 맞도록 지부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협의.

李春相 서울 支部長 : 추상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는 사항으로서 이런 사업은 계획에 넣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吳雄錫 會長 : 법 개정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강력히 추진해 나갈 생각이니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주시고 또복지회 운영에 대한 내용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閔榮基 忠南支部長 : 큰 도시에는 복지회가 분소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吳雄錫 會長 : 복지회 관계는 전국 복지회 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코자 하니 복지회 회장이나 또는 부회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지부장께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사항

1. 순회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협 의 : 순회 간담회를 생략토록 하고 지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함.

黃在淳 釜山支部長 : 본 협회에서 있었던 일을 지부장이 회원 개개인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읍니다.

본부 임원이 내려오면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간담회를 지부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吳雄錫 會長 :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지부장에게 건의하여 본 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지부 순회 간담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건의사항

趙春元 全南支部長 : 오수 정화조 설치 기준에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차기 지부장 회의시에 답변해 주시고 지부장 회의시 건의된 사항을 회지에 게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지부장 회의시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쯤 조치를 하겠다고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또 지난번 지부장 회의시 전남 지부에서 분리감리 대상 지역에서 도서 지방은 제외토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읍니다. 이런 사항을 본회에서 연구하여 건설부와 협의 답변을 조속히 해 줬으면 합니다.

黃在淳 釜山支部長 : 86년도 방침 사항이 대폭 수정된다고 했는데 지방실정에 맞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법개정에 대해서는 법연구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金在佑 理事 : 법 개정이란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큰 일을 사무처 직원에게 맡겨서는 처리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지부장들께서 (안)을 제출해 주시면 수합을 하여 우선 급한 대로 건설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최대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黃在淳 釜山支部長 : 보수 기준에 대해서 같은 도서를 각각 다른 대지에 설계를 했을 때와 동일 대지에 설계를 했을때의 실비가산식으로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 본부에서 지시 내용이 없어 획일성이 없읍니다.

또한 동시에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와 시차가 있게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할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요.

閔榮基 忠南支部長 : 전액을 다 봐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실비 정산제를 할 수 없읍니다.

金圭燮 理事 : 동일 설계를 가지고 50 100평도 좋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동을 했는데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대구에 가서 500동

을 했을 때 1동만 받고 나머지는 실비 정산만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설계감리 분과 위원회에서 6월말 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겠읍니다.

関榮基 忠南支部長 : 실비 계산으로 될 수 있도록 빨리 방침을 시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黃在淳 釜山支部長 : 저작권법에 건축사가 창작 창출한 것을 실비 정산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関榮基 忠南支部長 : 본 회에서 방 침 사항이 시달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보류토록 합시다.

金正洙 慶南支部長 : 실비 보상 문제는 본협회에서 규정이 결정될 때 까지는 보류되어야 겠읍니다.

全炯直 全北支部長 : 문교부 산하에서 발주하는 학교도 표준설계 도서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만약 공동 주택업자가 수백 동을 건립한다 했을시는 건축사의 수입원이 무척 낮아질 것입니다.

黃鍾周 大邱支部長 : 본부에서는 2,300여 회원의 권익옹호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보수 요율이 정해질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하고 동일 대지에 2개동 이상은 체감식을 적용했을시 각각 다른 대지에 체감식을 적용한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설계만이라도 체감식으로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吳雄錫 會長 : 서둘러서 개정하도록 하겠고 산출기준 근거를 첨부하여 신고토록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기준표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어떨지요.

黃鍾周 大邱支部長 : 본부에서 실비산출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鄭孝煥 監事 : 다음 이사회까지 간다면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것은 회원의 생사에 걸린 문제이니 만큼 지부장 회의를 끝낸후 이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겠읍니다.

関榮基 忠南支部長 : 오늘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3~4일 여유를 준 다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宋基德 理事 :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지부장 의견을 참고하여 내주 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 졌으면 합니다.

黃在淳 釜山支部長 : 강력하게 반영을 하여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겠읍니다.

趙春元 全南支部長 : 일단 보류 한다는 공문을 시달해 주도록 합시다.

黃鍾周 大邱支部長 : 지부에 재량권을 줘서 처리토록 합시다.

金正洙 慶南支部長 : 지부에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어렵고 본 회에서 통일 될 수 있도록 시달을 해 줘야 합니다.

감리에 대한 체감은 어렵습니다.

関榮基 忠南支部長 : 실비 정산을 한다 했는데 제한을 둬야 겠읍니다.

吳雄錫 會長 : 산출 기준을 별도 제정하여 시달할 때까지 각 지부에서는 재량권으로 본 개정 기준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부장들이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면 취합해서 설계감리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달을 하겠읍니다.

金正洙 慶南支部長 :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혼동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의를 내려 줘야 겠읍니다.

吳雄錫 會長 : 법규 위원장이 정의를 내려 주시면 좋겠읍니다.

関榮基 忠南支部長 : 연합회 위원회에서 각 지부장께 설문지를 내 준게 있는데 10월 정기총회에서 독립 채산제로 해달라 했는데 지부장님들께서 설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1주내로 본 회로 보내 주시면 연합회 연구 위원회에서 연구 하겠읍니다

梁昌完 濟州支部長 : 지부장 회의가 여러번 개최 되었으나 지부장 회의를 지부를 순회하며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본회에서만 개최를 하고 있읍니다.

吳雄錫 會長 : 지부장 회의를 지부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읍니다.

협의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부장 회의를 마치겠읍니다.

會員建築設計作品
市道支部巡廻展示會開募

'85년도 会員建築設計作品 전국 시도지부 순회전시가 2월 1일 釜山直轄市支部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인천, 춘천을 순회할 본전시회는 4월 11일 춘천에서의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릴 계획이다.

순회전시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시지역	전시기간	전시지역	전시기간
부산	2. 1~2. 7	대전	3. 9~3.15
대구	2.12~2.17	수원	3.18~3.24
광주	2.19~2.25	인천	3.27~4. 2
전주	2.28~3. 6	춘천	4. 5~4.11

※전시회 기간은 변경될 수도있음

委員會開催
編纂委員會

1월 7일, 제 1 회 編纂委員會 (위원장 安將元)가 개최되었다.

任期가 만료된 李永熙 前委員長은 2년간의 編纂業務추진경험 소감을 통해 권장하여야 할 사항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 신임 安將元委員長에게 전달하면서 業務를 引繼하였다. 委員 중에서는 金琪碩 委員이 尹錫祐 위원으로 교체되었으며 副委員長이나 그 외 委員은 변동없이 재위촉 되었다.

이날 협의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색채인쇄는 회원설계작품(화보)에 국한.

2. 협회 입원 동정의 지나친 부각 지양

3. 편찬위원의 분야별 편집전담제 실시

기　　획…安將元, 金　麟

표지·화보…姜哲求　尹錫祐　金基雄

기　　타…呂鴻九　徐千植

4. 專門委員 위촉

레이아웃 분야와 사진분야 전문가를 專門委員으로 위촉

레이아웃…安상수

사　　진…林正義

5. 紙質改善

표　　지…200g아트지→250g아트

목　　차…80g미색모조→100g아트

화　　보…120g아트지→100g아트

본　　문…80g모조지→100g스노우화

이트지

6.建築士誌 市販 및 独立採算制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研究

7.年間計劃 및 3個月分 編輯計劃樹立은 각위원이 연구, 추후 제출

8.座談會 개최

시사성 있는 主題를 선택, 매월 座談會 기사 게재.

1月號…公正去來

2月號…福祉會 運營

3月號…歷代 會長 座談會

制度委員會

制度委員會(위원장 申貞植)는 1월15일 제1회 委員會를 개최하고 '86년도 기본사업계획을 협의 하였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

가) 聯合會研究委員會

연합회제도에 관한 연구

나) 福祉厚生研究委員會

복지후생에 관한 연구

다) 圖書申告研究委員會

도서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라) 稅務研究委員會

세율인하 및 세무제도에 관한 연구

2.豫算計劃

가) 제도위원회(연구위원회) 연구사업비 예산은 통합체제로 운영

나) 연구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은 추후 심의 결정

3.運營計劃

가) 聯合會研究委員會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협회 자체적으로 연합회 시행방법 연구

• 지방자치제 실시 대상 도시에 대한 출장 등으로 사전 준비

나) 福祉厚生研究委員會

•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추진

다) 圖書申告研究委員會

• 도서신고 검토 강화방안 연구

• 도서신고 방법 개선방안 연구

• 원도사용 일원화제도 연구(소관 사용금지)

라) 稅務研究委員會

• 세율인하에 대한 건의 추진

• 세무제도에 관한 연구

室內디자인分科委員會

1월16일 제1회 室內디자인分科委員會(위원장 曺龜鉉)가 개최되었다. 본 分科委는 이날 室內디자인에 관한 作品集發刊, '86년도 研究事業計劃, 建築士事務所 간판모형 현상공모(안) 작성 등 3개 의안을 협의하였다

構造分科委員會

1월17일 제1회 構造分科委員會(위원장 金昌瑞)가 개최 되었다. 본 분과위원회는 〈건축구조 현장감리 검사요령 및 해설〉 연구서 발간, 건축구조에 관한 지침도 작성 등의 '86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의 추진을 협의 하였으며 〈건축물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과 방재에 관한 학술심포지움〉의 개최를 협의 하였다.

國際委員會

國際委員會(위원장 宋基德)는 1월20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86년도 국제업무의 추진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6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

2.일본 건축학회 개최 심포지움 참가 여부 협의

본건은 건축3단체장 조찬회시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

3.아카시아 총회참석여부협의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카시아 총회에는 참석을 전력 추진.

4.기 타

국제 세미나 개최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관망하면서 추후 협의키로 결정.

設備分科委員會

1월20일 제1회 設備分科委員會 (위원장 朴容漢)가 개최 되었다. 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85년도 연구사업계획(안) 및 세부추진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3월중 실시예정인 고층건물에 대한 지진의 영향 및 방재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는 孫章烈, 金相旭 두 위원을 연사로 결정.

2.호텔에 관한 각종 설비 연구

연구결과는 건축사지에 순차적으로 게재발표

호텔의 위생설비…朴容漢

호텔의 공조설비…孫章烈

호텔의 전기설비…李永洙

3.건축기계설비(전기시설) 설계도서 및 현장감리 체크 리스트 작성 연구…曺永民 위원

傳統建築分科委員會

傳統建築分科委員會(위원장 朴泰勳)는 1월21일 제1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전통건축자료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기 위한 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1,2집으로 나뉘어 발간될 본 자료집의 제1집 발간은 85년도에 이은 계속 연구사업으로 3월중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 하기로 하였으며 제2집 발간은 '86년도 연구사업으로 연구를 진행키로 합의 하였다.

都市環境分科委員會

都市環境分科委員會(위원장 李永熙)는 1월22일 제1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86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6년도 연구사업계획은 85년도 연구사업계획을 승계 진행하며 그 결과를 건축사지에 게재 발표.

2.'85년도 연구사업인 〈도시환경과 조형예술〉은 86년도 연구사업비를 활용 단행본으로 발간.

3.'86년도 연구사업계획중 〈도시환경색채에 관한 연구〉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를 진행

4.〈대학로의 변천에 대한 기록〉에 관한 연구는 계속 연구사업으로 진행하여 본 협회 도시환경에 대한 연구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

5.본 분과위원회 이규목 위원(서울 시립대 교수)이 장기해외출장중임에 따라 국민대학교 朴吉龍교수를 위원으로 보선하며 아주대학교 박돈서 교수를 〈도시환경색채〉의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

福祉厚生研究委員會

福祉厚生研究委員會(위원장 朴弘雨)는 1월24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회칙에 관한 연구 등 '86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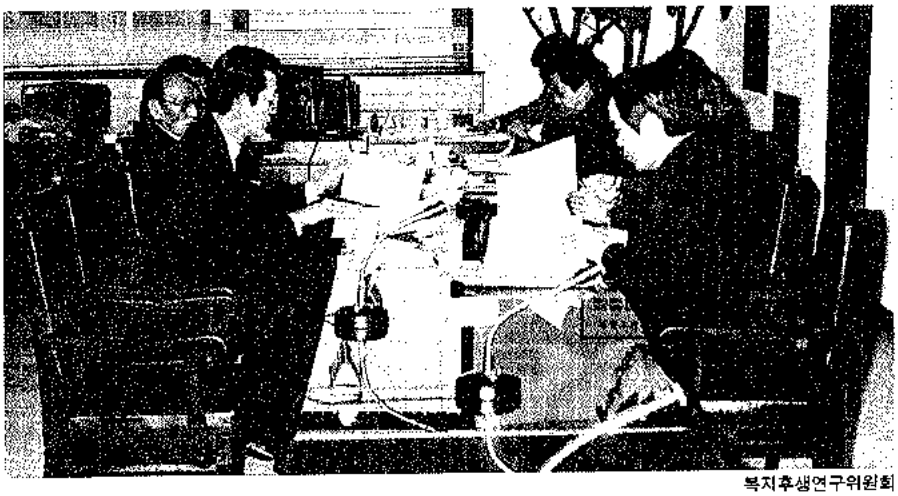

복지후생연구위원회

다.

1.복지회칙에 관한 연구

복지회 통일시행세칙까지 시안을 연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복지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차기 회의시 재검토

3.전국복지회 합동회의 개최

2월말경 전국 복지회 회장 또는 부회장과합동회의를 개최토록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협의.

圖書申告研究委員會

1월27일 제1회 圖書申告研究委員會(위원장 朴成生)가 개최 되었다. 본 연구위원회는 이날 '86事業計劃으로 (건축사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는바 그 협의내용에 의하면 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2월말로 용역완성일을 늦추기로 하였고, 동 연구결과는 3월 임시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협회방침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고 동시에 동연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弘報委員會

1월28일 제1회 弘報委員會 (위원장 李文雨)가 개최되었다.

본위원회에 '86년도 위원으로 몇 명의 위원변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기만료된 張宗律 위원장과 尹鳳源 부위원장, 李世默 위원이 李文雨 위원장, 鄭正治 부위원장, 姜泰錫 위원으로 각각교체 되었으며 金周喆 자문위원이 정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吳雄錫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5년도에 다져진 기틀 위에서 시사성 있는 사항을 기획 홍보하는 자세로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알찬 성과를 올려 줄 것등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85년도 사업중 미진했던 사업과 예산상 사유로 유보되었던 사업에 대한 '86년도 사업으로의 승계여부가 검토 되었으며 '86년도 세부 홍보계획(안)은 위원 각자가 연구하여 차기 회의시 수합하기로 합의하였다.

聯合會研究委員會

聯合會研究委員會(위원장 俞景哲)는 1월27일 제1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86년도 사업계획(안) 및 운영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본 연구위원회는 연합회제도의 연구가 장기적으로는 聯合會體制로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独立採算制로 하는 것이므로 '86년 3월 임시총회에 案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우선은 独立採算制를 연구한다는 研究方向을 설정 하였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건축사법과 정관 등의 개정에 따르는 문제점, 재정 충당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등은 俞景哲 위원장과 尹鳳源 간사,張城鎭 위원이 추진하되 尹鳳源 간사가 중추 역할을 하기로 합의 하였다.

鑑定委員會

鑑定委員會(위원장 金泰勳)는 1월28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의 조사 감정업무 경과에 대한 검토, 감정서의 양식 통일방안 연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업무규정 검토 등 '86사업의 추진방안을 협의 하였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축물의 조사 감정업무 경과에 대한검토.

본위원회의 검토를 경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가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위원회의 검토 후 시행.

2.감정서의 양식 통일방안

감정서의 표지와 서식, 제양식을 통일화하여 협회의 품위보전과 조사감정업무의 질적향상 도모.

차기 회의시 연구안 및 자료 제출자

鄭采龍…공사비 산출 관련 감정

鄭成教…구조안전진단에 관한 감정

3.건축물의 조사 감정업무규정 검토.

각 위원은 배부한 동규정을 검토하고 기타 조사감정업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차기 회의시 제출, 세부검토를 실시.

研修委員會

研修委員會는 1월28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86년도 건축사 교육 실시계획을 협의 하였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86년도 건축사 보수교육 협의

가. 교육기간과 교육장소는 85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육내용은 신제품이나 신공법 소개, 공사현장 답사 등으로 회원 업무에 실질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다. 교육기간과 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회원들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배당시간을 수강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해 주는 방법을 검토.

라. 지방회원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1회로 총괄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마. 교육과목중 안보에 관한 것은 관계기관 협조하에 월남 귀순자를 강사로 선정, 교육 실시함을 검토.

2.2급건축사를 위한 특별연수 실시계획.

가. 연수위원회 산하 특별전형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

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2급 회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3.건축사사무소 보조원교육 실시계획.

이제까지의 보조원 교육은 각지부 복지회의 협조하에 실시된 것이나 본분과위원회에서 거론치 않을 수 없는 분야이므로 예산의 반영등 '87년도 실시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85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기본지침안을 작성하여 지부에 시달하는 방향으로 추진.

4.기타사항

아카시아 이사국 가입에 따른 국제연수의 기회가 빈번할 것에 대비 본연수위원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

建築委員會

建築委員會(위원장 金圭泰)는 관련 分科委員會가 일제히 1차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끝내고 '86년도 사업계획(안)의 협의를 마치게 됨에 따라 그를 수합 조정하여 확정짓기 위해 1월30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위원회에서 확정된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都市環境分科委員會

가. 〈도시환경과 조형예술〉에 관한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 (본건은 '85년도에 착수하여 '86년도에 승계된 사업으로 현재 가편집 완료상태)

나. 도시환경 색채에 관한 연구

다.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물내 예술품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設計·監理分科委員會

가. 건축공사 약술시방서작성요령 연구(책자 발간을 위한 세부 보완작업 진행)

나. 건축공사 내역서작성요령 연구

• 기타공사내역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책자로 발간.

• 구조, 설비, 시공재료분과와 공동연구추진.

3.室內디자인分科委員會

가. 室內디자인에 관한 作品集 發刊

나. 한국전통건축의 空間構成 이론과 장식적 요소에 관한 연구

• 연경당을 중심으로 연구 추진

4.構造分科委員會

가. 건축구조 현장감리 검사요령 및 해설에 관한 연구서 발간

나. 철골조와 조적조에 대한 구조 기준도 작성 연구

5.建物에너지分科委員會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설계 공모전〉추진 연구

• '86년 1월10일 자료설계 공모신청을 접수 완료(282건)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협의중

• 동설계공모전에 따른 지침도 발간

6.傳統建築分科委員會

가. 전통고건축물에 관한 사진도감(한국전통건축자료 제1집) 단행본 발간

• '83년도부터 기발표된 연구사항을 책자로 발간

나. 전통건축물의 복원연구 및 실존고건축물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7.設備分科委員會

가.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서작성 및 현장감리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작성 연구

나. 호텔에 관한 각종 설비 연구

8.施工 및 材料分科委員會

가. 건축재료 검축기준 연구

• 물탈의 크랙 방지 및 외장재료인 타일의 설계시 유의점과 시공시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개최

나. 〈건축공사조사 감리요령〉단행본발간

• 설계 감리, 구조, 설비분과와 공동연구 추진

9.기타사항

가. 설계감리, 시공및 재료, 설비, 구조분과위원회는 연구사항이 유사하므로 4개분과가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

나. 고층건물에 대한 지진의 영향 및 방재에 관한 연구발표회는 건축위원회 연구사업비가 아닌 별도의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된 후 이사회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다. 차기 이사회의시 분과위원회 연구책자 발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협의토록 하며 분과별 연구물에 대한 인쇄비 예산을 보고토록 협의

라.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토록 협의

마. 본협회 예산배정시기가 8, 9월이므로 그 이전까지 명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이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협의

施工및材料分科委員會

施工 및 材料分科委員會(위원장 韓鍾彦)는 1월28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사감리요령〉작성과 '86년도 연구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공사감리요령〉은 국내 현실을 고려,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무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공사감리업무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는 방향으로 작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각 위원은 회의시 배부한 초안을 검토하여 차기 회의시 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작성 제출키로 하였다.

'86년도 연구사업으로 결정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신건축자재 신공법의 정보자료 소개

〈건축자재총람〉을 공사별 재료별로 재분류하여 자재의 성능과 특징 및 활용도를 연구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

2.건축자재시험 및 시공정밀도의 검사기준 작성 연구

3.회관내 건축자재 상설전시 추진검토

4.세미나 개최추진

가. 목적…건축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을 계도하기 위함.

나. 방법…양질의 건축시공 케이스의 설계자와 시공자를 초빙, 주제를 발표케 함

나. 개최시기…'86건축사 연수교육시 개최 검토

라. 주제

• 몰탈 마감시공의 균열방지에 관하여

• 외장타일의 탈락방지에 관하여

•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

編纂委員會

編纂委員會(위원장 安將元)는 2월3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 1월호 건축사지를 강평하고 2월호 편집계획을 협의, 확정 하였다.

이날 협의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1월호 강평내용

가. 표지…구도가 좋지 않았음

나. 화보…회원작품은 색채로 인쇄키로 함

다. 본문

① 공정거래에 관한 좌담회 내용중 실제 발언내용과 의미가 다른 내용이 있었음. 이후 좌담회 내용은 참석자에게 필

히 열람할것.

② 2월호부터 건축사지 지질을 향상시킬 것

③ 3월호 회원작품 주제는 圖書館으로 할 것.

建物에너지分科委員會

建物에너지分科委員會(위원장 金一榮)는 2월4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주택설계 현상공모〉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작품심사기준작성도 협의 되었으며 심사위원선정은 차기 회의시 협의, 결정키로 하였다.

弘報委員會

弘報委員會(위원장 李文雨)는 2월4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86년도 홍보세부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會員作品展示會 弘報

회원작품순회전시회 개최현지에 홍보위원 1인이 개최 1일전 출장하여 현지 지부 홍보위원과 협력하여 언론매체와 접촉, 전시회를 홍보.

2.學生作品展示會 홍보

건축설계작품에 대한 학생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학생층에 대한 본협회의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계획중인 학생작품 전시의 홍보방안협의.

3.에너지 절약형 주택설계 현상공모홍보

본협회에서 85. 12. 16~ 86. 3. 20기간에 걸쳐 현상공모중인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설계 현상공모〉를 관련 건축위원회 협조하에 홍보

4.내진설계 세미나 홍보

본협회에서 3월중 실시를 계획하고있는 〈건축물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과 방재에 관한 학술심포지움〉을 건축위원회 협조하에 홍보.

5.경제분야 기자단과의 유대강화 경제분야 신문 방송 기자단과의 유대강화를 높이는 친선행사를 실시

6.문화분야 기자단과의 유대강화

일간신문 문화부 기자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신문사별 섭외담당 위원을 선정 지속적으로 접촉

7.월간지와의 유대강화

건축전문 월간지 및 여성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시

8.방송매체와의 유대강화

라디오, 텔레비젼 매체 관련자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9.대민봉사활동 적극화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를 활용, 대민봉사 활동 실시.

10. 회원설문조사실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 실시

11. 전국시도지부 홍보위원 활동 활성화

2월15일(토) 전국시도지부 홍보위원을 소집, 본협회 연간홍보계획(안)을 시달하고 계획에 따라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협의.

法規委員會

法規委員會(위원장 金在佑)는 2월5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시안 작성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본업무는 시간이 촉박함을 감안 2월6일~ 2월11일 까지 시안작성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실무위원은 합숙하며 시안 작성작업을 강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設計·監理分科委員會

設計·監理分科委員會(위원장 李文雨)는 2월5일 제2회 분과위원회를 개최 하고 건축공사 약술시방서 연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86년도 건축공사 내역서 작성요령 연구를 보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5조 제1항 제4호를 검토하기로 협의하였다.

弘報委員會

弘報委員會(위원장 李文雨)는 2월11일 제3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15일 지부홍보위원연석회에 개최하기로 계획된 홍보위원회 확대회의시 시달할 '86년도 홍보계획(안)을 협의 하였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會員作品展示會 弘報

가. 방법

① 전시회개최 1일전 홍보위원이 전시 현장에 출장, 지부 홍보위원과 협력하여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활동 전개

② 지부별로 소정의 홍보지원비 지급

나. 지부별 전시회 개최 일시 및 출장위원, 출장일

전시지역	전시기간	출장기간	출장위원
부 산	2.1~2.7	-	-
대 구	2.12~2.17	-	-
광 주	2.19~2.25	2.18~2.19	우 남 용
전 주	2.28~3.6	2.27~2.28	정 정 치
대 전	3. 9~3.15	3. 8~3. 9	이 문 우
수 원	3.18~3.24	3.17~3.18	강 태 석
인 천	3.27~4. 2	3.26~3.27	최 정 일
춘 천	4. 5~4.11	4. 4~4. 5	김 기 철

* 대구지역은 홍보위원이 출장하지 않고 홍보지원비만 지급
* 전시회를 마친 부산지부에 대하여는 추후 지원방안 강구.

다. 결과보고

○지부 홍보위원은 신문기사스크랩, 방송내용 요약수록 등으로 효과분석을 합과 동시에 홍보위원회에 보고

2. 에너지절약형 주택설계 현상공모홍보

본협회에서 85. 12. 16~ 86. 3. 20(발표 86. 4. 10) 기간에 걸쳐 현상공모중인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설계현상공모〉결과를 관련 건축위원회 협조하에 홍보

3. 耐震設計(세미나 弘報)

본 협회에서 3월중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건축물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과 방재에 관한 학술 심포지움)을 건축 위원회 협조하에 홍보

4. 經濟分野 신문, 방송 기자와의 懇談會 개최 및 野外招請 친목회

○간담회…3월중 개최

○친목회…4월, 7월, 10월 3회 실시

○섭외담당위원…우남용위원

5. 文化分野-新聞記者 섭외·홍보활동 전개

○섭외 담당위원 한국·서울…우남용
조선·매경…강태석
경향·한경…김기철
동 아…정정치
중 앙…최정일
연 합 통 신…정정치

6. TV매체활용, 홍보활동 전개

○섭외 담당위원 ch 7 …우남용, 강태석
ch 9 …우남용,

최정일
ch 11…김기철

○3, 6, 9, 11월 등 분기별로 교양프로에 출연, 홍보활동 전개

○수시행사 홍보지원 협조

7. 라디오 매체활동, 홍보활동 전개

○섭외 담당위원 라디오 서울…정정치
KBS－1R …최정일
KBS－2R …우남용
MBC－R ……김기철
CBR－R ……강태석

○고정프로 이용 홍보활동 전개

○홍보자료수시제공

8. 월간지 활용

○대상월간지
건축관련전문잡지 및 여성지

○편집부장초청간담회 개최……연 4회

○수시홍보자료제공(계절별 집단장, 개정법령 해설…)

9. 전국지부 및 분소활동 대민홍보활동 전개

○계절별 연 4회, 1회 3일간씩 대민무료 상담실시

○상담사실을 내무부 협조하에 반상회보에 게재방안 검토

○언론매체협조(TV, 라디오, 일간신문, 월간잡지)

10. 회원설문조사 실시

○홍보적 차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홍보자료로 활용

○차후 설문안을 위원회에서 작성

11. 방송시설 설치 검토

○본 협회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각 방송국의 대민상담 프로그램을 유치케 함으로써 본 협회의 홍보효과를 올림

○현재로서는 설치가능성이 희박 하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弘報委員會 擴大會議

弘報委員會(위원장 李文雨)는 2월15일 弘報委員會 擴大會議를 개최하였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본회 홍보위원 전원과 김화자(대구지부), 송인택(충북지부), 전형직(전북지부), 이석주(경북지부), 김백교(제주지부) 등 여섯명의 지부 홍보위원이 참석하였으며, 吳雄錫 회장이 지부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회의는 '86홍보계획(안)의 시달후 지부 위원들의 홍보 묘안을 듣는 간담회로 이어 졌다. 간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석주 : 생활상담 프로그램에 다른 분야 인사들과 동시 출연하여 건축상담에 응하고 있다. 건축상담은 주로 건축법에 관한 것이므로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 큰 어려움은 상담자가 적다는 점이다. 그래서 방송사 측과 협의하여 질문안을 방송사측이 만들고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방송을 하고 있다.

김화자 : '85년 9월 첫 확대회의시 지부 홍보위원에게 홍보용 건축사진을 적당량 배부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책이 안 오고 있다. 보내 주었으면 요긴히 활용하겠다.

전형직 : 건축사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작품집이나 기타 간행물이 발간될 경우에도 할애하여 주기 바란다.

김백교 : 몇 년전 일인데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대를 이용하여 본부와 지부가 연결 방송을한 적이 있었다. 서울 방송 스튜디오에 회장과 누군가가 나오고 제주방송 스튜디오에 지부장과 간사가 나와 진행된 소위 이원방송이었다. 먼저 회장이 건축사협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한 다음 제주의 건설경기를 물어왔고 제주의 건설경기를 '설명해주자 제주도의 돌은 건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건축용 석재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등등 궁금한 사항을 물어 왔다. 이런 식으로 서로 묻고 답변하는 방송을 했는데 흥미로웠고 홍보효과도 컸었다. 이런 방송을 다시 한번 시도하여 전지부를 순회하였으면 훨씬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송인택 : 홍보의 효과는 예산투입의 정도와 정비례 한다고 본다. 적은 예산으로는 활동의 반경을 넓힐 수 없으므로 효과를 크게 못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홍보는 방송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매체도 골고루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홍보는 몇몇 위원이 전담한다는 생각은 소극적인 생각이다. 전회원이 홍보요원이 되어 신문에 투고도 하고 잡지에도 기고 하는 근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전회원이 홍보에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한편 이날 지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회원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부…문용규 ○대구지부…김화자
○강원지부…민병협 ○충북지부…송인택
○충남지부…채수황 ○전북지부…전형직
○전남지부…박화수 ○경북지부…이석주
○경남지부…최봉형 ○제주지부…김백교

심포지움실시계획협의

〈고층건축물에 미치는 지진의 영향과 방재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추진을 위해 2월6일 두번째로 회합을 연 심포지움 개최추진협의회(임시협의회)는 그 개최시기를 3월26일~3월27일의 2일간으로 정하는 등 방침을 협의하였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최일시 : 86. 3. 26~3. 27.
2. 발표주제
가. 지구물리 : ① 지진의 지구 물리학적 해석
② 한국의 지진위험 평가
나. 건축구조 : ① 외국의 내진규정 현황 및 한국의 내진설

홍보위원회확대회의

계 현황
② 실예에 대한 지진적용

다. 건축설비 : 고층건축물의 방재현황과 문제(국내외 고층건축물 방재현황, 건축설비의 내진설계)

라) 방재설비 : 고층건축물 방재의 기본방향과 방재설비

3. 주제발표시간

지구물리(1, 2) : 09 : 30~12 : 30 (3 / 26 오전)

토질및 기초, 건축구조(1, 2) : 13 : 30~17 : 30(3 / 26 오후)

건축설비 및 방재설비 : 13 : 00~17 : 00(3 / 27 오후)

4. 기 타

- 각주제발표후 30분~40분간 토론회를 갖는다.
- 토질 및 기초분야 발표자는 육사 박병진 교수에게 위촉

淨化관련設問 調査실시

淨化對策委員會(위원장 金亨仁)는 2월14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위회원의 제도와 건축사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화대책자료의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회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본 설문은 대다수 바르고 정당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품위를 보선하기 위해 비위회원을 제도하는 대책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한 회원이라도 응신이 누락됨 없기를 바라고 있다.

2級建築士教育실시계획

研修委員會 特別銓衡小委員會(위원장 金榛培)는 2월7일 제1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전형에 대비한 2급건축사 교육실시계획을 협의 하였다.

本 研修委員會 特別銓衡小委員會는 실시 시기, 실시 장소, 연수과목 선정등의 결정을 위해 전국 회원에게 의견을 묻는 設問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 그에 따라 실시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설문내용

이 설문작성을 무기명으로 하시되 각 물음에 대하여 해당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고 사무소에 상근하지 않은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비 고

2. 무면허 사무소에서 제작된 설계도서에 명의를 대여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비 고

3. 행정처분(업무정지)를 받은 건축사 설계도서에 명의를 대여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비 고

4. 2급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2급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명의를 대여한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비 고

5.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면?

지부	건축사명	사무소명	미달 등록 기준			비고
			건축사	건축사보	사무실	

6.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 2 –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설계비를 덤핑하여 많은 업무량을 처리한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월 처 리 건 수	비 고

7. 설계도서를 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허 가 신 청 건	비 고

8. 건축사가 아닌 사람과 동업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동 업 자	비 고

9. 건축사가 대기업의 회사에 고용되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다면?

지 부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고 용 자	비 고

10. 건축사가 공직에 재직(교수 · 교사) 하면서 건축설계를 위탁받아 건축사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 부 명	성 명	근 무 처	설 계 명	비 고

11. 해외 장기 체류자 및 건설회사 등에 재직하면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경영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다면?

지 부 명	성 명	사 무 소 명	결 격 사 유	비 고

12. 노약, 신병등으로 사무소 운영 능력이 없어 무면허자에게 사무소 운영을 양도한 건축사가 있다면?

지부명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병명등	실질경영자	비고

13. 건축사가 아닌 사람(브로커등)들이 건축설계 상담 시공등의 간판을부착하고 무허가로 건축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부명	위치	간판	업무내용	비고

14. 건설업자 및 단종 건설회사에서 건축설계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및 동 도서에 서명한 건축사가 있다면?

지부명	건설회사명	설계명	관련건축사	비고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서울特別市支部(지부장 李春相)에서는 1월27일~2월3일까지 8개 분소에 대한 현판식을 거행하였읍다.

현판식은 지부 임원을 비롯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인사와 회원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分所는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회원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分所現況은 다음과 같다.

분소명	분소장	분소소재지	전화	관할구역
서부분소	건축사 강갑식	서대·연희170-186	333-1873	서대,은평,마포구
남부분소	〃 이정재	관악,신림1422-17	882-6744	구로,관악,동작구
북부분소	〃 김형인	도봉·수유191-13	903-3425	도봉,성북구
강동분소	〃 양원영	강동,성내317-4	484-6840	강동구
강서분소	〃 김종만	강서,화곡1105-5	695-0787	강서구
동대문분소	〃 강태운	동대,신설101-7	923-6213	동대문구
성동분소	〃 김일영	성동,구의252-16	446-5244	성동구
영등포분소	〃 성도영	영동,당산3가81	634-2143	영등포구

釜山直轄市支部

釜山直轄市支部(지부장 黃在洋)는 2월1일 수정그릴 회의실에서 본협회 吳雄錫 회장의 주재하에 懇談会를 개최하고 회원업무와 협회운영 전반에 관한 提言을 듣고 협의를 하였다.

협의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시 : 1986. 2. 1(土) 11 : 00時
2. 장소 : 수정그릴 1층 회의실
   (중구 창선동 소재)
3. 참석 : 회 장 吳雄錫
   이 사 金圭泰·李文雨
   지 부 장 黃在洋
   역대지부장 金澤辰·柳光澤
   許善行·李鍾燮
   간 사 李琪泰·張相進
   車元日
   대 의 원 吳鍾煥
4. 간담내용(요점)
   가. '86년도 협회 주요업무계획 설명
   나. 협회 운영제도 개선 추진방향 논의
   다. 법령개정 추진사항
   라. 복지회 운영 개선문제
5. 建議事項
   가. 건축사 보수교육 장소변경요망
   (인천으로 환원등)
   나. 건축사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회적 지위향상 요망
   다. 지부독립 예산제도 조속시행 요망

會員設計作品巡廻展示會의 釜山直轄市支部(지부장 黃在洋)에서의 전시회가 2월1일 吳雄錫 회장, 金圭泰 이사 李文雨 이사, 黃在洋 지부장, 歷代 支部長, 지부임원을 비롯 우상욱 부산시도시계획국장 등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으로 개막 되었다.

본전시회는 KBS라디오, MBC-TV, 부산일보등의 메스컴의 각광을 받아 홍보의 효과도 아울러 올렸는데 부산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仁川直轄市支部

仁川直轄市支部(지부장 高昌永)는 '85년 1월15일 전회원회의를 겸한 정화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朴淳鍾 감사의 선창에 따라 55명의 참석회원이 일제히 정화의 결의를 다지면서 주변의 사회적 비리를 과감히 제거하고 부당건축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선진조국창조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忠淸北道支部

忠淸北道支部 (지부장 延寬欽) 옥천분소장 李知勳 회원이 198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85년 12월3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全羅北道支部

全羅北道支部 (지부장 全炯直) 회원이 85건축부조리 방지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게 인정되어 1월10일 건설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을 수상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全炯直 (동서건축사사무소) 支部長 建設部長官表彰

文尙植 (건축사사무소 신도) 이리 分所長 全羅北道知事表彰

文俊英 (도시동인건축사사무소) 군산 分所長 全羅北道知事表彰

全國복지회장간담회

"福祉會則統一化와 年金制度研究를"

일 시 : 1986. 2. 14. 14 : 00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자 :
오웅석(본협회 회장)
김기수(본협회 부회장)
안장원(본협회 이사, 편찬위원장)
이춘상(서울특별시 지부장)
허 각(서울특별시 건축사 복지회장)
최윤경(부산직할시 건축사 복지부회장)
천일창(부산직할시 건축사 복지부회장)
박해룡(대구직할시 건축사 복지부회장)
허 집(인천직할시 건축사 복지부회장)
이종은(경기도 건축사 복지회장)
이명섭(강원도 건축사 복지부회장)
연관흠(충청북도 건축사 복지회장)
민영기(충청남도 건축사 복지회장)
전형직(전라북도 복지회장)
송양석(전라남도 복지회장)
김영길(경상북도 복지회장)
김성중(경상북도 복지부회장)
권영구(경상북도 복지회간사)
김영수(복지후생연구위원회 간사)
윤기병(복지후생연구위원회 위원)
김춘배(복지후생연구위원회 위원)
편기봉(복지후생연구위원회 위원)

사회 :
박홍우(복지후생 연구위원회 위원장)

오웅석 : 지금으로부터 전국복지회 간담회를 시작코저 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본협회 제도위원회 산하에 있는 복지후생연구 위원회에서 추진해 주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박홍우 복지후생연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몇가지 인사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활동 중에서 복지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우리 협회에 표면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지부별 복지회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운영 내용이 각기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각지부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지부의 회칙을 통일해 나가고 또한 노후복리를 위한 연금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뒤 회의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연금제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때 타협회 즉 변호사협회 계리사회 변리사회등에서는 노후생활비 지급(30~50만원) 관계를 이미 실천하고 있읍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은 그분들의 노후를 위해 복지제도가 되어있고 우리도 이제는 회관도 지었고, 어느정도 기반이 닦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선배분들의 노후문제를 걱정해야되는 때가 온것입니다. 65세 이상 된 분을 조사 해보니 167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 복지회에 생활비 지급을 희망하시는 분을 60% 내외로 본다면 약 100명 가량 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만약 한분에게 50만원씩을 드린다고 생각했을때 한달에 5천만원 1년에 6억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재원을 조달할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것입니다. 실적회비 기준을 해서 1% 씩을 적립한다면 1년에 18억이란 돈을 우리가 거둘수 있읍니다. 그 18억 중에 6억을 생활비로 지급을 하고 12억

각지부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지부의 회칙을 통일해 나가고 또한 노후복리를 위한 연금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것입니다.

전국회원이 관심있는 일로 유도하여 많은 회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여러분을 모셨읍니다.

을 정립해 나간다고 보면 5년 후에는 60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그 이자만 가지고도 6억이라는 생활비를 지급해 나갈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때 당장에는 큰 부담이 되는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큰 부담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100명에 대상 되시는 분들이 면허를 불법사무소 개설을 하는 곳에 대여를 했을때 그분들이 수입을 꺼꾸로 역산을 해 본다면 년평균 외형을 5천만원씩으로 보고 100명의 경우라고 가상한다면 약 50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억 이라는 외형을 그러한 불법개설 사무소에 뺏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그분들에게 차라리 지급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우리 회원들에게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조금도 이러한 것이 손해가 가고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비 지급을 받게될 노후회원님들께서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희망에 따라 도서검토라든가 공사감리 같은 역활을 맡아 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빨리 좋은 일이라면 시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면 그러한 노후문제를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젊은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느냐 각자 벌어서 노후대책을 일반 보험에 의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제도하에 자립정신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항상 젊을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 건축사로서, 가족으로서 선배층을 위하고 지금까지 선배들이 닦아준 그 노고에 대한 하나의 보답을 젊은이들이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리에 앉아 있읍니다만 이 회관이 모두 우리 선배층들의 노고에 의해서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회관들을 지었읍니다. 이러한 훌륭한 재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무상으로 물려준다는 생각을 할때는 젊은분들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조금도 그러한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틀림없이 우리 복지활동의 앞날은 밝은것이라 하는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기탄없는 복지회 발전을 위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홍우 :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후생연구위원회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전국 13개 시도지부에서 나와주신 회장 여러분들께 복지후생연구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실줄 믿읍니다만 작년에 우리 협회에서 이 기구가 처음 신설되었읍니다.

제가 위원장의 위촉을 받고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여러분에게 내놓지 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후생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복지후생연구 위원회의 몇사람만의 의견을 집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그동안 1년간을 겪어보니까 사실 책임감도 책임감이지만 능력의 한계도 느끼게 됨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동안 1년간 여러가지 일을 해오면서 또 회장님으로부터 지침을 기본으로해서 기본방향을 연구하면서 1년간 연구한 것을 보고 드리며 복지후생연구위원회에서는 기본방향을 일차작업으로 전국의 시·도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칙이 너무나도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통일된 회칙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만일 이것이 성사될 경우 일차적으로 우리 전체 회원의 여망인 노후생계에 대한 문제 즉 연금제도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열어왔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시·도지부의 복지회칙을 비교 검토하였고 유사단체의 복지후생제도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우리 복지후생연구위원회 나름대로 통일회칙과 연금문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만, 검토할때마다 계속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는것을 느꼈읍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것은 이 분야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각 시·도 지부의 복지회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여 앞으로 본위원회 연구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건축사지에 게재하여 전국회원이 관심있는 일로 유도하여 많은 회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여러분을 모셨읍니다. 여러분의 복지문제에 대한 찬반의견, 대책,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셔서 전국복지회 발전에 이정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통일복지회칙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발전적인

지금 지역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복지회는 본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회 강원도 지부에서는 지회나름대로 연금제도는 아니고 퇴직금조로 적립하는 것이 있읍니다. 작년서부터 했으니까 개인당 400만원 가량 됩니다.

의견과 연금제도의 실시여부에 대한 찬·반 또는 좋은 의견을 한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오늘의 집약은 지역별 복지회칙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본회 차원에서 복지회칙을 만드는것이 좋으냐, 싫으냐 또한 그것이 만일 성사가 되었을경우 다른 사단체에서도 전부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만 연금제도를 실시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울지부 복지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허 각 :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시스템이 있읍니다. 과거에 본협회 차원에서도 전국복지회를 한번 한적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와해가 된일이 있었읍니다만, 앞으로도 본협회 차원의 복지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회는 본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서울복지회 입니다. 서울복지회는 회원이 지금 천여명이 되다 보니까 회원마다 실정이 다르고 다른 지부같이 잘 융화가 되지 않고 회원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그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본협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을 위한 연금조성 사업이나 별도의 복지사업을 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 서울복지회에서는 각 지역 복지회에서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상 경제기획원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번주에 결심을 보게 되겠읍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회원간의 복지는 그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고 본협회 차원에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복지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저도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이명섭 : 저희 강원도 지부에서는 저희나름대로 연금제도는 아니고 퇴직금조로 적립하는 것이 있읍니다. 작년서부터 했으니까 개인당 4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1년에 300만원 정도 추가가 돼서 이것이 5년정도 지나가면 그렇게 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본협회 차원에서 복지회 관계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응석 : 본 협회 차원에서 복지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단지 각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을 통일해야 겠다하는 생각이고, 연금제도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본협회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론이 난다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읍니다만 이것도 가급적으로 피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지부단위로 하되 통일된 안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등등 각지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안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통일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윤경 : 지역단위로 위임을해서 앞으로 본회 예산도 통일이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지부에서 지역단위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허 집 : 인천도 지금 복지회 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억5천만원 자금이 모여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500만원씩 해 가지고 연금제도를 하기로 했읍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돈을 걷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 설계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은 : 본 협회 차원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양석 : 갑자기 물어보기 때문에 무어라 확실한 이야기는 못드리겠읍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되고 있읍니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굳이 전체적인것까지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길 : 통일된 방안에 각지역 실정에 맞춰서 복지회내지 연금제도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박해룡 : 각지역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동일회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연구되면 통일회칙(안)은 시행세칙에만 지역별로 지역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세칙을 만든다면 가능하지요.

민영기 : 저희 복지회는 2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내용에 관해서 수차에 걸쳐서 장점을 따기 위해서 반복도 해 보았읍니다만 조금전에 들으니까 전국을 통일하는 복지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제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별로 그 회원이 좋아하는 제도가 각각 다 있는데 잘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니 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의 불씨가 될수도 있읍니다.이런 입장에서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공통 내용만 만들고 세칙에서는 지부별로 나눠지는 방법도 있겠읍니다만 오히려 잘못하면 그 지역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 서로 말썽의 싸를 뿌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것 같아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복지제도를 하고 있읍니다. 각각 매년 자기 통장에 집어넣어서 예치가 되고 있고 또 이자도 늘고 있어 복지제도가 될는지 연금제도가 될는지 뭐라고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여하튼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형직 : 통일된 회칙은 바람직하지만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세칙의 묘를 현행대로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일임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복지회 구성 문제가 연금제도 실시여부에 근본이 있다고한다면 아까 회장님 말씀 가운데 65세이상 회원이 몇명인데 그중에서 몇% 까지는 저희들 복지회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지출된 금액이 월 고정급이 지급된다고 본다면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정년에 구애받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 참 뜻대로 소화를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요인이 있읍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업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년제도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연관흠 : 본회에서 기본방향만 수립해주시고 각 지역별로 세칙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김영수 : 회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그동안 복지후생연구위원회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안을 전국의 여러 복지회 회장님들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읍니다. 제가 여러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본즉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하고 토론해온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겠읍니다. 말하자면 전국의 골격은 같아야겠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안)이나 운영세칙(안)은 각지역별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고 특히 그 지역의 복지기금문제, 분배의 문제는 사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에서 잘되고 있는 복지회를 자칫 오히려 흔들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해서 통일회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거의 일반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줄거리만 나와있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지역마다 얼마든지 세칙을 만들어서 활용하실수 있도록 만들었읍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전국 회원들의 노후연금 퇴직연금등 이런 복지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제도 회의가 있었읍니다만 좋고 나쁘고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아야겠다하여 저희 어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계속 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회에 전국회장님들께 내놓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시행하고 안하고 문제를 떠나서 계속 연구해 보겠읍니다.

부산의 경우는 노후 복지를 위해서 회원들이 연간60만원씩 적립하고 있읍니다.65세 이상의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읍니다.

최윤경

전국적으로 이렇게 돈을 걷는것 보다는 지역별로 설계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 집

그 결과가 만약의 경우 전국적인 전체 건축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각 지방별로 노후복지나 퇴직연금을 조성할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들 건축사 복지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중에 창작설계 빼고나면 그다음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특히 노후 생활은 건축사 복지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창작과 복지문제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가장 큰 두가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복지회 운영위원을 여러해 해 보면서 느껴온게 있읍니다만 특히 분배문제, 기금조성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의 갈등과 대립이 있읍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진정한 우리 건축사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을 위해서 좀더 서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복지회의 조직과 운영 문제가 과학화되고, 운영능력도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봤읍니다. 그리고 건축사 복지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 더 나아가서 우리 사무실에서 고생들이 더욱 많은 보조원들의 복지문제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보조원의 복지문제가 해결되면 건축사로서 대사회적인 사회구제 사업에도 우리의 조성된 기금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복지까지 확대발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덧 붙이겠읍니다.

박홍우 : 부회장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기수 : 아까 회장님께서 기본적인 본협회로서 고려돼야 할 사항, 방향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 복지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본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취지를 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읍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가지는 사회발전이 점차적으로 조직화되고 정보화되고 있읍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모든 단체가 조직화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조직적인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저희들 건축사들 모두가 깊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능단체나 조직이 점차적으로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적인 그런 힘을 사회적으로 과시하게 돼 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우리가 좀더 앞을 내다본다면 조직의 힘이 앞으로 더 강하게 협회뿐만아니라 회원의 사회활동에 크게 작용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회원복지를 위한 기능이 본협회에도 있고 또 별도로 그것을 보다 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복지회 운영을 하고 그 복지회 운영이 지부단위 또는 분소단위나 지역별로 단위로 해서 20년, 10년 운영돼온 상황을 전제로한 전국 통일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각 지부별 복지회운영 상황이 여러가지 다른 유형으로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고 또 각 회원들에게 드리는 여러가지 혜택·복지 기타 여러가지 지원 상태가 물량표시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고 있고 각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히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전국적인 같은 건축사회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 혜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러한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서 그 유형에 가깝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지를 이 위원회에서 각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해온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운영개선 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 골격은 통일된 것이 좋고 다만 시행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일부 지부 복지회 의견이 상당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망스러운 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행정적이고 사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 복지회 운영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관계있는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들 운영 자체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각 회원간에 이해 상반으로 인해서 바람직스럽지 아니한 사항을 문서화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로 자기가 느끼는 불편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읍니다. 예를들면 건축사 회원의 부담이 협회가 복지회와 관련해서 총 일곱가지 내지 여덟가지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관계기관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것이 아닌 회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므로서 문제가 돼고 있고 현재도 정식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돼 있읍니다.

아시겠지만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고 있는 소위 사업자단체 구분해서 임의단체든 법정단체든 공익단체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사를 다 하고 있고 저희들 협회 복지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한 사항도 있읍니다. 그 조사한 사항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회원이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고 여러가지 유형의 다른 회비를 부담하므로 해서 사실상 그 구성원에 부담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고 그 구성원의 부담에 따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거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읍니다.

회원에 의해서 걷어들인 돈을 회원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돼 있지만 밖에서 볼때는 너무나 많은 회원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준다하는 것은 잘못됐다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가감하셔서 운영면에 특히 회칙에 정한 문서화된 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헌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참마음이 회원 전체를 위해서 일정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금을 회원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지원해 주고 복리증진을 위해 쓰겠다하는데도 사실상 문자화 하는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통제나 규제를 받을때는 형식적인 문서에 의해 받는 것이지 참마음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통일된 회칙안에서 다소 그러한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특히 지방의 복지회운영 세칙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거든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읍니다.

어떠한 계기든지 한번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어느 단체나 지금 현재 전부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두가 되고 문서화 돼 있읍니다. 우리 단체 뿐만아니라 다른 직능 단체도 다 그것이 들어있읍니다. 잘아시다시피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다 그것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까지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모셨읍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방안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성의를 다해서 보다 더 좋은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장원 :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좋은 말씀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본회 회지에 좌담회 상황을 게재하여 전 회원들에게 소개하려고 참석했읍니다마는, 저도 역시 회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이고 계시고 타당성을 찾고 계시는데 한가지 의문나는것은 여기 다른

우리의 참마음이 회원 전체를 위해서 일정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금을 회원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지원해 주고 복리증진을 위해 쓰겠다 하는 데도 사실상 문자화 하는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회의 조직과 운영 문제가 과학화되고, 운영능력도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봤읍니다.

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한국생사회 등 조사되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홍우 : 전국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안장원 : 저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 볼때 어떤 단체라함은 그 운영 과정에서 통일성이 있고 혹은 조직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해가 덜 되고 최대공약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연구 되지 않아서, 문제지만 좀더 연구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각 지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읍니다.

박홍우 : 대략 아까 하나의 문제를 제기시킨 것은 소위 본회 차원에서 통일된 복지회칙(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문제를 제기해 드렸는데 사실상 몇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세칙까지 본회에서 만들 그런 의사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하지 않았읍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전국의 복지회칙을 비교 검토하여 최소한도의 공통분모라도 모아 가지고 모법을 만들어서 시행세칙은 지방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대략 집약해 보면 최소한도 골격적인 복지회통일(안)을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지방실정에 따라 세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약이 되는 것 같읍니다.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하겠읍니다.

두번째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고 싶은것은 만약 그것이 성안 되었을 경우 지금도 안장원이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노후 복지연금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허 각 : 아까 저희가 서울복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드리겠읍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복지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문제가 돼서 카르텔 형성이다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각 지역적인 회원 복지하는 것이 잘못됐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각 지역 복지회가 지역 회원이 친목조직으로서 형성된 것이지 우리 협회 차원에서 어떠한 관여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아까 한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이 입회를 하게 되면 금년에 회칙이 바뀌어서 200만원이 되었읍니다만 100만원의 입회비를 내고 죽어야 100만원을 타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서 본부 차원에서 복지회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지역복지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협 차원에서 이야기할 대상이 못될줄 압니다 , 단 한가지 공정거래 위원회에 묶여있다는 것은 회비징수에 있어 회비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회비 징수하는 방법의 기준이 실적회비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카르텔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복지회비 징수하는데 실적회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카르텔 형성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요율에서 보면 그것에 7%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카르텔 형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조합이나 조직의 회비징수문제 요율 문제가 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지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한 여태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그것에 대한 징수방법이 실적회비에 대한 예치제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카르텔 형성이 되지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섭 : 회원으로서 연금이나 노후복지 문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금이나 퇴직금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서 방법상의 어떤 문제 그것이 지금처럼 실적회비에서 거출하느냐 그 범위내에서 저희 회관도 지었고 하니까 그 기금을 다른 형태의 어떤 것으로 대체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윤경 : 부산의 경우는 노후 복지를 위해서 회원들이 연간 60만원씩 적립하고 있읍니다. 65세 이상의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읍니다. 우선 본회에서 지침을 주시고 각 지부단위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노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오웅석 : 말씀중에 제가 뛰어드는것 같습니다. 각 지부단위의 복지회 운영을 아주 알차게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여러분을 모신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부단위로는 잘하고 계신데 본회에서 내다 볼때는 각 지부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일일생활권 사회에서 단일에 다 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좁은 땅에서 같은 건축사법 밑에서 우리가 일하는 회원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복지회칙을 짤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무언가 대화의 길을 트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취지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소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때 역시 본회에서

역활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연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계신것을 좀더 잘 하실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그 회칙(안)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통일해 나가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협회에서 어떠한 체재네에 복지회 체재를 흡수할려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단일화해서 운영하려고 한 뜻은 추호도 없읍니다. 입밖에 낸적도 생각해 본 일도 없읍니다. 그러한 것은 조금도 염려를 안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면 각 지부에서 다 잘 하는데 그 잘하는 것을 서로 본따서 더 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부에 가나 다 비슷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좋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셨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지부단위로 하셔야지요. 그 이상은 아무런 생각이 없읍니다. 그리고 복지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잘 사회를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각지부 복지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있다. 이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소개와 자랑을 해 주시면 그게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성급하게 듭니다.

허 각 : 다른 지역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복지회를 전제로해서 그 지역에 회원이 전입해 들어올때 여러가지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본협회 차원에서 제지해 주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개방되어 작년 같은 경우 1년간에 150명이 늘었읍니다. 서울의 경우는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어떠한 제재규정이 없어요. 지방을 보면 그러한 제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복지회비를 내야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저희도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결과는 지금 집계중입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 전국 회원이면 같이 자기의 사로 전입·전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웅석 : 전입·전출이라면 타지방에 갈수도 있고 올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지금도 제한이 없지요.

허 각 : 제한이 많지요. 각 지역에 각양 각색의 제한이 많습니다.

오웅석 : 못오게 한단 말입니까

허 각 : 못오게 하는게 아니라 복지회 가입금이라 뭐라해서 많지요. 제재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본협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오웅석 : 그런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칙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겠읍니다.

김영수 :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면 각 지부마다 복지회 운영 내용들이 서로 다르게 시행돼고 있읍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국의 복지회 운영세칙을 모아서 어제부터 비교하며 집계를 하고 있읍니다. 집계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입회비 부터도 안받는 곳도 많고 최고 입회비가 100만원 안 그러면 공유지분의 재적분 얼마등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복지회 회비만 해도 안 받는 곳으로부터 최고 4%로까지 지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연금적립금만 하더라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4.5%나 받고 있읍니다만 그외에는 연금적립을 안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연금지급 문제도 차이가 많을 수 밖에 없겠죠. 상조후생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사 개개인이 각 지방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틀립니다.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사망시 부조금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 1500여 만원 가량 나올 겁니다. 그러나 돈 10만원 정도 나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만부터 1500 만원까지 우리 건축사의 사망시의 부조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들 말고 또한가지 예를 들면 입학보조비의 문제도 전혀 없는데도 많고, 또 하는데는 하고 있는데 두세군데는 그 액수는 별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차이가 그 지방에 따라서 부득이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의 액수에 따라서 지방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딴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어느정도 서로들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더 정리하여 송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덧붙여 약속드리겠읍니다.

어떤 이해가 덜 되고 최대공약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연구되지 않아서, 문제지만 좀더 연구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그 지역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 서로 말썽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것 같아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기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안)을 만드는 것을 필요할 것 같읍니다. 이 이유로서는 제일 큰 것이 어느 협회든지 기승인된 복지회 회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중요한 골격이 되는 것은 복지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 또는 분배하는 것은 회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든가해서 무언가 좀

별도기구를 두는 것 보다도 본협회에서 운영을 하되 별도 회계를 해서 월정회비라든지 실적회비로 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별도 회계로하는 것입니다.

전형직

지역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대책복지연금 제도는 최소한도 협회 단위에서 확고한 골격이 있어야 한다

김영길

골격을 만들어서 해 놓고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 회원들이 반드시 어느 복지회든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각 지부마다 봄이되면 신입회원들로 하여금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대단히 복잡한 문제, 여러가지 회원간의 불협화음, 정화위원회나 윤리위원회까지 제소되는 상황 이런것이 반복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모범이 되는 본회 규정만을 만들고 기타 분배금이라든지, 관혼상제 등등은 전부 세칙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강제규정이 될 수 있겠고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이 바로 승인이 되는 세칙에 의해서 복지회를 운영하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김영길 : 노후대책 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실적회비에 준해야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회원 1인당 월 얼마 그렇게하는 방법 두가지 밖에 더 있겠읍니까? 현재 각 지부에서 대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적회비에서 자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단위로 통일된 방안에 몇%로 관장이 안될 경우에 그 지역에서 일어날 사태를 타지역에 행할 경우에 실적회비 징수를 할 경우 그 연금 실적회비는 빠질 경우가 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의 설계를 경북지역에서 하고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몇%를 떼었는데 경북에서는 서울회원 복지회금을 뗄수가 없단 말입니다. 각 지역은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건축사 노후대책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추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사가 차등이 있을 수 없읍니다. 어느지역 건축사는 50만원 받고 어느 지역은 30만원 받고 어느 지역은 없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 건축사들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지역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대책 복지연금 제도는 최소한도 협회 단위에서 확고한 골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우 : 이것이 통일방안이라든지 노후대책 뿐아니라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여 연구하겠읍니다.

김영길 : 3월28일 임시총회를 할테니까 그 임시총회에서 복지후생연구위원회에서 사례 발표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홍우 : 현재 본회 계획은 연금제도 만큼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일단 3월 총회에 회장님 의도는 통일회칙이라도 연구위원회에서 내놓는게 좋을 것 같다하는 그러한 의사로 계십니다.

사실 연구 연구 하지만 저희들이 뭐 전문적인 연구원도 아니고 실제로 한달에 한번 모여서 대화하고 헤어지고 가서 서류 검토하고 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저희들은 할수없이 어제 실무 소위원회를 열어서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통일방안에 대한 복지회칙에 대한 소위원회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준해 복지연금제도로 두 파트로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전부가 필요없다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각시도 지부에서 오신 여러 복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무슨 협의 기구라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연구위원회에 자문을 해주시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회장님 의견도 계시고 제 생각도 그렇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의 성격도 아니고 하나의 좌담이니까 꼭 이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후생복지 문제에 대한 것은 아무것이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전형직 : 노후 복지연금 문제는 별도기구를 두는 것 보다도 본협회에서 운영을 하되 별도 회계를 해서 월정회비라든지 실적회비로 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별도 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대신 연금제도는 저는 연구해 본 적이 없고 사망시 본협회에서 지출되는 장례보조금 100만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사망시에는 백미 50가마, 80가마다 몇천만원 지급하는 것이 있읍니다. 노후대책 문제에 대해 연구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회원이 사망시 유가족에게 몇년간이라도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고 전북지부는 회원 단체 보험을 복지회에서 가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회원께서 한분이 사망을 해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은 예가 있읍니다. 저희들은 사망시 천만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고 거기에 별도 계약시에 해약을 할 시에는 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허 각 : 회원수가 적은 지역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저희 서울에서도 보험가입을 할려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사망시 이외에 상해시에도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우리 복지회에서 대납해 주는 방

이춘상

정관상에 우선 각시도 지부 복지회가 있으니까 회원은 각 시도지부 복지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넣어 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윤기병

우리 건축사들이 노후에 대한 안심도 돼고 또한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건축사가 이만한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잘돼 있구나 할 것입니다.

법밖에 없는데 대납할 경우 대납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우리 복지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실점자든가 복지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규정상으로 봐서는 복지회에서 수령을 하게 돼 있어요. 회원들의 생리는 자기명의로 하여 자기가 가지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읍니다. 진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전 회원이 단체 가입을 하고 복지회 회비중에서 보험료가 얼마있읍니까. 실적이 없는 분도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나가고 있읍니까?

서울 같은 경우 84년 경우 전혀 배당을 받지못한 무실적자가 66명이 있었어요. 85년에 100명이 넘고 있읍니다. 그런 무실적자를 빼놓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이춘상 : 충남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회 협회에서 정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읍니다. 현재보면 각 시도지부에 복지회는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복지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부는 입회비도 받고 어떤 지부는 입회비 없이 실적이 있을때 복지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순회간담회 때도 나와있읍니다만 정관상에 우선 각 시도 지부 복지회가 있으니까 회원은 각 시도지부 복지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넣어 개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신입회원이 복지회에 입회하며 혼자 하겠다하는 말은 안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지부마다 복지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회의 기금 조성이 상당히 다 다르고 각 지부마다 보험에 든 지부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지부의 복지회 운영의 정리는 어렵지 않겠는가 따라서 본협회에서 연로회원에 대한 복지기금의 지급관계에 대해 다시 기금을 조성하려면 다시 본협회에 대한 복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되는데 현재 각 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또 납부하려면 회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겠거니와 회비내는 여러가지 명칭이 많읍니다. 만일에 본회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각 지부에서 하고 있는 예로보아서 서울같은 경우 현재 1% 따로 내고 있읍니다. 각 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 현재의 방법에서 일부를 흡수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별도로 또 낸다면 각 지부에서 회비내는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회원들이 회비 금액보다도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무엇을 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소위 신종 잡부금이 자꾸 생깁니다 본회에서 만일에 또 한가지 전체에 대한 복지기금을 조성한다면 새로 걷기는 아마 어렵겠고 현재 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기서 기금의 일부를 내야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내는 것은 어렵겠고 그렇게 하자니 각 지부의 복지회에서는 현재 기금 조성한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나오겠고 이 복지 문제에 대해 본협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규칙은 우리가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본협회에서 복지에 대한 하나의 별도 기구가 생긴다면 별도로 구성된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안이 갑자기 나올수 없고 여러복지회 회장님께서 여기서 무언가 논의한 것을 소속지부 복지회 회원들에게 본협회에서 어떤 방침이 나가면 우리 이렇게 나가야겠다 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따를수 있겠는지 이것도 연구해 봐야되지 않겠는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병 : 노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복지회 탄생이 서울지부에서 아마 76년도에 설계덤핑을 막기위해서 예치금 제도로 시작을 했읍니다. 10년전에 바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서울지부 임원 시절에 그것을 시초로 했읍니다. 가진 욕을 다 들으면서 10여년이 넘었는데 그 후에 각 시도 지부에서 역시나 예치제도 만들면서 이러한 재원이 나와서 여러회원들이 그 재원하에서 복지회를 운영해 나왔읍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실시하는 복지문제 보다도 더 나아가서 노후대책문제에 앞서 이야기할 때는 늙은 사람이 뭘 필요하냐 자기가 필요치 아니할 때는 가입을 했읍니다만 서울회원 가운데도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이제는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연배가 많이 되니까 필요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면허가진 사람은 부산회원이나 서울회원이나 강원도 산골회원이나 다 같은 회원입니다.

어쩌된 일인지 우리 건축사 협회는 복지제도가 잘 되긴 됐읍니다만 지역간에 특별한 경우가 있겠읍니다만 차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건축에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 물론 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겠읍니다만 일정한 나이가 먹어서 노후가 되었다면 그러한 대책 만큼은 인색치말고 만들어야 할텐데 어느 지부는 나갈때는 100만원 어디는 1000만원하니 100만원 받은 회원이 어느 지부가 있다가 부득히 서울로 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좋은데도 갈수있고 또한 그렇치 못한 곳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나이것 큰일났구나 저기가면 난 대책도 없어 여기 붙어있어야 되겠어 있자니 신상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제약이 많아 그 자리를 못 떠나는 이유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람직한 건축사상이 아니지않느냐 우리 가족이나 관청이나 손님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우리끼리라도 단합해 가지고 그만둘 때는 환송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통일방안이 있어야겠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략 통일된 일정률에 대한 노후대책 만큼 아마 통일된 주장이 있겠읍니다만 그런 견지로 보면 이번에 우리가 복지회에서 우선은 노후대책에 대해서 만큼은 일정하게 경기도이든 서울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떠날때는 노후대책 회비는 얼마씩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은 못을 박듯이놓고 또한 형편이 낳은 지역을 그 가운데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겠는가 그렇다면 좀더 우리 건축사들이 노후에 대한 안심도 돼고 또한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건축사가 이만한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잘돼있구나 할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토론을 통해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통일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방안으로 저희 연구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할테니 그것을 집약하여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허 각 : 한가지 서울의 경우를 들겠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영구폐업이나 사망했을 때 자기 지불액에 300%를 주는게 있어요. 그런데 회원도 많고 300%라야 1500만원 가량되는데 죽어서타면 뭐 소용이 있느냐 살아있을때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보는게 낮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나중에 유가족을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있을때 얼마씩 도와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김영수 : 그런데 본회 차원에서 복지문제 노후연금문제라든지 퇴직연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려할때 아까 서울지부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협회가 연합회제도로 나아가야 할때를 염두에 두고 본회 차원의 복지회문제가 연구되어야 합니다. 연합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금은 실적회비로 우리 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복지기금을 실적회비로 계속 충당하는 경우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한사람을 적게 내놓고 좋을것 같습니다만 협회운영만은 월정회비로 협회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연합회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협회운영은 동일한 전국회원의 동일한 액수의 월정회비로 운영이 되고 실적회비는 복지기금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연합회제도와 더불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복지회 운영에 관한 모법을 만들고 지부별로 실정에 맞게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영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제도를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본회에서 기본방향만 수립해 주시고 각 지역별로 세칙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종은 :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더드릴 말은 없읍니다. 협회 차원에서 복지회 운영에 관한 모법을 만들고 지부별로 실정에 맞게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영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제도를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민영기 : 금년 10월 정기총회에서 독립 채산제로 바뀌게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총회에서 대의원 합동이름으로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채택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3월 임시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겠읍니다만 그렇게 된다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회비를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본부는 월정회비로 지부는 실적회비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회비를 얼마나 올려서 충분한 그돈까지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대책비까지 거기서 할수가 있겠느냐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각 지부에서 가능한 한 본부에서 부조금을 포함하되 지방의 노후대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는 보강을 하고 없는데는 있도록 해서 반드시 노후대책에 관한 것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내용의 것을 만들때 지금으로부터 15년전에 이 노후대책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사들이 비교적 젊었읍니다. 이제는 67세 되신 분도 있고 60세 노년층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그 분들도 반대를 했읍니다. 15년후에 이렇게 될줄 알았나요. 비교적 건축사들이 늙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먹혀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모법을 빨리 만들어서 조금전에 서울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정관에 분명히 있읍니다. 복지제도 할수 있도록 이것이 전혀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만들은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권도 없고 힘이 없어 회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빨리 모법

통일 회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연구되면 통일회칙 (안)은 시행세칙에만 지역별로 지역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세칙을 만든다면 가능하지요.

박해룡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굳이 전체적인것까지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의견입니다.

송양석

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하겠읍니다.

이춘상 : 정관에 보면 협회사업중 복지 후생에 관한사업을 한다고 있지요?

이춘상 : 그러니까 다음에 회원이 우리협회 입회한다 할때 입회비라고 있을겁니다. 그때는 소속지부의 복지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문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허 각 : 여기는 전부 복지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문제가 없읍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지적된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복지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회비징수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비징수를 실적회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회비의 몇%다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회비징수는 다른 차원에서 강구해야 될것 입니다.

이춘상 : 여하튼 복지회에 가입하여야 된다는 것하고 연금조성 기금도 특별예산의 폐업환불금 예산을 흡수하여야 겠읍니다. 그 사업이 복지회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다만 젊은 분도 폐업 할 때에는 폐업 위로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복지연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홍우 : 지금 현재 그것이 예산에만 있는 것이지요.

이춘상 : 특별회계에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회원들도 폐업할 때는 혜택이 돌아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음에 본회로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느냐 별도로 또 받아야 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인것 같습니다.

김영수 :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읍니다. 전국 통일회칙안의 결론은 어느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노후대책은 계속 연구하여야 될것 같은데 그 노후대책에 대한 협회차원의 복지문제 각 지역의 복지회와의 연관된 문제를 좀더 연구검토 하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모처럼 아까운 시간 내셔가지고 전국의 복지회장님들 다올라 오셨는데 가칭 전국복지회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의 복지후생연구위원회에서 계속 연구되는 안들을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그 문제를 다음 기회에 또 결론짓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대충 끝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박홍우 : 지금 대략 집약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통일회칙 방안하고 연금제도가 계속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저희들은 자신이 없어 해체하려고 했읍니다〈웃음〉 여러분들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고 저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협의 기구를 탄생시켰으면 합니다. 어떻겠읍니까 여러분

민영기 :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다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구하고 1년에 한두번 이렇게 모이는게 좋겠읍니다.

박홍우 : 민지부장님께서는 별도 협의기구를 만들지 말고 위원회에서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무리를 해서 1년에 한두번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계속 연구해 보라는 명령으로 알고 저희 연구위원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보겠읍니다. 오늘 특히 멀리서 와 주신 각지부복지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나의정직 너의믿음 사라지는 불신풍조

○건설부공고 제12호

공 고

건축사법제13조·제16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도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86. 2. 1. 건설부장관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건 축 사 자 격 특 별 전 형 시 험
1. 시 험 일 자	○제1시험:'86. 4. 27(일)10:00~12:30 ○제2차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발표후 개별통지	○필기시험:'86. 4. 27(일) 10:00~11:40 ○실기시험:필기시험합격자발표후 개별통지
2. 시 험 장 소	○제1차시험:한양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내) ○제2차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발표후 개별통지	○필기시험:한양중·고등학교(서울특별시내) ○실기시험:필기시험합격자발표후 개별통지
3. 응 시 자 격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제14조에 해당하는 자	○건축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있는 자로서 동법제14조에 해당하는자 ○건축사법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동법제14조에 해당하는자
4.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선택형) 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법규 ○제2차시험 건축계획(선택형 및 논문형) 건축설계(실기)	○필기시험(선택형) 건축구조·건축계획 ○실기시험 건축설계
5. 응시원서접수및 수험표교부 가. 접수 및 수험표 교부 나. 접수 및 수험표 교부	○1986. 4. 1~1986. 4. 8(6일간) ○서울특별시, 각직할시, 각도청민원실	○좌 동 ○좌 동
6. 제 출 서 류	○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 원서1통: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사진2매: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응시수수료:2,000원(정부수입인지) ○반신용봉투1매:등기우표첨부	○건축사자격특별전형응시 및 면허신청원서1통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좌 동 ○좌 동 ○좌 동
7. 합 격 자 발 표	○제1차시험:1986. 5월중 ○최종합격자발표:1986. 10월중 *개별통지 및 정부제2청사게시판에 게시	○필기시험:좌동 ○최종합격자발표:좌동 *개별통지 및 정부제2청사게시판에 게시
8. 응시자준수사항	○필기시험(객관식):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주관식):흑색 또는 청색의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되 동일한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연필, T형자, 3각자, 스케일자이외의 기계식제도용품(줄T자등)은 일체사용할 수 없다. ○응시원서제출후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건설부 건축과(503-7365~6)로 연락하여야 한다.	

北京國際建築 심포지움에 參席하고 와서

北京紀行 (1)

A Tnip to Red China

崔 昌 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작년 11월 1일부터 5일간 中共北京에서 "生土建築"이란 주제로 國際建築 심포지움을 開催한다는 파리U.I.A.본부에서의 연락을 받고 建築家協會는 흥분과 긴장으로 문공부, 외무부, 安企部와 協議끝에 입국할 수 있으면 입국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회원에게 참석희망 신청을 받은 바 80여명의 회원이 신청해 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은 못해도 중공에 대해서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고 우리와 육로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점과 歷史的으로나 政治, 文化, 學術面에서 우리와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나라라는 점에서 비록 政治的 理念이나 体制가 다르고 상호불인정 국가라는 점, 특히 建築面에서는 우리의 古建築의 원류일 수도 있는 中共 古建築에 대한 관심과 요즈음에 와서 대만과 우리와의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등, 가깝게는 중공민항기 사건이나 해군함정사건, 중공기의 월공귀순사건 등등의 일련의 중공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建築家들의 중공입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에서 또는 우리 정부의 대명한 결단에 힘입어 家協은 들떠 있었고 신청회원 중에서 10명을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했고 수차의 긴급이사회에는 겨우 연로층으로 하기로 하고 부득이 현역임원 약간명을 포함해서 10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은 오래된 일이었으나 심포자움 등록금을 북경 중공은행에 발송하고 中共建築學會에 통보했다. 북경 중공은행에서 등록금을 받았다는 연락이 온 지 3일도 못되어 아무런 이유나 말도 없이 등록금 금액이 고스란이 되돌아왔다. 실망한 家協은 파리U.I.A.본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사람을 파리로 보내서 설득시키기도 했고 미국적한인을 북경으로 보내서 항의도 시켰고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별무 소식이고 진전없이 시간만 흘렀다. 별수없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각자에게 등록금 반환까지 했다. 흥분해서 기대했던 중공입국은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월말경에 느닷없이 U.I.A.본부에서 속달된 한장의 TELEX는 우리를 또다시 흥분케 했다. 即 中共建築學會에 강력히 조치했고 중공은 駐동경중공대사관에서 입국 VISA를 줄 것이니 서둘러 입국하라고 되어있고 아울러 日本建築學會가 많은 협조 노력을 하고 있음도 말았다. 우리 외무부도 긴급히 여권을 발급했고 여행사사장이 우리 여권을 모두 가지고 동경에 가서 日本建築學會측과 협력해서 3일이나 걸려서 결국 VISA를 발급받아온 것이 10월 30일 저녁이였다. 이렇게 어렵고 기적적으로 10명의 建築家들이 중공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간의 애로나 시간상의 초조는 말할 것도 없고 용케도 10월 31일 오후 김포를 떠나 동경 경유로 11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긴장된 북경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이다. 본시 이번 여행은 家協으로서는 9년간의 꾸준한 교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78년 Mexico U.I.A.총회때 부터 1981년 Poland Walsaw총회, 1984년 Cairo총회 까지 중공대표들의 의사타진이나 초청해 줄 것을 교섭했던 것이고 그때마다 그들은 서슴치 않고 문제없다. 꼭 초청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정도였다. 그러던중 北京에서 국제건축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니 家協으로서는 긴장안할 수 없었다. 하여간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우리 일행 10명은 북경공항에 안착한 것이다.

그러나 10월 31일 출국 11월 13일 귀국의 약 2주일간의 이번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은 기억을 되살려서 일자의 허위도 없이 여행중 하루도 빼놓치 않고 쓴 일기를 보며 써볼까 한다.

建築面에서는 우리의 古建築의 원류일 수도 있는 中共 古建築에 대한 관심과 요즈음에 와서 대만과 우리와의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등, 가깝게는 중공 민항기 사건이나 해군함정사건, 중공기의 越空귀순 사건 등등의 일련의 중공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건축학회회장과 (중앙에 책든사람)

10月 31日

쾌청의 가을 날씨였다. 약 1주간 정신없이 허둥대다 두섬두섬 준비하고 떠나는 여행이다. 김포공항에 전원이 오후 1시 집합해서 출국수속을 마쳤다. 모두가 흥분되어 있고 불안하기도 했다. 보내는 가족이나 협회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들이다. 우리는 지금 대명하게 적성 공산국가로 떠나는 것이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긴장된 마음으로 출국했다. 일행중 필자는 약간 다른 입장과 심정이었다. 그것은 꼭 40년전 학병으로 중국전선에서 각지를 돌아다녔고 북경 일본군사령부 공무과 설계반에도 3년간이나 근무했고 여타지역 근무까지 합쳐서 5년간이나 中國에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中國語도 통할 수 있었고 지리도 잘 알고있는 터이라 이번 여행의 통역이나 안내역을 맡아놓고 해야할 판이다. 그때는 일본 군복을 입고 남의 나라를 위해 남의 나라 땅에 전쟁을 한 것이다. 나의 나이 겨우 23세부터 28세까지의 청춘의 노란자위를 中國大陸에서 無意味, 無價値하게 소비한 셈이 되는데 이제와서 나의 청춘을 누가 보상해 줄리도 없으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혈기에 넘치고 무서운것 없던 그때 나는 北京에서 엉뚱한 짓도 많이해서 말썽도 많이 부렸다. 당시 북경대학의 周作人 教授나 錢踏天 教授를 찾아가서 나의 심중을 털어놓기도 했고, 북경거리의 뒷골목이나 공공변소벽이나 가정집 대문등에 써있는 각종의 낙서를 모아 스크랩한 적도 있었고 중국인 청년들과도 사귀인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中國을 알았고 역사와 전통의 힘이 어떠한가를 알았고 中國人들의 인생관, 自然觀, 宇宙觀 같은 것도 알아보았고 특히 儒教와 道教의 세계나 書画나 風流에 대해서 제법 공부한 셈이다.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다. 古跡이나 史蹟도 찾아 다녔다. 한여름 紫禁城 뒤 景山公園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고향생각도 해보았다. 그때 北京은 숲의 都城이라고 까지 불렀다. 樹木이 울창해서 시내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었다. 길가에서 서민들의 음식도 자주 사먹었다. 이런 일들이 다 40년전 일이다. 이제 중노에서 백발이 성성해서 다시 北京엘 갈 수 있다니 꿈만 같고 놀라웁기만 하다. 하기야 家協에서 인원 선정할 때도 우선 연로자를 먼저 보내자고 한것도 中國과 우리나라는 반드시 국교가 될 것이고 왕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제에서 연로층이 가게된 것인 줄 안다.

JAL機는 오후 3시30분 이륙했고 大阪에 도착은 오후 5시20분 이었다. 공항에는 일본建築學會 임원이고 明治大學教授인 浦良一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浦 教授에게서 비로소 이번 여행에 일본 建築學會가 왜 발벗고 나섰는지 알았다. 즉 금번 北京 심포지움은 그동안 日本 建築家들이 수차 中共에 가서 中共 각지의 生土建築을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로 했고 또 중공으로 하여금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게끔 권유했다는 점과 주최는 中共建築學會이지만 협찬은 日本 建築學會이고 日·中友好協會도 찬조했다는 점등을 알았다. 현재 日本人들은 일반인들도 중공 관광여행이 대유행이고 더우기 신혼부부들의 여행은 중공으로 택하고 Silk Road 여행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터이다. 浦 教授도 수차 中共을 방문했고 中共建築學會 임원들과도 친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中共의 사정과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 등은 친절히 말해 주었다.

공항 부근의 日本航空 호텔에서 일박 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리 예약되어 있었기에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大阪의 쾌청의 밤 하늘을 보며 내일아침 10시엔 北京으로 직행한다.

한여름 紫禁城 뒤 景山公園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고향생각도 해 보았다. 그때 北京은 숲의 都城이라고 까지 불렀다. 樹木이 울창해서 시내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었다.

11月 1日 구름 한점 없는 좋은 날씨였다. 일식 조반도 별미였다. JAL 783機가 정각 10시에 이륙했다. 일행은 벌써부터 카메라에 필림을 장진하고 서성거렸다. 富士山 정상엔 백설이 덮혀 있었다. 機內의 확성기는 日語, 英語, 中國語로 하고 있었다. 이윽고 上海 上空을 통과한다고 방송이 있었다. 모두 창가에 가서 상해 시가를 촬영했다. 상해! 40년전 해방직전 일본군을 탈출해서 한국독립군 장교로서 복원귀국대란 완장을 차고 歸國船을 탔던 곳 바로 그 곳 上空을 날으고 있는 것이다. "가덴부릿지" "四馬路(쓰마로우)" 虹口公園, 부두 등이 눈에 선한 상해이다. 이날 중공대륙도 쾌청의 가을날씨였다. 너무도 광활한 대지 양자강의 지류인 황포강이 상해 중심을 흐르고 있다. 수구한 長江, 수많은 榮華盛衰와 풍운을 지켜본 長江은 말없이 옛처럼 흐르고 있다. 곧이어 태산이 보이고 기억도 새로운 석가장 남경, 개봉 제남을 알아볼 수 있었다. JAL機를 계속해서 일로 중국 대륙을 북상하고 있다. 山東半島가 보이고 天津市가 보인다. 이젠 北京에 다 왔구나 했다. 멀리 華北平野가 나타났고 곧이어 정오 55분에 北京市 華北쪽 교외 북경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오랫만에 밟는 중국 땅이다. 감개무량할 뿐이다. 일행은 모두 긴장된 표정들이었다.

심포지움장 정문에서

북경공항에서 부터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알았다. 즉 여객은 10명 단위의 조로 되어있는 단체이면 아주 쉽게 입국수속이 된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업무는 中國國際旅行社 직원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일행 10명은 단체임으로 쉽게 끝났고 여행사에서 벌써 소형버스로 출영 나와 있었고 建築學會 職員도 나와 있었다.

대개의 共産國家에서는 여행사가 국가기관이고 학제회의나 외국인 출입은 거의 여행사가 취급한다. 즉 매일 그날의 모든 정보를 외무부나 당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일종의 정보원을 겸한것이 모든 여행사 직원들이다. 이런 일은 전년 Poland Walsaw에서도 이미 체험한 바가 있어 그들에 대해 언행을 신경써야 한다.

여행사직원, 建築學會 職員이 성큼성큼 우리 일행의 짐을 소형버스에 싣고 우리도 다 탔다. 공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다. 시내로 향하는 대로는 양측이 포푸라 가로수가 아주 수령이 어린것을 보면 이 공항의 건설도 근자에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로 양측은 농토이고 농가도 보인다. 이 공항 대로에 牛馬車가 무수히 다닌다는 것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 트럭이나 차들은 아주 적어서 교통체증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 가끔 교통신호도 보이나 각양각색이다. 통일된 것이 아니다. 교통순경은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안내 청년에게(그는 日語와 英語 하나 아주 서툴렀다) 사진 촬영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아-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마음대로 찍으라"는 대답이었다. 명랑하고 자신만만한 태도이고 무언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이다. 나는 운전사 옆자리에 가서 앉고 어설픈 중국어로 그와 이야기해 보았다. 그는 우리를 日本人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조선인이냐고 한다. 아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했더니 놀라면서 "아-南韓國"하고 아는체를 한다. 大韓民國이다. 北朝鮮 南韓國이 아니냐 한다. 우습기만 했다. 韓國人이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하는 표정이다. 모든 일이 놀랍기만 하고 이상하기만 했다.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차도 사람도 많아진다. 공항을 떠나 약 40분 후에 우리는 지정된 友誼賓舘(Friend Ship Hotell)에 도착했다.

호텔에는 벌써 建築學會 人事들도 와있고 여행사 담당자들도 나와있어 우리들의 방 배려도 다 되어 있었다. 5층에 연속된 5개 방이 배당되어 있었다. 한방에 2명씩인데 1숙박에 식사포함 60$이면 비싼 편이다. 욕실, 변소 등 완전하며 서울의 중류급 호텔 정도는 되었다. 로비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아-선배님 어찌된 일입니까. 용케 오셨네요」 하면서 日本 名古屋工大 宮野秋彦 教授가 달려와서 껴안는다. 나도 반가웠다. 宮野 教授는 동경에서의 나의 17년 후배가 되고 전년 우리 建築學會 초청으로 서울에 와서 "省에너지"에 대한 강연회도 가진 바 있는 친구이다. 알고보니 이 친구가 日-中友好協會 會長職에 있고 中共엔 벌써 네차례 다녀갔고 특히 山西省 지방의 생토건축 현장도 수개월간 조사한 바 있다고 했고 Silk Road 여행도 했다고 들었다. "선배님 이번 북경에 마누라와 장남도 동행 했읍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장남을 불러 나에게 인사 시킨다. 나는 속으로 이친구 아주 중공통이 되려나 보다 했다. 차남은 임학을 하고 있어 수년전 부터 나의 장남과 서독에서 임학을 한다고 해서 서로들끼리는 편지 교신도 자주하고 있었는데 결국 동경대학에서 임학을 하기로 했으나 나의 장남은 현재 서독에 유학중 이어서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고 그의 형이 대신 사과까지 한다. 그들은 여전히 교신이 있고 친히 지내는 사이다.

나의 나이 겨우 23세부터 28세까지의 청춘의 노란자위를 中國大陸에서 無意味, 無價値하게 소비한 셈이 되는데 이제와서 나의 청춘을 누가 보상해 줄리도 없으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개의 共産國家에서는 여행사가 국가기관이나 학술회의나 외국인 출입은 거의 여행사가 취급한다. 즉 매일 그날의 모든 정보를 외무부나 당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일종의 정보원을 겸한것이 모든 여행사 직원들이다.

이 호텔에는 日本 대표가 거의 다 유숙하고 있어 青木志 郎, 八木幸二, 石川清, 富樫穎 等 일본에서도 현역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이며 구면이어서 웃어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한국에서 용케도 입국했다면서 대단하십니다 하며 놀라고 있었다.

각자 배당된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한숨을 쉬며 "아-오긴 왔구나" 했다. 저녁때 모두들 로비 커피숍에 내려갔으나 나는 목욕을 하고 내의바람으로 있는데 풍채좋은 중국인과 묘령의 여인이 내 방을 노크한다. 누구냐고 했더니 中共建築學會 會長이라고 한다. 나는 긴급히 옷을 주워입고 대했다. "먼데서 오셨기에 인사차 왔으나 모두 안계셔서 꼭 걱정된다고 했다. 아니오 다-들 커피숍에 내려가 있다고 했더니 아-그러냐고 웃는다. 동행의 여인은 24세 정도의 미인인데 영어통역을 했다. 그는 차 한잔 마시고 곧 내일 회의장에서 만나자고 하고 돌아갔다. 그때가 밤 10시경 이였다.

北京의 첫날밤이다. 무언가 꿈속에 있는것만 같고 잠이 안온다. 40년전의 北京을 회상도 해보고 그때의 中國 청년친구들은 아직도 다들 北京에 살고 있는지, 자꾸만 옛 생각들이 되살아난다. 나는 지금 확실히 北京에 와 있는 것이 다라고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지않는 잠을 청했다.

11月 2日 상쾌한 아침이었다. 우리는 北京에서 하룻밤을 지낸 셈이다. 오전 9시 30분 부터 호텔 구내 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움이 시작된다. 원래 이 호텔은 소련인들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구내는 옛날 東風師範大學 자리라 그당시 건물도 남아 있고 대회의실도 東風師範時의 중강당을 내부만 개조한 계단식인데 현재는 北京 과학회당이라고 정문앞에 큰 桐校 看板이 붙어있고 題字는 鄭小平 現書記長의 글씨인데 1984년이라 되어 있으나 내부수리해서 용도 변경한 것도 얼마 안되는 셈이다. 개회식이 시작되기 전 각국 대표단이 다 입장해서 착석했는데 우리 일행은 네째열 앞줄에 북한 대표 네명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우리 일행중 몇사람이 앞에 나가 그들의 정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당혹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다 보며 우리들에게 "사진은 왜 찍습니까? 보고할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그 다음부터 3일후 人民大會議場에서의 초대만찬석상에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뿐 말은 안하고 지냈다.

開會式詞에서부터 영어통역이 옆에 서서 통역을 했다. 이 회의장은 아직 同時通譯裝置도 안되어 있고 그런 통역능력도 없는것 같았다. 그것은 어제 내 방에 왔던 建築學會長과 동행했던 여자 통역도 후에 안 일이지만 북경제팔호중학교 영어교사이었음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번 심포지움의 통역에는 北京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소집한 것 같았다. 개회식 순서는 간단했으나 祝辭(建設部長官) 日本建築學會代表 等으로 통역 때문에 두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2시에서야 겨우 5개분위가 결정됐고 각 참석자들은 자기가 관심있는 분과에 참석신청을 했다. 우리 일행은 꼭 10명이므로 2명씩 3조를 짜서 각 분과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고 오후부터 각기 該當 分科 討議에 참석키로 하고 午食에 돌어갔다.

이제부터 11월 5일까지의 각 분과의 토론이나 주제논문 등 전부 유인물 되어 있어서 전부 가지고 귀국했고 家協이 이것을 정리해서 후일 기회를 보아 우리 건축계에 제공할 것으로 되어있어 이 기행문에는 언급않기로 한다. 그 내용의 개요는 흙의 건축은 건축자체의 시원적인 것이고 현재 세계의 많은 곳에 이 흙의 건축이 있고,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무리 건축자재의 발전이 다양하다 해도 흙은 건축자재의 주종이고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집을 짓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건축의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각처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흙건축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점은 더욱 연구해야 할 점은 배수, 환기, 채광, 위생처리등은 각분야별로 조사연구한 것이 발표되고 제안되어 이것을 토론하고 최종일 종합보고하고 폐회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흙건축에 대한 연구나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建築學會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추려서 가지고 가서 제출했다.

우린 많은 선물을 서울서 가지고 갔는데 그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86, '88의 올림픽 포스터, 아시안게임 포스터, 올림픽 뱃지 등 이런 선물은 대개 中國建築學會 요인들이나 中共 각지서 온 대표들에 나누어 주었다. 몹시들 좋아하면서 서로 자기도 달라고 야단들 이었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올림픽 뱃지였다. 호텔 직원이나 여행사 직원들에게 컵이나 포스터, 스티커 등을 나누어 주면 호텔 차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벌써 자유의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호텔방에서

'85. 12. '86. 1월호에 계속

54층건물구조계산을 하면서 [3]

Structure Calculating of the 54 Story Building

李 昌 男
건축사사무소센구조

말뚝과 저내력 Pier

사무동기초는 경암반에 지지되는 Pier로 시공했으나 전시동의 그 많은 기초까지 같은 공법으로 시공할 수는 없었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앞에 설명한바대로 전시동의 일부 기둥은 축력이 무려 1,100ton이나 되어서 큰 기초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전시동 기초를 위하여 말뚝 지정으로 설계 하였고 말뚝 1본의 내력은 80ton이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벽에 부딛치고 말았다. 600㎜ φ 말뚝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국내에 3곳 뿐인데 주문 생산에서 납품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것도 Pier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Reverse Circulation Drill의 확보 문제로 손쉽게 뚫을수 있는 100 t/㎡ 지내력 지반까지만 내려 정착시키는 저내력 Pier 로 계산 하였다. 이 또한 수배 가능한 장비에 맞추는 설계가 되고 만 것이다.

전시동 기둥의 축력도 가지각색이어서 여러가지 직경의 Pier가 필요 하였으나 이 역시 Pier 철관 제작비를 고려하여 1.5m, 2.4m 두 종류로 7 종류의 바탕 면적이 확보되도록 확공 설계하였다.

Mat기초와 내수판

K.T.C.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Pier장비 수배가 벽에 부딛쳤을때 거론된 방법이 Mat기초이었으나 그 선택이 보류 된 것은 부동침하와 공사비 증액 때문이었다. K.T.C의 경질지반 Level은 책상면처럼 고르지 않을뿐더러 지하 2층 바닥면의 토질 또한 균질하지 않다. 거기에다 사무동의 하중은 그림 4와 같은 사다리꼴이어서 부동침하의 가능성이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Mat기초는 가장 비싼 기초구조 방식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독립 기초의 바닥 면적이 건물 전체 바닥면의 ½을 차지해도 독립기초 쪽이 경제적이었다.

별로 큰 지내력이 필요하지 않은 현장에서의 지내력 판정에는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적인 해석이 쓸모가 있다. 메운지 얼마 되지 않은 대지에서는 예외이겠으나 원지반에서 지하실을 파고 Mat기초로 시공 할때는 지내력 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Boiling, Heaving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예외)

지하실 공사를 위하여 파낸 흙은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으므로 파낸 흙 밑의 지반은 그 파낸 흙보다 가벼운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건물을 짓기 전 건물 무게보다 무거운 높이의 흙을 연약지반 위에 장기간 쌓아 두어 충분히 침하시킨 후 흙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지하 수압의 이용이다. 토질에 관계없이 Mat기초바닥면이 지하수위 아래에 있으면 지하수위에서 1m 내려갈 때마다 어김없이 1 t/㎡ 의 수압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지하수위 아래 10m 에 Mat기초가 있다면 최소 10t/㎡ 의 반력이 확보되는 셈이다. 10t/㎡ 라면 무려 10여개 층의 하중에 해당되는데 지하수위가 높은 대지에서의 기초설계에서 항상 부딛치는 문제이다.

지하수위가 높으면 지하실 바닥은 내수부재로 설계 하여야 하는데 기둥 축력이 크지 않을때는 이 내수부재가 기초의 역할까지 하게 되어서 별도의 기초가 없어도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기둥 축력에 비하여 지하 수압이 너무 크면 건물에 말썽이 일어나게 된다.

집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의 De-Watering과 Rock Anchoring에서 다루기로 하고 수압으로 인하여 건물이 떠오르지는 않는 범위의 기초구조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에서 기둥 배열이 10m × 9m 로 구분된 평면이 있다. 기초 설계용 기둥 축력이 450ton 이고 지내력이 50t/㎡ 라고 하면 독립 기초가 3m × 3m 정도의 크기로 설계 될 것이다.

기초가 만약Mat라고 하면 10 × 9 = 90㎡ 내압판의 지반 반력은 450 ÷ 90 = 5 t/㎡ 로 지내력 50t/㎡ 의 $\frac{1}{10}$ 에 해당하는 값이다. 만약 내수부재 설계용 지하 수압이 5 t/㎡ 라면 위의 3m × 3m의 독립 기초는 없어도 건물이 평형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지하 수위가 떨어져서 내수부재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전 중량이 독립 기초로 옮겨갈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하 수위의 이동에 따라 하중이 독립 기초에서 내수부재로 옮겨 다니는 것이다.

지하 수압이 5 t/㎡ 과 0 t/㎡ 이 아닌 그 사이의 수치일 때 독립 기초와 내수부재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 형님 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하중을 분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사비를 줄일 수는 없을까? 지하 수압으로 치켜 올려주는 량 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독립기초 설계용 하중으로 사용해도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만약 지하 수위가 설계치와 다름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가물어 지하 수위가 내려가서 올려 미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

"모든 재료는 하중을 받을 때 변형을 일으킨다. 힘 센놈이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떠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호령만 하는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게 될 것인가 하는것이 걱정거리이다.

이런 염려 때문에 기초는 기초대로 전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하고 내수부재는 또한 장마철 지하 수압에 견디도록 계산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내수판과 그 밑의 흙 사이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닿아 있으며 수위가 올라가면 흙의 입자 사이의 공간으로 물이 스며들게 된다.

지하실 바닥 내수부재의 콘크리트공사를 위해서는 물을 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흙과 밀착되는 것이다. 기초 바닥면과 내수판 바닥이 같은 Level일때는 그 조건 또한 다를 바 없다. 같은 지내력을 갖는 땅인데 기초 밑은 50t/㎡를 지지하고 나머지 내수부재 밑은 5t/㎡ 만 부담하도록 누군가가 교통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이것이 부재의 변형이다.

모든 재료는 하중을 받을 때 변형을 일으킨다. 힘 센놈이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떠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호령만 하는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힘 센 기초와 약한 내수판은 서로 자기 능력에 맞는 분량을 분담하는 교양과 미덕을 발휘한다.

내수판이 힘에 겨워 좀 구부러지면 기초가 모르는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껏 버팅겨 준다. 그러다가 힘이 모자라면 "조금"주저앉아 버리고 한숨 돌린 내수판에 짐을"조금"넘겨 준다.

이렇게 상호 보완작용으로 상부구조물을 지탱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씩 침하 하면서).

그런데 말뚝 지정이나 암반에 지지된 Pier와 연약 지반에 시공한 내수판도 위와 같이 사이좋게 서로 도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 있다. 물론 지하수위가 내려 갔을 때 내수판 밑의 흙이 수압에 대응할만한 내력을 발휘해 주지 못하면 "갑자기"주저 앉아야 하는데 말뚝이나 Pier가 그것을 막을 여력이 없으면 그 또한 "갑자기"항목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이때 그 침하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조금씩"이라는 말과 "갑자기"라는 어휘의 차이가 구조방식 결정에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판단은 전문 지식이 있는 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메운지 얼마 안되는 지반에 집을 지을때 기초는 경질 지반에 앉히면서 내수부재는 메운 땅에 얹히는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메운땅 위로 지하 수위가 이동하여 고정되는 예는 드물다)에는 지하 수위가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내수부재를 기초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다.

K.T.C.와 기초는 그 물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한 끝에 기초와 내수판이 기둥 하중을 공동 지지하는 방식으로 설계 하였다.

이는 후에 설명할 De-Watering 즉 지하 수위를 인공적으로 낮춘 것과 지질상태 및 하중의 크기를 종합 검토하여 채택한 공법인데 지하 수위는 De-Watering으로 내려 놓은 그 밑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대지임을 밝혀둔다.

부동침하

K.T.C.는 그 평면 범위가 광활하여 Pier의 길이 차이가 크다. 한편 경질 지반이 노출된 부위의 기초는 Pier기초가 아닌 독립 기초이고, Pier로 시공 하기에는 석연치 않고 직접 독립기초로의 설계도 불가능한 부위는 독립 기초를 경질 지반까지 파고 내려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기초 종류는 크게 나누어도 3 종류나 된다.

이렇게 같은 건물에 여러가지 기초를 혼용하면 부동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많다. 같은 종류의 기초를 고집한 나머지 경질 지반에도 말뚝을 막으라고 고집하는 설계자를 본 일이 있다.

모든 기초는 하중을 받고 다소간의 침하를 일으키기 마련인데 여러 종류의 기초를 혼용할 때는 그 침하량이 될수록 같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상 모든 기초가 동등하게 침하하면 그 값이 크더라도 경계 부위의 처리만 해결되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 다만 부동 침하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느 기초도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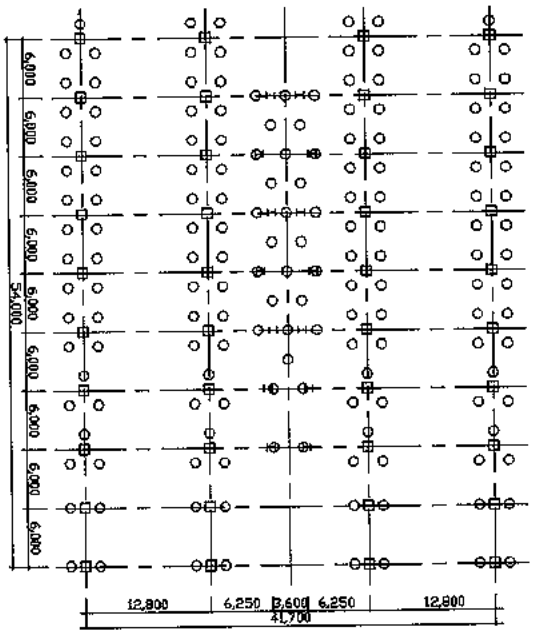

그림 6. 벌집방식

"Pier 나 대형 말뚝같이 큰 지지력을 가진 지정은 되도록 기둥 중심 가까이에 배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실무에서 항상 확인되는 일이다."

하량이 적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그 확실한 방법은 역시 모든 기초의 지지지반이 "경질"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인데 K.T.C.의 세종류 기초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구조관계 교과서에는 같은 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기초 방식을 혼용함을 금하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한 내용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기초와 지정의 궁합

창호지 문구멍은 손가락에 침 발라서 뚫어야 운치가 있다. 방패는 창을 막는데 쓰며 대전차포는 탱크를 부수는데 쓰인다. 기초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이는 그 지정과 어울리는 한쌍의 부부와 같아야 한다.

3,000ton 하중을 지탱하는데는 암반까지 파고 내려가 독립 기초를 설치하거나 Pier지정이 적합하며, 기둥 축력이 적은데도 지하 수위가 높아 내수판이 두꺼워질 때는 Mat 기초가 합리적이다.

연속기초, 복합기초, 독립기초, 이들 모든 기초 방식들은 그들 각각에 타당한 선정 이유가 있어야 하며 조금도 어색하거나 억지가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

Pier나 대형 말뚝같이 큰 지지력을 가진 지정은 되도록 기둥 중심 가까이에 배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실무에서 항상 확인되는 일이다.

Pier는 Pier대로 건물 밑에 보기 좋게 균등 배열하고 그 위에 다시 Mat기초를 두도록 종용하는 실력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구조계산 보다 더 어려웠다.

기초의 두께, 콘크리트 강도

기초의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데도 또 한번의 홍역을 치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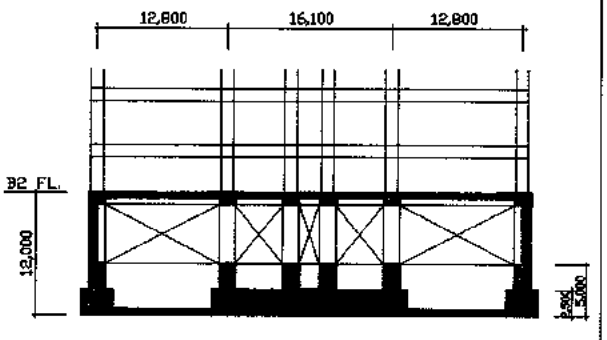

그림 7 몽땅파는 방식

나무는 가지가 무성할수록 뿌리가 굵고 깊어야 한다. 54층이나 되는 건물의 단면을 그려 놓으면 역시 기초가 두꺼운 것이 얇은것 보다는 안전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필요 이상의 자재와 공사 기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크다고 작은 것보다 힘이 센가? (나는 작아도 센 구조인데…) 기초 덩어리가 아무리 두꺼워도 Pier가 보강되는 것은 아니며 Pier의 크기와 내력이 결정된 이상 그 위의 모든 자재는 "짐"이 된다. 도면에서 보기 좋으라고 기초를 두껍게 설계해야 하는, 구조상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54층이나 되는 건물의 기초 두께는 적어도 3.5m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F_c=300kg/㎠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분에 맞추어 어떤 테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 모든 잔 가지들을 엮어 나가려 하는 Engineer의 태도는 투시도부터 그려놓고 평면을 조작하는 건축 설계와 같은 것이다.

결국 콘크리트 강도는 Pier를 F_c=210kg/㎠기초를 사무동은 F_c=240kg/㎠, 전시동은 F_c=210kg/㎠로 계산하였고 기초 두께는 건축과 설비 공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합리화시켜 총 두께 3.5m로 결정 하였다. 구조상으로는 2.1m정도가 적당한 두께였다.

아쉬웠던 이야기들

Pier시공장비 수배가 벽에 부딛쳤던 초기단계(새 장비 도입 기간이 약 7개월 소요)에서는 가능한 여러가지 기초 방식이 거론되었다. 그 중에서 도랑파는식(Ditch Method)이 제안 되었는데 실력자들의 외면을 받아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한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신세가되고 말았다.

사무동의 주요 기둥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열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이 방법은 3mϕ Pier시공 장비는 없고 1.5mϕPier만 가능하여 건물 밑에 벌집처럼 1.5mϕPier를 박은 후 Mat 기초로 설계하자는 안과, 그럴바에는 건물 밑을 몽땅 파서 건물 자체를 내려자는 두 가지 안중의 하나가 선택될 찰라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P-inch Hitter였다.

벌집식 방법은 Mat기초 항목에서 가장 비싼 공사방식이라는 설명을 했었고 남은 것은 몽땅 파는 방식인데 불행히도 N.S의 기본 안이 지하 2층 이하는 용도가 없다는 것이다.

억지로 용도를 생각해도 정화조 밖에 없는데 그 또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사무동 Tower주위는 4방이 전

"우리 나라의 대형 토목 공사는 거의가 관청에서 발주하는 것인데 특별한 Know-How로 설계한다 해도 머릿속에서 짜낸 Idea값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 지하2층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그보다 더 깊이 파기 위하여는 흙막이 공사가 필수적인데다 경질지반 Level이 균등하지도 않다. (약 12m를 더 파고도 그 밑을 Grouting으로 지반개량 하여야 함) 그렇기 때문에 설사 몽땅 파더라도 또한 Mat기초가 필요하며 주위 지하실의 안전을 위하여 외벽은 토압, 수압에 견디는 본격적인 지하실 공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몽땅 파는 방식은 필요 없는 깊은 지하실을 기초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 공사 기간과 공사비는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약 13억원으로 Pier기초의 2배) 그러면 몽땅 파는 대신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는 공사 방법은 없을까?

서울 지하철 공사의 대부분은 Open cut로 시공했다. 흙막이 공사도 연습 많이 했으며 주위 건물이 있는데도 잘해냈다. 그 방법과 다른 것은 폭이 좁다는 것과 평행하여 4줄로 판다는 것이다. (그림 8 참조) 지내력 100t/m² 되는 Level까지 파 내려가면 폭이 약 4.5m면 되는데 총 길이 240m를 파는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국내 우수 건설업체 기술자들의 말이었다. 나란히 파는 도랑간의 간격이 좁아서 불안하면 그림 8에 표시된대로 공사 순서를 ZIG-ZAG로 하면 될 것이다. 중앙의 기둥들은 구할 수 있는 Pier 장비로의 공사를 해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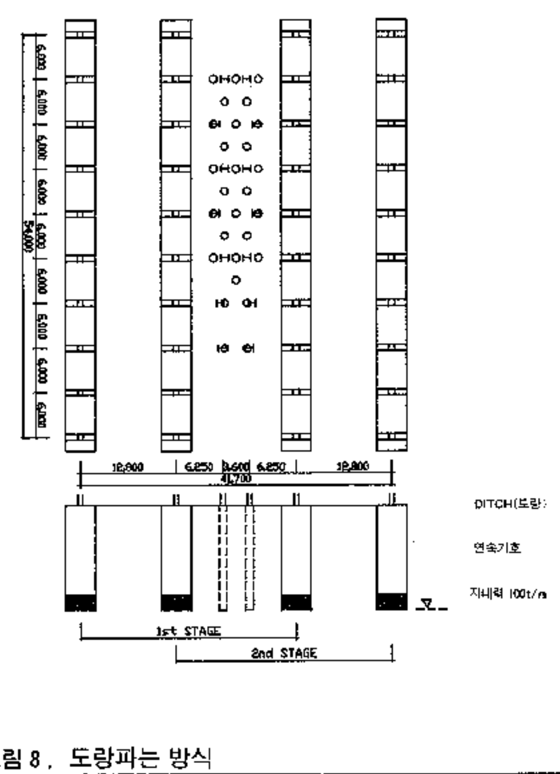

그림 8. 도랑파는 방식

그러나 이러한 Idea가 건설업자의 거센 반발을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사입찰 및 감사 제도의 모순이 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이다.

작업량이 많고 비싼 중장비를 사용한 공사 시행을 해야 공사비가 올라가며 감사에도 무난히 통과된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업자의 수입이 늘어난다. 물론 이 도랑파는 방식의 단점도 없지는 않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쩌면 위험성이 있다.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에도 돈 벌러 갔던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충분한 공사비를 보장해 줄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다.

전시동 그 넓은 면적에 시공하는 기초는 더구나 좋은 방식이 있었다.

Dynamic Compaction Method라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쇳덩어리를 Crane으로 들었다가 땅을 내리 쳐서 다지는 가장 원시적인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지내력이 약하다는 것은 흙의 입자 하나 하나가 약하거나 이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 무거운 추로 내려 치면 다져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흙의 종류와 함수량, 필요한 지내력, 또한 다져야 할 깊이에 따라 추의 무게 및 높이등이 전문 Engineer에 의해서 계산 되어야 한다.

흙이 다져지는 깊이 H는 추의 무게 W에다 낙하고 D를 곱하여 제곱근한 값이다. 즉 $H=\sqrt{W\times D}$인데 예를 들어 10ton 추를 10m높이에서 떨어 뜨리면 무려 깊이 10m 까지 다져 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작업은 무슨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특별한 시공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널리 쓰여지지 않는 원인을 토질 전문가에게 물어 보았다.

우리 나라의 대형 토목 공사는 거의가 관청에서 발주하는 것인데 특별한 Know-How로 설계한다 해도 머릿속에서 짜낸 Idea값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히 서두르는 공사 현장에서 메운지 얼마 안되는 땅에 집을 지으려면 말뚝을 박아 기초지정으로 삼고 최하층 바닥은 흙에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떠있는 것으로 간주한 설계가 불가피한데 도무지 이 Dyhamic Compaction Method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자가 없다. 그 이유가 돈 못 받는 일이기 때문이란다.

잘 아는 약방 친구에게서 아주 좋은 약을 소개 받았다. 불과 몇백원 짜리인데 피곤해서 부르튼 입술, 무좀, 간단한 피부병에 효과가 매우 좋은것을 필자 스스로가 임상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베타딘"이다. 물론 나는 약장사가 아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옥도정기는 값이 너무 싸고 잘 알려진 소독약이라 즉효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약장사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힘든 공법이나 제약기술 이어야 돈 버는데 이용된다는 뜻이다. *

感傷紀行 5

金 錫 澈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드롤리 레인에서 85. 11. 11

정보는 기억장치의 단순한 메모리로서 어떠한 종합적 이해의 키보드에서 한 부분으로 적절히 구사될 수 있어야 정보구실을 할 것이다. 자기기반이 없는 과다한 지식은 논어의 "배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만 하면 위험하다"는 경구를 생각케 한다.

아랍어코스틱스에 가서 헤리슨을 만난다. 피카소 그림에 나오던 사람중의 하나 같다. 두눈이 얼굴의 넓이의 삼분지 이쯤되고 코는 길이의 반쯤된다. 입도 약간 나오면서 커서 아-하면 턱밑이 떨어질것 같다. 그러나 멀쩡한 좋은 앤지나어다. 무대에서도 일해본적도 있고 이 사무실에만 9년씩이나 있었던 사람이다. 논리도 정연하고 학자류의 이론을 넘는 에스프리도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사물의 골격도 알고 변조도 아는 사람이다. 잠시 의심했던 것보다는 리포트를 열심히 우리에게 써 준것 같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음향적 언급은 정곡을 찌르는 감이 있다. 단순한 음향만이 아니라 사건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줄 수 있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도 있는 사람이다. 워컴과는 대조적이다. 생긴것도 그렇고 정작 실력이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의 진실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 보너스도 있구나 싶다. 이 친구가 알려준 빌딩 북숍에 가서 음향에 관한 책을 세권 산다. 헤리슨의 오페라하우스에 관한 지적들은 먼저 2,400의 객석의 오페라하우스는 경영적 측면은 이해가 가나 음향적으로 무리이므로 단순히 객석당 크기보다 모든 면에서의 고려가 우선하여야 하며 여러 관점간의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잔향시간은 1.2초에서 1.7초 사이로 곡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짤트는 오륙백명 정도의 관객을 전제로 휘가로를 작곡하였으나 바그너는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였고 곡의 특성마다 극적분위기가 다르므로 대체적으로 1.5초가 적정할듯하다. 구라파의 오페라하우스는 관객들이 가사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잔향시간이 적고 미국, 영국처럼 가사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잔향시간이 커진다. 소리의 명료도는 반사면에 관계가 있으며 넓은 홀의 경우 초기 반사음의 효과가 적고 특히 객석중앙이 어렵다. 무대속의 음향은 무대가 크고 오케스트라핏이 깊어 한때 싱거를 위한 반사판을 두기는 하였으나 자체 반사음 때문에 무의미하여 오히려 셀디자인 한때 음향적 고려를 하면 좋을 것이다. 대개 오케스트라핏에서 가수의 소리를 못듣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문제다. 핏트로 소리를 보내기 위해 프로세니엄 근처의 평면 반사판이 필요하다.

스톨 중앙은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중앙천정이 높아 천정반사가 없으므로 직접 음에 의하는 수 밖에 없어 양측벽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정의 곡면은 촛점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실지로 많은 오페라하우스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곡면은 가수에게 제소리가 돌아와 좋다. 곡면은 항상 반경안에 관객이 없도록 해야한다. 큰문의 경우 음향차단은 공사후 6개월 가량은 괜찮으나 그후 대개 문제가 생기므로 바닥과의 연결은 들어올려서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연결 부분의 접합상세가 중요하다. 음향차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체에 엑스팬션 조인트를 두는 것이 유효하고 벽은 40cm 정도의 두께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좋은 음향을 가질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마치 시계처럼 네시 사분전 코벤트가든으로 간다. 톰은 이름처럼 좋은 사람이다. 주말에 열심히 우리 시방서를 읽어 주었고 사심없는 언급을 해준다. 살다보면 좋은 사람이 도처에 있기는 있는 것이다. 마침 품스테이지 리허설이 있다해서 헨델의 세밀르를 같이 본다. 이런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는 처음본다. 오페라는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 배튼이 할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고 막들이 만드는 정경이 다양하기도 하다. 젖이 이쁘게 큰 프리마돈나의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환상의 무대를 보고 있으니 자못 행복하기까지 하다. 총체극 운운하던 세미나의 교수들은 웃는다. 빈 객석에 스태이지의 사람들과 어울려 풀 스테이지 리허설에의 참여를 즐긴다. 이러다가보니 또 예약된 시간이 되었다.

드롤리 레인에서 사십이번가를 오늘 저녁에 가장 나쁜 박스에서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칼은 과연 미국스럽

오페라하우스에서 옅은 재료의 사용은 음향효과에서 중요한 저수파를 흡수하므로 피해야 하고 적은 볼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딱딱한 재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오케스트라 핏은 물론 무대위의 가수와도 연주자들끼리 서로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목이 반쯤 쉰 여자와 청순가련한 거리 여자 같은 준소녀, 지쳐있으나 열정이 아직 남은 대장, 그리고 잘나고 잘난 젊은 청년이 만드는 무대는 뉴욕 그 자체같다. 세밀르에서 보던 문화적 환상 대신 여기는 오늘 문명의 유쾌한 유희가 있다. 가볍지만 건강하고 싹싹하지만 나른한 즉물적 인간군의 페이소스가 화려하게 그리고 멋스럽게 펼쳐진다. 오늘도 그러고 보니 또 바쁜 하루였다. 바람 풍자인 웨스트앤드의 장꾀집에 또 가서 이번에는 용기를 가지고 이것 저것을 시켜본다. 지쳤지만 즐거운 하루였다. 오늘은 새벽녘에 여러 여자꿈을 꾸더니 화류계 같은 하루가 된 셈인가 보다.

제프 ·찰스 사무실에서
85. 11. 13

새치를 사서 의기 양양한 존과 함께 제프·찰스의 사무실로 간다. 외채 외채 하면서 잘들하는 것이다. 무언지도 모르고 외국에 일을 맡긴다. 입바른 버리자들이 이렇게 외국사람 횡재를 시킨다. 그러나 역시 제프는 제대로 된 엔지니어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도 훌륭하다. 이들은 창고도 야무지게 지었던터라 사무실로 개조해도 워낙 그렇게 한것 만큼 충실하다. 희안한 것은 바로 건너편이 공동묘지다. 바로 붙어 있다.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가서 쉴 모양이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기본형은 많이 좋아져 있으나 중요한 초기 반사음을 위한 프로세니엄 부근의 양벽 복스와 천정이 직설적이어서 지나치게 강한 효과가 있으므로 면의 요철을 통해 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것은 건축적 효과를 기대한 실내장식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프로세니움 바로위가 평면이 되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가수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평탄면은 가수의 소리를 객석에 전하는데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스칼라가 좋은 음향을 가진 것으로 다들 말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오케스트라 핏과 프로세니움 부근의 처리에 있다.

아렴어고스틱스에서 볼륨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제프는 다른 의견을 말한다. 고전형식의 오페라홀은 대공간과 발코니형의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어 볼륨 그 자체가 작아도 좋은 효과가 있으나 최근에 와서 많은 객석을 수용하기 위해 채용된 컨서트홀 형식을 가미한 경우는 대 공간과 발코니 공간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산술적인 볼륨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굳이 비교하자면 대 공간만을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우리 경우 현재보다는 볼륨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한다. 작은 볼륨의 경우는 전기음향장치를 동원할 수 밖에 없으나 큰 경우는 여러 방법이 다 가능하다.

최근 오페라 하우스를 짓거나 개조할 때 재정적 이유로 해서 객석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 잔향시간을 과거와 같이 1.2초에서 1.1초 사이로 하기보다 거의 2초까지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의 여러 경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층 스톨부분과 최상층 객석은 오페라하우스 특유의 대공간을 체험할 수 있으나 2,3층 발코니의 뒷줄은 음향은 그런대로 좋으나 그런 공간적 참여의 느낌이 적으므로 오히려 2,3층 발코니를 줄이고 상층발코니를 키우고 2,3층에는 양측 박스를 키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잔향시간을 키우는 것은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는 좋으나 성량이 큰 가수만 살아남게 되므로 우리의 경우 오히려 볼륨은 줄이는 것도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하우스에서 옅은 재료의 사용은 음향효과에서 중요한 저수파를 흡수하므로 피해야 하고 적은 볼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딱딱한 재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오케스트라 핏은 물론 무대위의 가수와도 연주자들끼리 서로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음악당에서 최근 정리된 우리 안은 음향효과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무대위의 반사판이나 잔향시간 조절판 등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현학적인 컨설탄트들의 장기인데 우리와 같이 기본형이 만족할 만한 경우에는 그런 잔짓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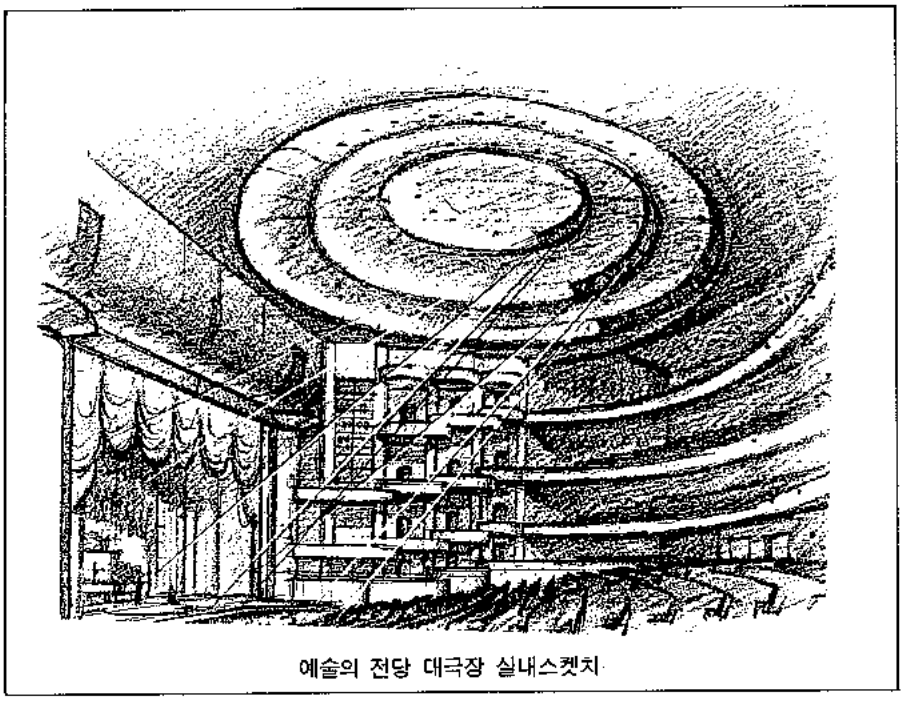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 대극장 실내스켓치

음악당에서는 모든 사이클의 음향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가적 욕심의 공간형식을 컨설탄트가 묘수로 풀어가는 방식보다 역시 전통적인 기본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 음악당에서는 모든 사이클의 음향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가적 욕심의 공간형식을 컨설탄트가 묘수로 풀어가는 방식보다 역시 전통적인 기본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비칸센터의 음향설계자가 음향의 실패로 결국 죽은 얘기를 들으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106%의 몰트위스키를 선물받고 음향실험을 위한 1/50 모델 구경까지 했다. 그래도 워컴 덕이다. 신교수 생각이 난다. 누구든 다 큰 흐름에서 보면 결정적 공로자들이다.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이 잘 되는 법이다.

마지막 날에

85. 11. 13

이제 집에 가는 날이다. 어느사이에 보름이 지났다. 푹 잠겨 있던 일상의 와중을 문득 빠져나와 잊어버린체 보름이 지났다. 바쁘기도 하였으나 이년 가까이 해온일의 마지막 점검같은 날들이라 정신이 없기도 하였다.

뮤닉 오페라 하우스에서 네무대의 웬곤 이동장치와 엄청난 창고, 츄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웬곤을 타고 백여명의 합창단이 앞으로 밀려오는 신,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환상적인 세밀르의 무대장치, 내셔날 오페라하우스의 기발한 의상들을 하루걸러씩 보면서 그간 그려온 것을 정리하려니 내가 어디서 왔었는지 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제는 무엇을 좀 알듯은 하다.

이번 여행에서는 오페라를 셋, 오페렛타를 하나, 뮤지칼을 하나 모두 다섯 공연을 보았다. 발레는 뮤닉 오페라하우스 무대 위 아래를 세번씩이나 오르내리느라 마능을 결국 보지 못하였지만 츄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뉴른베르그의 대가수를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일 트로바토레를 세들러즈 웰즈에서 라 트라비아타를 보았고 내셔날 오페라하우스에서 올피우스 인 언더월드를 보았다. 로열 오페라하우스에서 홀 드래스 리허설로 세밀르를 본것 까지하면 모두 여섯공연을 본 셈이다. 그리고 보니 구라파에서 라 스칼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위한 공연은 물론 스테이지와 백스테이지 모두를 본 셈이다.

일년전 비엔나의 슈타트 오퍼에서 라보엠을 보았을 때나 6개월전 로열오페라에서 다시 라보엠을 보면서 무대 상하 좌우를 오르내릴때와는 전혀라고 할만큼 느낌이 다른 삶의 새 단계들이 있다. 진전할수록 구석 구석 모를것만 더 많아지고 결정적인 것 같은 부분들이 갈수록 쌓여간다. 작년 한해 기세 좋았던 허장성세의 껍질을 벗고나니 이렇게 초조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일이 없었으면 잊고 살뻔했던 무대에의 여러 경험은 자랑스럽다. 이번일로 해서 무대에의 열망을 알듯해졌고 삶의 한 귀중한 체험을 겪었다. 책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감정이입을 경험하였고 서구문화의 한 국면을 감동스럽게 겪기도 하였다.

무대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기도 한다. 이제는 차츰 우리의 안도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매듭을 지어야 할 단계에 자꾸 욕심만 키우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얼떨결에 빌리기도 할 때는 일단 시간을 버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만미터 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시야가 크면 바쁠 일이 없다. 아무리 바쁘고 빨라도 이처럼 구만리 창천의 높이에서면 모든 것을 조감하면서 나를 수 있는 것이다. 조급하여 잃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가. 세사의 와중과 거리를 유지하여 고속을 유영할 지혜가 필요하다. 조급증은 대국을 보기보다 그저 그때 그때의 잡사에 생애를 거는 마치 하루살이 같은 인생관 탓이기도 할 것이다. 주위에 지저분한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버러지와의 싸움에 대국을 거는것은 자가 당착 그 자체일 것이다. 비켜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 일에 과도히 몰두해 있는지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여 할 일도 있기는 하다. 비켜선다는 것은 일의 와중을 몸으로 겪는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다. 허구한날 비켜서 있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사람같은 것이다. 일에의 과도한 몰두와 문득 멀리 설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일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인·온더·파크 호텔에 왔던 때가 일년전인데 먼 옛날같다.

작년 올해 두해동안 참 많은일이 있었다. 얼떨결에 무대앞으로 밀려나 왔으나 아직 조명에 눈이 부신다. 조금씩 어둠속에 관객들이 보이기는 하나 대사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출연자들과의 어울림도 모른다. 그저 무대뒤의 처량맞은 허전함은 알듯하다. 객석의 편안함대신 택한 무대에의 모험은 아직 어설프다. 이제 겨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안다.

작년 이맘때는 많이도 마셨다. 두번째 눈수술 하면서 자리를 간신히 잡은듯 하였으나 일의 크기로 해서 아직 서둥대고 있다. 작은 일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되었던 조급함이 이 일에서는 짐이 되고 있다. 전체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관용이 부족하다.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바쁘고 부지런해야 될 때에 나른해진다. 자신만이 아니고 같이 일할 사람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각 사람의 개인적 영역을 키워 나가면서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오케스트레이션도 잘못하고 있다.

누구나 다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무엇들을 모두에게 다 하게 하면서 전체를 끌고 가야 하는데 한 소리만 요란하다. 함께 있는 사람의 개발을 통한 성취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 전문건축가 시대가 올것인가 ?

Will the age of professional architects come to us?

金 善 洋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얼마전 평소 안면이 있는 분 한테서 연락이 왔다. 찾아가본 즉,

- 전문 설계분야가 무엇인가 ?
- 교회에는 나가는가 ?
- 교회설계 경험이 있는가 ?
- 한국에서야 어디 전문이 따로 있는가
-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등의 내용이었다.

내심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부탁 반 자의 반으로 일을 맡기로 하고 돌아왔다.

과거 두어번 주택설계를 의뢰받고 전문가(?)에게 소개 해 본일이 있었으나 어디 주택과 비교가 되랴? 라는 생각도 들어서였다.

그후 설계경험자와도 만나고, 목사님도 뵙고, 예배도 참석하고, 국내외의 여러 자료도 수집하고 잘된 교회들을 견학하기도 하여 어느정도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 두었다.

하지만 성서적으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지, 현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는가 등의 숨겨진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더 많은 체험과 진통을 겪어야 할 것 같다.

만약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맡아 본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구태의연하게 적당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알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결 나은 작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차례의 실패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한국의 건축가는 절에도 교회에도 나가야 하고 나이트크럽도, 기원에도 다녀야 한다면 마치 한명의 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격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

미래의 고도기술사회 - 우주와 해양개발, 유전공학의 발달,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generation)레이저와 光콤퓨터의 개발등 - 에 발맞추어 건축분야도 「INTELLIGENT BUILDING」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전문 건축가 시대」의 문이 열려야 할 시기인것 같다.

설계 작업에 선행한 기획 - 설계 방침과 목표의 선정 - 설계 조건의 확정 - 구체적인 설계 PROCESS의 작성 - Communication계획 - 구체적인 요구기능의 분석 - 현재와 장래의 주위환경의 분석 - 주변환경에의 영향분석 - 형태의 결정 - Cost 계획 - 法 Check - 평면및 단면계획 - 실내 환경계획 - 방재및 반송계획 - 유지관리계획등 평소 설계 PROCESS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현재도 고건축, 병원건축, 방송국, 전화국등 몇몇 분야는 어느정도 전문화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 된다면 현재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차원에서 순수설계 분야의 용역이 많아 질 것이며 이에 대비 해서라도 전문화는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협조하여 건축사 협회는 해마다 전문분야별로 주거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물량, 설계비 등을 발표하고 미래의 추세를 진단해 주어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나 건축학도가 사회의 요구 비례와 본인의 처지에 맞는 전문분야를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현재의 단독 혹은 종합사무실 체제는 ○○전문건축사사무소 혹은 인원수 제한없이 종합병원 체제의 대규모 종합건축사사무소의 탄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전문화된 사무실들이 각 분야별로 교육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전문별 관계부처나 기관 혹은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건축가 자신은 물론 건축주, 이용자 나아가서 도시와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대가 오면 건축가가 일일이 발주자를 찾아가지 않고 설계사무실로 나오게 하여 그동안 경험을 통해 수집해 놓은 각종 자료와 도면, Computer, Slide, Video 등의 시각적인 효과까지를 동원하여 자신있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아마 건축주는 꽤 만족 해 하리라.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가 사는 이시대의 현실과 사회의 여건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 할지라도 언젠가 자연이 닥칠지도 모를 이러한 분위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대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축주는 항상 당시의 조건하에서 최고의 작품을 원하고 있는데 ……

分科委員會 研究報告

造景事例調査研究(Ⅱ)

Insvestigation and Reseanch of Landscape Example

도시환경연구분과 위원회

Ⅳ. 우리나라의 傳統造景

1. 우리나라 傳統造景樣式의 特徵 및 背景

우리나라 傳統造景의 가장 큰 特徵은 自然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도록 하여 동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자연에 대하여 人工構造物인 建築物은 俗氣가 나게 마련이므로 그 俗氣가 한국인의 自然觀에 동화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곧 정원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思想에 따라 정원을 조성할 때는 地形을 함부로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물(水)의 이용에 있어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법칙을 이용할뿐, 人工的인 힘을 가하여 하늘에 쏘는 분수를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 自然環境과의 調化(Harmony With Nature Environment)"를 우리나라 傳統造景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으며, 그러한 예로 우리나라 어느 名山에든 名刹이 있으며, 自然空間속에 배치된 樓閣이나 亭子 역시 주변 환경에 調化되어 自然에 아늑히 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건축물을 지을 부지(Site)의 선정에 있어서 얼마나 苦心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부지의 선정 및 조성은 건축공사 자체보다 先決的인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傳統造景의 特徵을 낳게한 思想的 背景을 다음의 4가지로 說明할 수 있다. (鄭在鍾 "한국건축에 있어서의 造苑")

●자연숭배사상 :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우리나라는 여러 自然現象과 天神·地神·老巨樹 등을 신비와 경외감을 갖고 숭배하였다.

이러한 예는 강화 마니산의 塹星壇, 경주 鷄林부락祭堂苑林, 성황당들을 들수 있다.

●神仙사상 : 中國의 晋·漢시대 이래 중국에서 전래된 神仙사상에 의하여 봉래·방장·영주라 일컫는 仙山이 있어 여기에는 神仙들이 영원한 삶을 즐기고 있다는 傳說에 따라, 연못을 파고 그안에 섬을 쌓아올려 仙山으로 假想한 일종의 縮景式 정원이다.

이러한 예는 부여 宮南池, 경주 雁鴨池, 남원 廣寒樓苑 등이 있다.

●淨土思想 :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이후 주로 사찰의 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極樂淨土思想에 근거한 극락의 世界觀을 현세에 조형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는 경주 불국사의 九品連池 등의 사찰정원에서 볼수 있다.

●儒敎思想 : 주로 유학자들의 別墅정원을 중심으로 修身, 修學을 하기 위한 담담하고 품격이 높은 美를 생명으로 하는 정원양식으로 나타났으며 그예는 陶山書院·玉山書院·鄕校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傳統造景樣式과 外國 造景樣式의 檢討

유구한 조경사의 흐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 첫째는 古典主義로서 서양문명의 요람지인 이집트·小아시아·메소포타미아 등지의 여러 고대국가이래 그들의 農業景觀 혹은 灌漑패턴에서 유래된 기하학적이며 대칭적(Formalism)인 양식으로서 17세기까지의 서양의 정원양식을 지배하여 왔다.

두번째는 낭만주의로서 인간을 둘러쌓고 있는 자연경관을 理想化한 非整形(Informalism)的 양식으로 서양에서는 18세기이후 영국에서 풍경식 정원양식(Landscape Garden School)으로 꽃을 피웠고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중국, 한국, 일본의 정원양식의 주류가 되어 왔다.

특히 서양에 있어서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이 유독 영국에서 발생하게된 계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유교와 도교등 중국의 종교와 사상이 영국에 전파되어 동양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접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상적인 면으로는 당대를 풍미하던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합리주의, 휴머니즘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라이프니치(Leibniz), 볼테르(Voltaire), 루소(Rousseau) 등이 있으며 특히 루소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만 찾을수 있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繪画의 영향으로서는 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대두된 風景画(Landscape Painting)는 당시의 조경설계가들에게 靈感의 원천이 되었으며 낭만주의 문학가들 역시 정원설계에 새로운 哲學을 導入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온 산업혁명의 결과로 얻어진 부의 축적 역시 새로운 조경양식의 탄생과 발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된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은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며 험프리 랩턴(Humphre Repton)에 의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조경수법은 자연을 1:1의 비율로 묘사하여 놓았기 때문에 사실적 자연풍경식(Landscape Style in Naturalism) 혹은 영국풍경식(English Landscape Style)이라 불리운다.

또 정원이 갖는 기능은 앉아서 관상하거나 대화하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푸른 잔디밭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동양에서의 중국, 한국, 일본의 정원양식은 모두 자연을 주조로 하는 풍경식 정원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각국의 역사, 기후, 민족성, 사상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은 정원문화의 근원을 모두 중국에 두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인 이유로 인하여 三國時代이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中國 각 시대의 조경수법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飛鳥時代 前後와 奈良時代에 이르기 까지에는 우리나라를 중계자로 하여 대륙문화를 받아 들였으나 平安時代 이후로는 中國本土와의 교류가 빈번해 지면서 대륙문화가 직접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조경도 역시 이에 상응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화사적 맥락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직접·간접으로 중국 문화를 도입, 모방하는 기간을 갖은 이후 유럽의 르네상스時代에 해당하는 15세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각기 자국의 風土와 민족성에 順化된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정원은 자연적인 경관을 主構成要素로 삼고 있기는 하나 경관과의 조화에 주안을 두기 보다는 대비(Contrast)에 중점을 두어 인공미의 극치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화려하고 장엄한 누각과 거대한 인공호, 인공동굴 등이 주변 경관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극적인 효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원에서 사용된 규모(Scale)는 하나의 정원속에 여러 비율로 꾸며 놓은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정원은 자연을 主構成要素로 하기는 중국과 마찬가지나 자연을 다루는데 있어 기교와 관상적인 면에 치중하여, 섬세한 솜씨로 자연을 모방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실용적인 기능이 무시된 반면 상징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일본정원에서 사용된 규모(Scale)는 주로 1/10~1/100로 자연을 축소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원은 자연과 인공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으며 풍수설의 영향으로 독특한 후원양식을 이룩하였다.

특히 인공과 자연이 알맞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의 배치등 지형에 따라 독특한 創意力이 발휘 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3. 우리나라 傳統造景(庭園)의 構成要素

(1) 樓·亭 : 人間이 어느 정도 時間을 갖고 정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樓·亭은 人間과 自然이 和合하는 場所性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아울러 樓·亭은 自然속에서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VISTA(通景線)의 조성과 Landmark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樓·亭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연못가에 세워지는 水亭·강변의 비교적 높은 곳에 세워지는 江亭, 바닷가에 세워지는 海亭, 溪水와 溪谷사이에 세워지는 溪亭, 산기슭 숲속에 세워지는 山亭 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를 다시 形態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圓形, 方形, 長方形, 六角形, 八角形, 十字形, 扇形 등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이며 여기에 아름다운 난간과 공포나 연목등에 공예적인 솜씨를 다하여 장식하였다. 지붕의 재료는 기와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며 간단한 구조위에 띠·볏짚등으로 만든 草亭 역시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

樓·亭은 주위의 경치를 즐기며 노니는 휴식의 기능을 갖으므로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軒·榭·臺·齋·齊 등은 모두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잘수 있는 집으로 개방된 공간을 피하여 폐쇄된 공간에 배치되고 있다.

우리나라 樓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복궁의 慶會樓·창덕궁 후원의 宙合樓, 남원 廣寒樓, 밀양 嶺南樓, 진주 矗石樓 등이 있으며 亭子로는 창덕궁 후원에 4각, 6각, 8각, 부채꼴 등의 다양한 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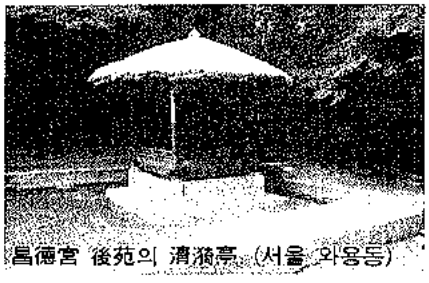
昌德宮 後苑의 淸漪亭 (서울 와룡동)

다산 정약용의 정자 (강진 도암면)

제천 의림지의 정자

를 볼 수 있다.

(2) 담장 : 담장은 건축물과 같이 積極的으로 空間을 限定하는 수직요소이다. 이러한 담장의 일반적 기능은 境界의 표시와 불리한 外部環境에 對하여 방어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의 담장은 이외에 장식적인 문양을 새겨 넣으므로 중요한 修景要素가 되기도 하였다. 또 민가에 얕으막하게 설치된 형식적인 담은 방어적인 기능은 거의 희박하며 心理的인 공간형성의 기능이 우선적이며, 外部景觀을 담장안으로 끌어들이는 借景手法의 한 요소로서 사용되어, 담장 내부만을 정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외부경관 모두를 정원으로 확대 시키는 우리나라 정원의 구성원리를 잘 이루고 있다.

담장의 종류로는 궁의 외담인 사고석담과 궁의 내담인 塼담, 花담, 궁궐, 민가에 사용된 잡석담, 토담, 초가에 사용된 바자울 등이 있다.

花담은 화려한 무늬, 글씨, 그림으로 장식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복궁내의 慈慶殿담과 창덕궁의 대조전 후원과 樂善齋의 花담이 있다.

양산보의 소쇄원 담장 (전남 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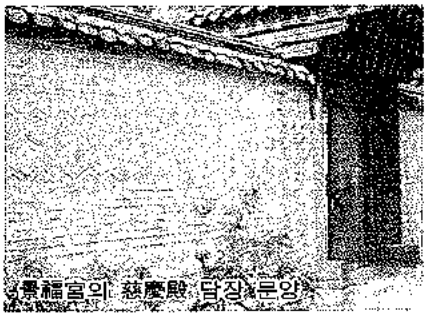
景福宮의 慈慶殿 담장 문양

전형적인 민가의 담장 (안동 하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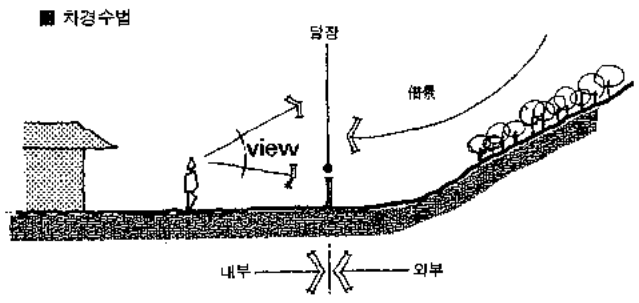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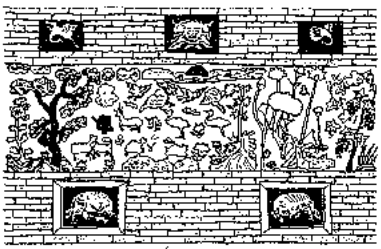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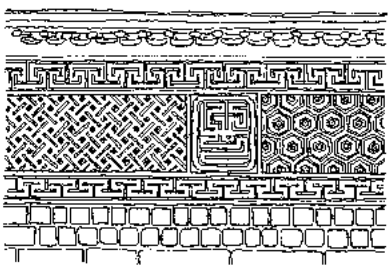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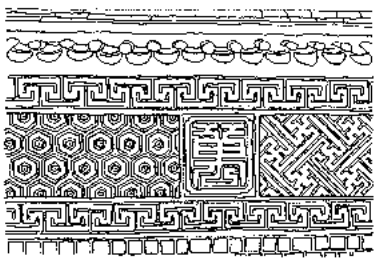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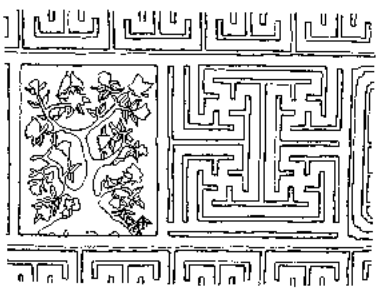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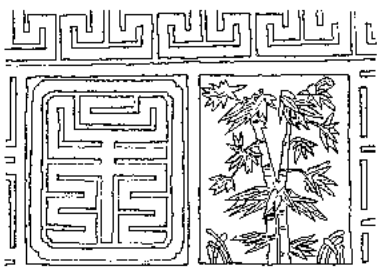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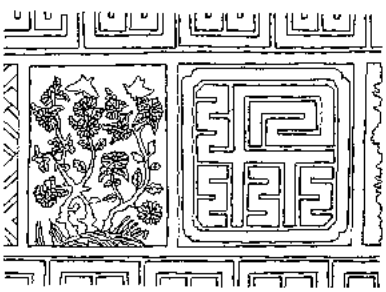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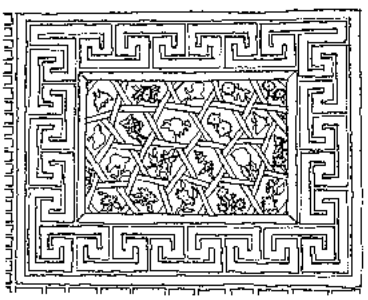

담장문양예

우리나라 담장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경사지에 건축될때 지형에 맞추어 나란히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단을 지으며 쌓게되므로 더욱 율동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3) 굴뚝 : 우리나라의 굴뚝은 溫突이라는 독특한 暖房方法으로 인하여 연기를 처마 밖으로 내뿜는 排煙설비로서 갖는 일반적인 기능 이외에 중요한 修景要素로서의 장식적인 기능을 갖는것이 특이하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뒷마당에 조성된 후원의 화단에 까지 연장되어 垂直的인 造形要素가 되며 사면에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十長生이 새겨진 경복궁내의 慈慶殿의 굴뚝과 용, 학, 박쥐, 모란, 대나무, 매화, 소나무등이 장식된 경복궁 아미산에 있는 交泰殿의 굴뚝이 있다.

(4) 假山 : 중국의 秦·漢時代이래 중국 대륙에 널리 유행한 신선설에 의하면 동쪽에 인간이 다다를수 없는 三神山이 있어 이를 蓬萊, 方丈, 瀛洲山이라 칭하고 여기에는 神仙들이 不老長生의 영원한 삶을 즐기는 至樂의 공간이 있다고 믿어 왔다.

이러한 신설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연못에는 그 가운데에 섬을 쌓아올려 이섬을 神仙이 산다는 仙山의 하나로 가상하여 朝夕으로 이것을 바라보아 神仙의 隱德을 입어 不老長生 할것

낙선제 담장문양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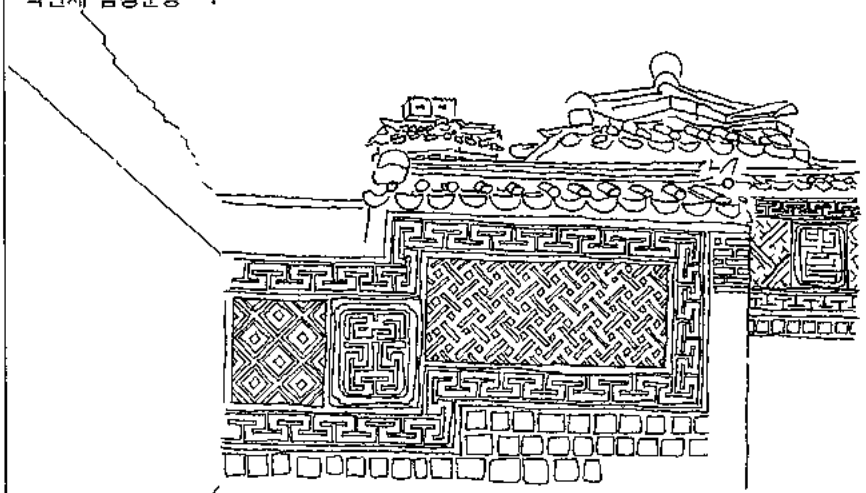

낙선제 담장문양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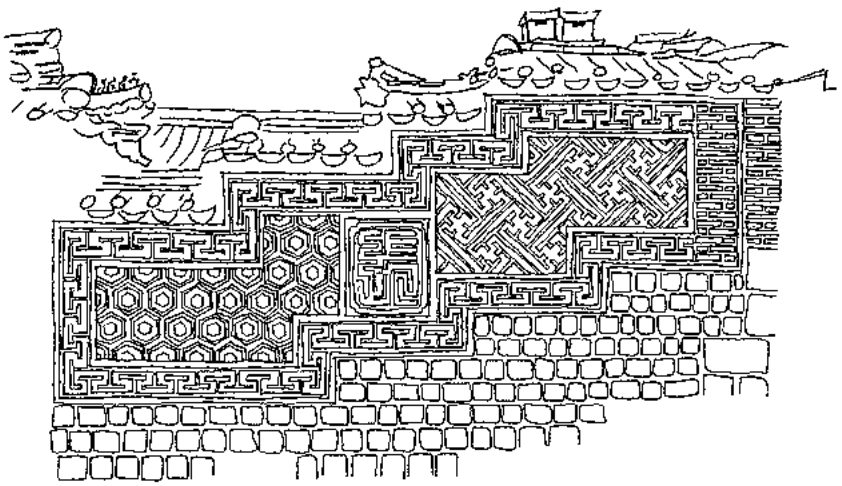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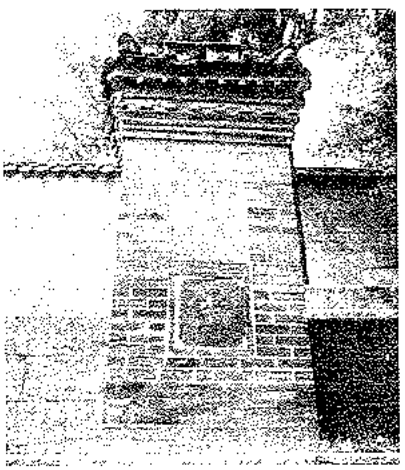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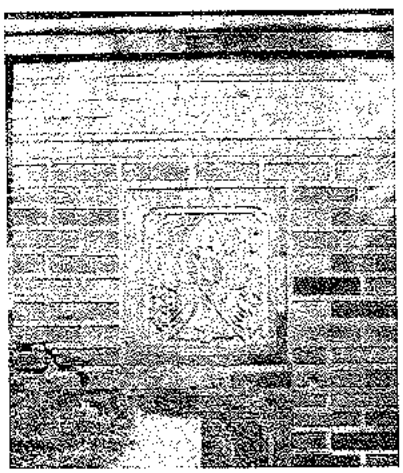

궁궐의 굴뚝(경복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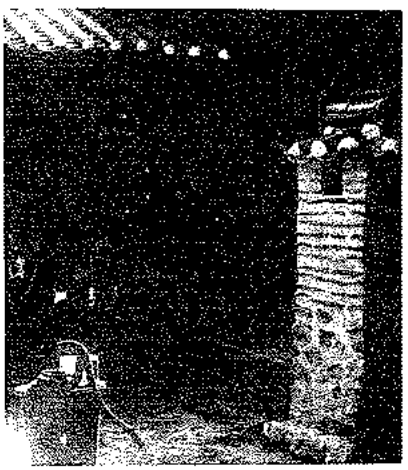

민가의 굴뚝 (안동, 이씨종가댁)

을 희구하였다.

이러한 예는 통일신라시대의 苑池인 경주 안압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연못가운데에는 봉래, 방장, 영주산인 三神島가 조성되어 있고 동쪽 호안가에는 巫山口峯이 조성되어 있다.

반면에 風水說에 의한 假山의 예도 볼 수 있는데 이는 地勢가 虛하다 하여 造山을 하기도 하였는데 서울 宗廟의 남쪽 假山이 이러한 예이다.

後苑(비원)의 芙蓉亭 蓮池의 假山

(5) 水景(Water Scape) : 우리나라에 물을 이용한 水景의 조성은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종류는 池塘, 堤壇, 溪間, 井泉 등이 있다. 낮은곳에 물이 괸것을 池, 뚝을 쌓아 물이 괴도록 한것이 塘이라 하는데 이를다시 호안을 곡선으로 조성한 曲池와 직선으로 처리한 方池, 곡선과 직선을 혼합한 苑池로 나눌수 있다.

우리나라의 池塘의 형식은 樓·亭등의 建築이 隨伴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整形的으로 처리한것, 즉 方池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 다시 人工的인 中島가 갖춰지기도 했으며 中島의 有·無 또는 中島의 갯수에 따라 1島型, 2島型, 3島型, 4島型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내를 막아 자연스러운 못을 만든것을 提堰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윤 선도가 조성한 甫吉島의 洗然亭옆 계류가 있다.

溪澗은 원래 자연 그대로 苑내에 들어와 있는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는데 창덕궁 후원의 玉流川이나 전남 담양의 소쇄원에 있는 五曲流는 약간의 인공을 가한 것이다.

井泉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샘을 말하며 풍수설의 영향으로 맑고 찬 井泉이 있는 정원은 名苑이라 일컬어졌다.

도산서원의 方池 (안동)

김씨종가댁의 연못(안동)

(6) 다리 : 다리는 개천을 건너가기 위한 일반적인 기능이외에 개천을 건너가는 過程자체가 空間變化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사찰이나 궁궐등에서는 왕의 권위의 상징, 俗世와의 경계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활용한 예가 많이 있다.

이외에 修景要素로서 갖는 自体형상의 아름다움과 Landmark로서의 價値역시 중요하다.

재료는 木材와 石材가 많이 사용되었고 형태는 크게 虹橋(Arch)와 平橋로 나뉘어지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虹橋가 보편적이다.

불국사 九品連池에서 法堂에 오르는 靑雲橋·百雲橋, 창덕궁의 錦川橋, 仙岩

조계산 선암사(순천)

양산통도사의 다리

-발굴후의 안압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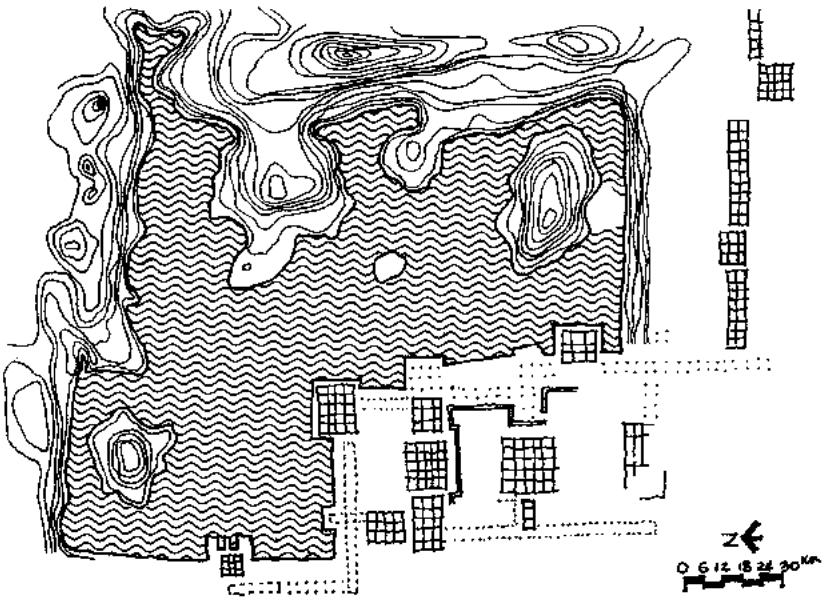

• 전체면적 : 5,100평(16,860㎡) • 中 島 : 200여평(660㎡)
• 大 島 : 300여평(990㎡) • 小 島 : 20여평(66㎡)

寺의 昇仙橋 등이 아름다운 石橋의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으며 남원 광한루의 오작교는 천상의 은하세계를 건너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좋은 예이다.

소박한 돌다리(달실마을의 권씨문중)

(7) 怪石 : 怪石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 하나는 六角形, 八角形, 타원형 등 다양한 石盆에 괴석을 심어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石盆에는 여러가지 문양이나 글귀를 새겨 장식하였다. 창덕궁 樂善齋 後庭의 怪石은 石盆에 小瀛洲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神仙思想에서 말하는 三神島의 하나를 옮겨 왔다는 뜻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돌뿌리가 땅속에 깊히 묻히도록 하여 배치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特置라하여 특출하게 보기 좋은 돌 하나만 배치하거나, 散置라 하여 平面만 보이게 배치하는 방법, 群置라 하여 여러개를 모아서 무더기로 배치하는 방법, 疊置라 하여 첩첩이 쌓아 올려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방법등이 있다.

(8) 樹木 : 우리나라는 四季가 분명하기 때문에 人工的인 植栽에 있어서 상록수를 심기보다는 활엽수에 의하여 절기에 따라 변하는 초봄의 신록으로 부터 개화, 결실에 이르는 계절감을 樹木에서 얻도록 하였다.

순천 송광사

우리나라에서 즐겨 植栽된 樹種은 은행나무, 단풍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동백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회화나무, 서어나무, 참나무, 팽나무, 음나무, 주엽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주목, 소나무, 매화, 파초, 무궁화, 목련, 석류나무, 유자, 모과나무 등과 草花類에는 국화, 난, 연, 작약, 창포, 금잔화, 백일홍, 수선화, 봉선화 등이 있다.

이들의 식재방법은 群植이나 散植이 유행하였으며 줄을 맞추어 심는 列植은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특유의 노단식 처리와 식재

비원

도산서원

-연못가의 식재 사례

비원 반도지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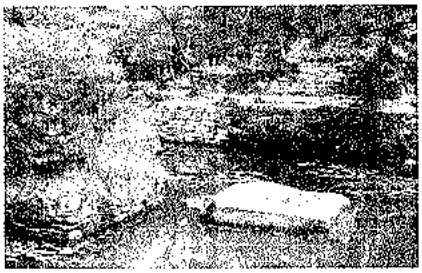

고산 윤선도의 부용동 유적지 (보길도)

궁·사찰의 전정이나 민가의 앞마당에는 식재를 피한 반면 꽃, 열매가 좋은 花木은 집 가까이 담옆이나 후원에 심어졌으며, 경상도·전라도 등 남부지방의 민가 후원은 죽림으로 조성한 예도 많이 있다.

(9) 器具 : 이외에 우리나라 정원에 사용된 기구로는 물을 담이 뜰에 놓아두는 물확(돌확, 石確), 이보다 규모를 조금 크게하여 물을 담고 蓮을 키우는 石蓮池, 평평한 자연석이나 잘 다듬은 板石을 뜰에 놓고 걸터 앉거나 茶를 끓이는 石床,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릴때 딛는 下馬石 등이 있다. 또 흐르는 물을 원내에 끌어들이는 홈대, 물레방아도 원내에 도입되었다.

정원내로 물을 끌어 들이는 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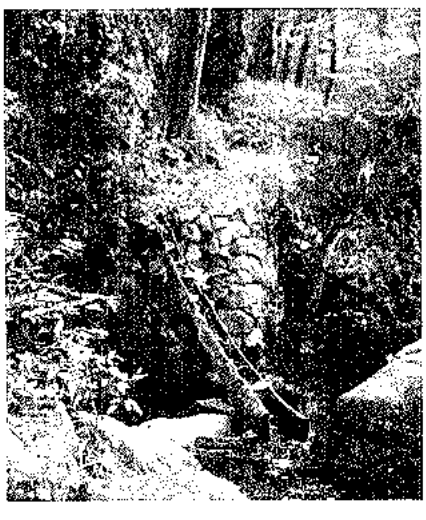

물을 대는 홈대와 물통 (각통마다 식수, 허드렛물등으로 용도가 다르다)

순천 선암사

도산서원의 講堂인 典敎堂 앞의 횃대

전남 담양 · 소쇄원

그외에 마당의 고저차를 연결시켜주는 石段, 花階, 石階 등도 중요한 구성요소였는데 특히 후원에 조성된 花階에는 굴뚝, 石函 등이 놓여졌다.

4. 우리나라 傳統造景의 構成事例

1) 梁山甫의 瀟灑園

(1) 개관 : 소쇄원은 李朝 中宗時 (1530년대)에 조성된 別墅庭園으로 全南 潭陽 芝谷里에 위치하며, 약 1,400여평의 규모이다.

여기에 대한 문헌으로는 1755년에 제작된 소쇄원도가 木版에 새겨져 전하고 있다.

(2) 구성 : 천연의 아름다운 溪流 한굽이에 光風閣, 霽月堂, 草亭, 물레방아, 方池, 토담, 외나무다리, 상석(床石), 石假山 등을 갖추고 있다.

植栽된 樹木으로는 前庭에 該當하는 愛陽壇區域에는 芭蕉, 碧梧桐, 紫薇, 臥松, 梅, 杏, 桃等이 植栽되어 있으며 內庭에 해당되는 霽月堂區域은 木本으로 竹, 松, 槐(느티나무), 丹楓, 杏(은행나무), 梧(오동나무), 柳(버드나무), 桃(복숭아나무), 紫薇, 梔(치자나무), 四季花 等이 있고, 草本으로 菖蒲, 蓮, 菊, 芙蓉 등을 찾아볼 수 있다.

(3) 造景史的 意義 : 조선선비의 은둔의 행동양식을 엿볼수 있는 별서정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光風閣후면 築壇위에 복숭아나무를 심어 桃塢라 하였으며, 愛陽壇 溪邊에 築臺하여 臺上에 小亭과 함께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待鳳臺라 명명한 것 따위는 隱者의 道仙思想的인 표현이라 할수 있으며 陶淵明의 桃源境을 희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볼수 있다.

2) 金祖淳의 玉壺亭

(1) 개관 : 玉壺亭은 李朝 末葉 金祖淳에 의하여 築造된 別莊으로 서울 三淸洞 溪谷의 山脈一部에 자리잡고 있으며, 1810년대에 그린 玉壺亭圖라는 일종의 배치조감도에 의하여 全景 및 細部事項이 자세히 描寫되고 있다.

(2) 구성 : 玉壺亭의 후원은 北岳을 등지고 앞에는 溪流가 흐르며 계류에는 다리가 놓여있고 집은 南向인데 대문은 東向이다.

문앞의 계류에는 버드나무가 드리워져 있고 門庭에서 山麓쪽을 向하면 마당끝에 石階가 있고 그 左右로 翌屛*이 낮으막한데 그 안쪽으로 庭心樹인 槐木이 섰고 그 아래에 石造水盤이 놓였다. 槐木 오른편으로 瓦家가 있으며 玉壺亭의 主建物群이 벌려 있으며 瓦家의 맞은편에 물이 흐르게된 隱溝가 있고 그 앞쪽으로 芭蕉와 水蓮을 띄운 石池와 小規模의 塘이 있고 그 左右에 花盆이 놓여져 있다. 건너편 溝畔에는 소나무 및 芍藥, 石榴 等의 花木이 있고 동산쪽에 盤松이 자리잡고 있다.

(3) 造景史的 意義 : 玉壺亭은 李朝-末葉의 세도가이며 문예와 풍류를 즐기던 일대의 文豪이기도 한 金祖淳의 별장으로 우리나라의 民家庭園 양식의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다.

*翌屛이란 꽃나무를 심어, 그 가지를 들어올려 門이나 병풍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서양의 trellis와 유사한 정원수법이다.

玉壺亭의 配置圖 瀟灑園圖 (17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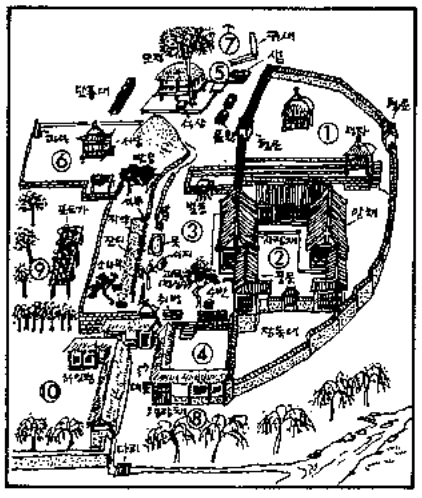

우리와 社會

We and Society

趙 貞 鎬

사회에서 건축부조리가 거론이 될 때마다 건축사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와 체면 손상의 감을 금할 수 없다. 이따금 매스콤을 통하여 건축사들의 비리가 보도될 때면 자부와 긍지를 갖고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안겨준다. 비리에 대한 원인이 어디있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건축사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오늘날 건축사들이 그 부조리라는 오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한다. 우리가 선택한 건축직은 모든 직종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직종으로서 다같이 천부의 직업으로 여기고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 해 온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더우기 자유업이나 써-비스업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직종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동경과 희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리 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실망마저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도 해 본다. 협회가 설립된 지 벌써 20년, 6·25의 부산물로 판자촌이 난립했던 그 시절로부터 강산이 변해도 세번씩이나 변했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변천과 더불어 우리 협회도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자구자찬이다. 그것은 국가가 협회를 지도육성 해 주고 국민의 부단한 편달이 있었기에 오늘을 기약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이 국가적 흥망을 등지고 존립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까닭에 지금의 이 건축부조리를 건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슴치않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사회 일각에서는 건축사들이 종이 몇장과 연필 몇자루로 치부하고 있다고 몰지각한 오해도 하고 건축사가 무슨 해결사인줄 알고 현장에서의 불합리 사항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괴롭히기 일쑤이다. 필요 또는 수시감리가 일반감리로 규정되고 있듯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이 완공되기 까지의 제반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시비가 건축사에게 비화된다. 이렇듯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첫째, 건축주의 법에 대한 미숙과 둘째, 시공자의 부실횡포가 만재되어 있는 탓이라 사료된다. 예컨데 왜정을 체험한 나는 당시에 "주부의 벗"이라는 잡지에 주택에 관한 기사가 매번 소개된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건축 즉 주택에 관한 지식 내지는 상식을 가정에 보급 시킴으로써 우를 예방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금 우리 건축사는 국민에게 법을 계도하여 건축의 부조리를 척결하자 하고 있다. 급성장 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건축물 특히 주택의 보급이 증가일로에 처해져 있는 이 시점에서 건축사가 그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는 있으나 시대적으로 너무나 격세지감이 든다. 매스콤도 건축법 등 법률상담과 지식의 보급을 같이 해준다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뿌리내려 건전하고 밝은 건축행정을 기할 수 있지않나 한다. 이와 못지않게 바라고 싶은것은 소규모 주택업자들을 등록제로 하여 법적처벌 기준을 설정했으면 한다. 주택보급에 있어서 소형주택의 양이 대다수를 찾이하고 있고 건축의 비리도 그에따라 많이 야기되어온 것으로 안다.

현행법으로는 전혀 규제가 없어 아무나 참여하고 있고 대개가 영세한 시공자들인 이 사람들은 법이고 무어고 없다. 그저 건축주의 지시에만 따르려 한다.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시공상황이 달라질지 안심을 할 수 조차 없다. 양질의 건축을 추구하는 마당에서 건축사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건축주, 건축사 그리고 시공자가 뜻이 같아야 소기의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은 지식이되 법에 따른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고루 선법정신이 함양되므로서 모든 분야의 행정이 뜻대로 시행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 협소한 국토, 협소한 지역에서 지적은 세분화되고 지형은 산세로 경사가 많은 이 고장에서 대지경계 문제로부터 지하실설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의 문제발생이 끊일 날이 없다. 자칫하여 건축사가 문책을 받게되면 건축주는 무형의요 시공자는 불문이니 이래서야 어떻게 건전한 건축풍토를 이땅에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하고 기우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건축사의 권익옹호와 직업윤리관의 정립, 그리고 건전한 건축사상을 추구하고 있다. 법무업이기도한 우리 직종인은 국가가 우리에게 요망하듯이 우리는 사회와 국민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을때에비로소 그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건축사의 윤리는 국민윤리와 더불어 사회윤리로 집약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

현대건축사사무소

古建築研究 2

秋史故宅

The Old Housing of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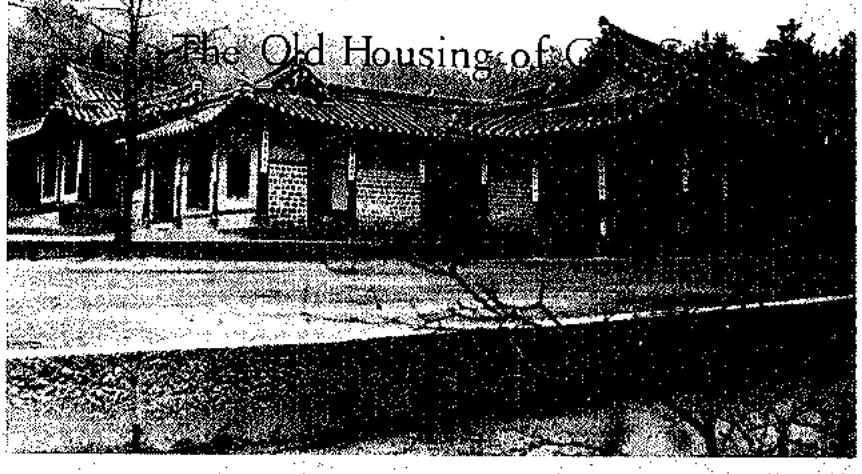

李 應 默
건축사사무소 새한

1. 序

秋史 金正喜先生 故宅은 忠淸南道 禮山郡 新岩面 龍宮里 龍山아래에 있다. 溫陽에서 禮山쪽으로 가는중에 新禮院에서 唐津가는길로 접어들다 다시 원평 과수원길로 2km가량 들어선 곳이다.

故宅의 터전은 낮은동산 기슭에 자리잡았고 주변엔 넓은 平原이 전개된다.

秋史先生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어린시절을 보내었다. 또 오랜 판직생활과 귀양살이 중간중간에 머물러 있던 故宅이나 실제로 이집은 그의 증조부인 月城尉 金漢藎(김한신)에 의해 1750年 頃에 건립되었다. 그후 그 後孫들이 世居해왔으며 中央에서 큰 벼슬을 하며 地方에서도 경제기반을 누렸던 士大夫의 第宅이 되었다. 그런까닭에 이곳 忠淸道 西海岸 지방에서는 보기드문 口字形 平面의 안채와 사랑채등을 갖인 조선시대 후기의 品格높은 上流住宅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日政期이후 이故宅이 개인에 이양되어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집의 여러곳이 퇴락되고 부분적으로 變造되기도 하고 또 불규칙하게 增設되어져 본래 모습이 많이 퇴색해 있었다. 數年前에 先賢遺蹟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었고 또 建築史的으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當局에 의해 퇴락된곳을 보수하고 당초의 建物原狀을 찾아 復舊하는 작업이 행해졌다.

그러나 創建当時의 家宅모습을 再現하는 전체의 완전복구는 아니었고 뚜렷하게 형체를 남긴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훼철돼 없어진 家廟와 中門행랑의 일부를 복원하는데 끝쳤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故宅全貌라고 살필수는 없다. 대문간이 달린 바깥행랑과 庫間채, 울타리안팎의 정원과 연못등이 살려지지 않았다. 현재 故宅의 안채와 사랑채에는 옛주인이 생활하던 가구와 집기등이 제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秋史의 筆蹟으로된 縣板과 書蹟品이 전시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건물의 구조와 공간개념에 대한 간단한 考察을 하고져 한다.

復元工事時 설계팀 一員으로 참여하였던 기억과 재답사로서 살펴본다. 作業當時엔 申榮勳文化財專門委員의 考證指導에 큰 힘을 얻었었고 그의 重修記가 보고된 바 있다. (文化財管理局刊「文化財」 11號 1977)

2. 配 置

故宅은 뒷동산의 東쪽 기슭이 평퍼짐하게 흘러내린 낮은 자락에 자리잡아 東西로 길게 안채와 사랑채가 배열되어 있다. 대지의 윗쪽에 안채가 있고 한단낮은 東便에 사랑채가 있다. 여기에서 한단 더 낮아진 곳에 中門과 곳간채가 있었고 그 아래편에 대문간을 포함한 바깥행랑이 있었다고 傳한다. 지금 대문이 있던 터전은 새롭게 丹雘된 故宅의 前面廣場으로 조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곳간채와 중문이 있던 자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솟을 문과 그 좌우 한칸씩의 행랑광만을 복원하여 지금의 대문으로 사용한다.

사랑채와 안채의 남쪽에는 넓직한 마당이 마련되어 있다. 地形의 高低를 마름한 石列이 몇곳에 놓여 地面에 層段을 이루었으나 上部는 전체가 완전히 터여진 開放空間이다.

안채 후면둔덕 한쪽에 祠堂이 별도로 돌담을 두루고 있다. 사당은 正面 3間, 側面間半으로 半間前退를 개방한 맛배지붕의 堅實한 家廟이다. 안채의 서측과 북측배면에서 오르는 동로에 각기 一角門을 내어 廟祉(묘담)內에 들어갈수 있다.

현재 故宅주위에 둘려진 담장내부의 배치상을 空間概念에서 살펴보면 사랑채 전면의 넓은 마당은 사랑마당이 된다.

이 마당의 東端, 한段 낮아진 지대에 草葺의 二間곳간채와 中門이 있어 外곽을 막아주는 아늑한 사랑마당 이었을 것이다. 「ㄱ」字로 꺽인 사랑채前面 고패부에 낮은 石段의 花階가 형성되었다. 또 「石年」이라 刻字된 秋史先生 筆致의 해시계 받침 石台가 세워져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사이엔 層段지반을마름한 한줄의 외벌石列이 남북으로 길게 펼어있다. 혹시 여기에 담장을 두어 안팎마당을 구획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遺址는 없었다. 이 담장이 있다면 사랑마당과 안채의 마당과는 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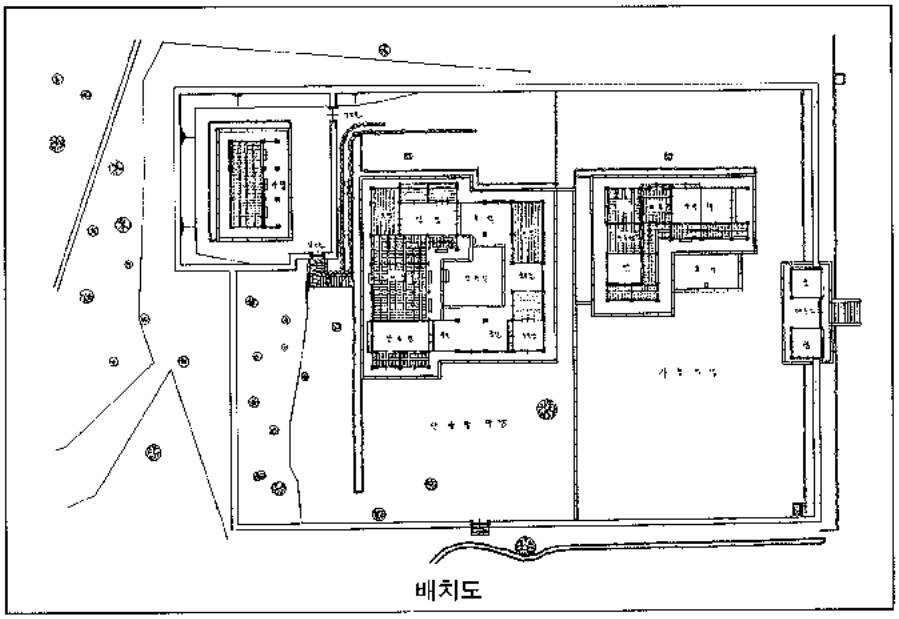

배치도

히 구분되어져 조선시대 士大夫 大家집의 일반적인 배치형상을 갖춘 공간구성이었을듯 싶다. 또는 중간에 낮은 높이의 草花坦이 설치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이 터진 상태로 본다면 안채 남면의 넓은 마당도 사랑마당에 흡인되고 안채의 건너방 부분은 작은사랑 또는 안사랑과 같은 기능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둘러쳐져 있는 외곽 돌담도 당초부터 있던 자리와 형태는 아니다.

口字形 안채건물로 둘려진 내부의 안마당은 매우 협소한 편이다. 그리고 안채의 북측후면에 장독대가 있었고, 우물은 남쪽담장 밖에 있다.

故宅의 南쪽入口에 秋史先生 墓所가 淨楚하게 정돈되어 있다.

3. 안 채

①平 面

안채의 평면은 口字形으로 구성 되었다. 대청등의 주몸체는 西쪽에 앉아 東向하며 그 兩端部에서 ㄷ字로 꺽이어 부엌, 헛간등이 平面의 南·北辺을 이루고 다시 庫間과 中門間, 온돌방등이 東辺을 막아서 있다.

南北의 方向으로 5間, 東西方向 으로 6間이되어 東西로 약간 길죽한 口型이다. 자연히 내부엔 안마당이 형성되었다.

몸체중앙부에 자리잡은 대청은 正面3間의 柱間이 8尺(영조尺)으로 각간2.48m이고 보간(樑間)은 2間이되어 6間대청의 넓은 마루이다. 안마당쪽의 半間을 退로 하여 高柱를 세우고 여기에 四分閤門을 달아 구획하였다. 여름과 필요할때는 완전개방할수 있도록 들어 열개로 고정되고 처마밑에 들쇠가 달려있다. 대청 좌우로는 한칸통으로 안방과 사랑방이 배치되었다.

안방은 다시 동쪽으로 꺽여 2間통이되고 北便으로 半間퇴를 내달아 골방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장마루를 깔고 外壁(北側이됨)의 각칸마다 세살문 달아 後庭에 출입한다. 문밖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었다. 안방위(西便) 板房도 안방뒷퇴가 연장되어 間半通의 庫房으로 활용된다.

안방의 南쪽 즉 안마당쪽에도 半間의 退마루 내어 대청퇴에 接于하였다.

대청채의 南端이되는 안사랑 前面에도 半間退를 내달아 마루방이 되었다. 南面인 사랑 마당쪽에 바라지창 2칸과 西壁上部엔 光窓을, 그리고 東面한 半間에 出入門달아 이리로 출입하게 하였다. 이 퇴板床은 안사랑 마당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屋外內空間을 유통시켜주는 벽없는 퇴마루일것으로도 간주되었으나 기둥몸에 파진 枋材홈과 壁植흔적을 감안 壁設되었다. 넓은 사랑마당을 眺望하며 觀賞할수 있도록 바라지창이 설치되었다.

안채에서 대청좌우의 방을 포함하는 2間통의 主몸채가 지형상 한단높은 바닥을 이루었고 여기에서 東接하는 單間通인 양쪽부엌 등의 바닥이 낮아져 層段을 이룬다.

안방부엌은 2間으로 되어 土床에 부뚜막걸고 그 上部엔 다락이 설치되었다. 두칸부엌중 東1間에 後庭으로 나가는 板門이 있을뿐 안마당쪽은 壁과 出入門없이 완전히 터져있어 이채롭다.

부엌옆 東端間은 마루깔은 板房이 南쪽으로 꺽이여 2間폭의 內庫間을 이루었다.

이 板庫의 남쪽간에 板門을 달아 안마당에서 出入하게 하였고 이어진 南쪽間엔 안채에 들어가는 中門間이 있다.

대청의 왼편 안사랑(보통은 건너방)에서 꺽여 東進하는 첫간의 부엌이고 그옆 두間이 土床으로된 헛간이다. 여기엔 우물에 나가는 便門과 家財도구등을 넣어두는 수장용 헛간이면서 東端의 單間온돌에 굴뚝때는 아궁이가 설치되었다. 안마당쪽은 벽없이 터어놓았고 부엌상부엔 다락을 형성했다. 작은 온돌방에서 北便으로 꺽이어 마루방 1칸, 그리고 中門間에 이어진다. 여기 南東隅의 온돌과 마

안채전경

안채후면

루방 사이에는 불발기창으로된 사분합이 구획하며 마루방에 내어진 넌출문을 통해 안마당에 출입한다. 이방西壁 중방위에 벽장을 달아내고 그아래에 헛간에서 불땔수 있는 아궁이를 두었다.

안방과 안사랑방에도 아랫목쪽에는 머리벽장과 다락에 오르는 벽장문이 있어 부뚜막위의 중간턱을 딛고 다락에 오른다.

안사랑의 웃목인 西壁上部에도 높직한 고미다락을 처마밑에 달아내어 벽장으로 사용한다. 이는 중방과 납도리 사이에 구성되고 그하부에 光窓을 달아 방에 채광을 도모하였다.

中門을 들어서면 곧바로 안채대청이 直視된다. 이것을 막기위하여 근래까지 中門間에 맞벽이 있었다. 中樞의 上·下를 土壁과 板壁으로 가로막고 옆칸으로 꺾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본래의 것이 아닌 까닭에 제거되었다. 원래는 안쪽처마밑에 꽃담으로 쌓아진 내외벽(서울班家등의 華文壁)을 설치하였던 것이나 再現되지 않았다. 안마당이 비좁아 더욱 협소하게 느껴질 것이었다.
이것이 안채의 대체적인 평면상황이다.

안채의 建物규모는 160.49㎡ (48.63坪)이고 안마당 넓이는 22.08㎡ (6.67坪)이다. 間數로는 退間까지 합쳐 24間이다. 그중 안방과 사랑방등 구들놓은 칸이 5間이고 대청 6간, 퇴마루및 板房이 5間 부엌3간, 곳간 2間 문간과 헛간등 土床이 3간이다.

온돌방의 면적이 20%남짓하다. 廳의 넓이는 이에 배가 넘는 면적이다. 多濕한 지역이 아니면서도 마루를 넓게두었다.

안방은 여주인의 일상거처실이며 침실이 된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근거한 내외법에 따라 안방에는 직계존속을 제외한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또 바깥주인이 돌아가시면 다음세대의 여주인(며누리등)에게 비워주고 다른방으로 물러앉았다고 한다. 아랫목은 주부의 자리로서 보통 다락문을 등지고 웃목을 향해 앉게된다. 지금 여기에 두툼한 보료를 깔고 가운데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을수 있는 案席이 기대어 놓여있다. 그 좌우엔 四方枕과 長枕이 놓여있다. 보료앞에는 화문석을 깔아놓고 방석이 배열되어 안주인을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던 모습이다. 화로에 인두 꽂아 방안에 놓아둠이 상례인데 여기엔 보이지 않는다.

안마당을 향한 쌍창아래에 문갑을 놓고 조금 웃목에 반다지와 장롱을 놓았다. 웃목에는 병풍을 쳐놓고 양옆의 문안쪽에는 방장쳐서 외풍을 막은듯하다.

板房인 웃방에도 장과 농이 있다. 대청은 안방및 웃방과 건너방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방으로 출입하는 前室기능을 가지며 여름에는 시원한 거처가 된다. 또한 집안의 큰일이 있을때엔 대청이 중심되어 행사를 치루고 喪事時엔 궤연(几筵)을 모셔두기도 하고 祭祀가 행해지기도 한다.

원래 마루는 民家의 房 中에서 聖所에 해당하여 家宅神인 城主님을 모셔두고 성주동우에 매년마다 햇곡을 담아 경건하게 家運을 빌었다 한다. 그래서 취침을 하거나 손님접대및 居室로의 活用을 하는 空間이 아니었고 後日에 와서 마루의 機能이 變質되었다고 한다. 일부地域에서는 아직도 마루의 本來기능이 保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中·下流 民家에서는 食事·作業·收藏空間으로 쓰인다. 여름에는 居室의 기능을 가지며, 겨울에는 穀物및 其他 家財를 쌓아두는 空間으로 利用된다. 건너방은 며느리의 방 혹은 장성한 子女가 사용하는 방으로 웃목에 장과 농을 놓고 앞에는 樓마루를 두어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것이나 이집에서는 작은 사랑의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방안의 가구와 집기는 놓여있지않다.

이댁에는 안방과 건너방 동쪽에 각기 부엌이 연결되어 있다. 안방부엌은 취사를 위한것이고 사랑방쪽은 굼불때는것이 주목적이다. 방쪽에 부뚜막 설치하고 넓은 작업공간을 가지고 있다. 각기 後庭에 나가는 板門이 있으나 안마당쪽에 벽없이 티어놓았다. 취사調理나 작업기능상 합리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공간 구성으로도 허전한 감을준다. 그리고 반빗간을 따로둔 大家집의 부엌에서나 흔히 볼수

안채의 대청부분 정면

안방의 내부 (옛생활모습의 집기배치임)

사랑방부엌과 헛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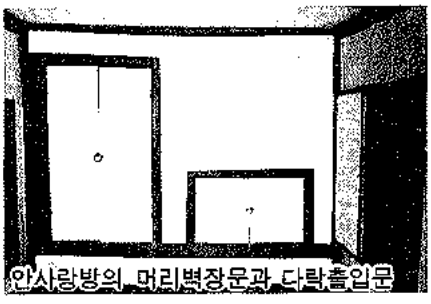
안사랑방의 머리벽장문과 다락출입문

안방부엌과 상부다락

안방쪽을 본 맹장지로된 분합문

있는 형태이다.

어쩌면 □字로 형성된 건물내부 앞마당이 매우 협소한 까닭에 티어놓은 것으로도 보이며 경북월성 양동마을의 「향단」의 부엌과도 비슷하다. 근래까지 유리끼운 분합문이 설치되었던것을 제거시켰다.

②안채의 構造

장대석을 쌓은 基壇이 地形에 따라 層級을 이룬것은 전술한바와 같다. 안마당에서 둘러보면 안방과 대청 안사랑 까지의 몸체쪽엔 두벌장대이고 양편부엌에서 東辺을 감싸는 ㄷ형 축담은 외벌장대이다. 그래서 높은기단에 오르기 위해 디딤돌(步石)을 두었다.

柱礎石은 四角의 높은 梯形(윗 부분이 좁고 아래가 넓은)礎石을 놓고 그 위에 角柱를 세웠다.

마루의 높이는 기단바닥으로 부터 58.5cm가량 떨어져 각간마다 커다란 장대석돌을 놓았다. 마루는 대청과 안방·사랑방의 前退부와 다락이 우물마루이고 골마루와 웃방, 곳간 아랫방옆 마루가 장마루널로 깔았다. 온돌방의 구둘위에는 角壯紙 장판에 콩기름먹이고 벽과 天障은 요즈음 벽지로 도배하였다.

바닥의 낙차는 지붕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主몸체의 처마높이는 양쪽날개부위(南·北辺)보다 1段높으며 안방부엌에서 庫間쪽으로는 다시 한단 낮추어 지붕형성하였다. 架構上으로도 2間通인 몸체는 五樑架構이고 나머지 부분의 三樑架構구성보다 지붕높이가 높아져 자연히 주요부분임을 강조하게 된다.

몸체의 架構는 一高柱五樑架이다. 前退部에서 平柱와 高柱間에 퇴보를 걸되 평주위에 사괴맞춤된 두툼한 운두가 점차 밑바닥을 후려내어 高柱에 긴결됨으로해서 휘어오른듯이 보인다.

高柱와 후면평주 사이에 장중한 들보를 걸고 그위에 동자주세워 종보를 받고 다시 그위에 板臺工을려 마루도리를 받았다. 방이되는 柱列에서는 間柱에 맞보를 接合하고 휘어오른 종보걸어 五樑架구성하였다. 道里는 납도리 이다.

대청등의 천정은 연등으로 서까래가 모두 돌어나며 그사이 공간을 회벽으로 발라 마감하였다.

처마는 부연없는 홑처마이나 八作지붕을 이룬 네귀의 추녀들은 두개의 부재를 덧댄 알추녀이다. 선자잇기는 선자서까래끝이 추녀뒷몸에 모여짜이는 통상방법과 달리 추녀측면에 엇비슷이 갖다댄 엇선자 수법이지만 견실한 편이다.

壁體는 재래식 외역기 心壁에 表面을 砂壁으로 치장했으며 中枋이하의 下半에 하방벽(防火壁)을 두룬곳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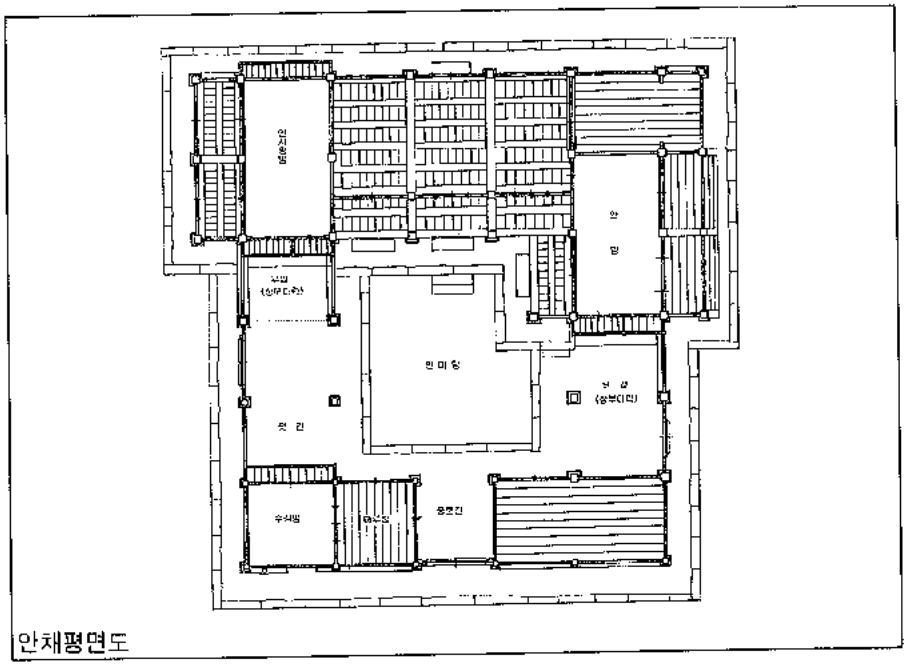

안채평면도

그러나 기둥까지 감싸지 않았고 기둥양면에 용지판 세워대 기둥몸을 들어내는 견실한 품격을 보인다.

구들과 부엌下枋밑등의 고맥이를 돌로 막아 습기를 방지하게 하였다.

각 房에는 세살창호달고를대청과 마루방, 內庫間등에는 바라지창(넌출문이라고도 하는 板門)을 달았다. 또한 부엌과 다락, 벽장, 헛간板房, 庫房등에는 적절한 벽체에 넉살로 가득메워진 光窓을 붙박아 고정하여 채광을 도모하였다. 특히 南面한 부엌과 헛간에는 中枋의 上下에 2개의 크고작은 광창을 수직배열하여 충분한 채광과 함께 外觀을 재미있게 꾸며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온돌방의 出入門은 세살여닫이 안쪽에 두겹다시대고 미서기문을 밀어넣게 하였다. 대청과의 사이에는 맹장지로 고정된 세짝문을 달아 개폐토록하되 필요할때는 문짝전체를 떠 매달아 둘수있게 하였다. 대청뒷벽(西壁)은 머름위에 바라지창달았는데 御間에서만은 머름을 없애고 板門을 크게하여 안채뒷편의 사당에로 직접 나갈수 있게 하였다. 문지방 밖에 步石이 있다. 이를 딛고 나가야한다.

안채에서는 각방과 청의 창문이 머름을둔 높이에 있으나 외견상으론 머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砂壁으로 처리되었다. 부엌위 다락의 높이도 비교적 높아 종도리 밑으로 1.6m가량 확보되어 있다. 다락내부의 채광을 위한 광창이 안마당쪽과 배면에 운치있게 배열되어 있다.

4. 사랑채

①평 면

사랑채는 ㄱ字形 平面의 고패집이다. 側面2間에 正面은 東西로 길게뻗어 南面한 3間半에 여기서 꺽이어 東面한 3間半으로 되어있다.

南向한 집채의 東端으로부터는 半間幅의 함실칸(상부다락)에 이어 사랑방2間과 대청1칸이 連接하였다. 前面엔 半間퇴마루가 연결되고 그 東端에 板門달아 막았다. 대청에 西接하여 "ㄱ"字로 꺽인 부분에 마루방2칸과 온돌방1칸, 그 끝에 半間退가 東쪽에 연결되고 南面한 前

사랑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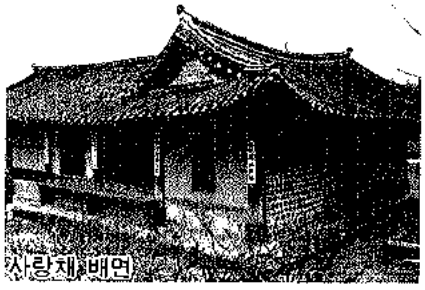

사랑채배면

박공밑에 눈썹지붕달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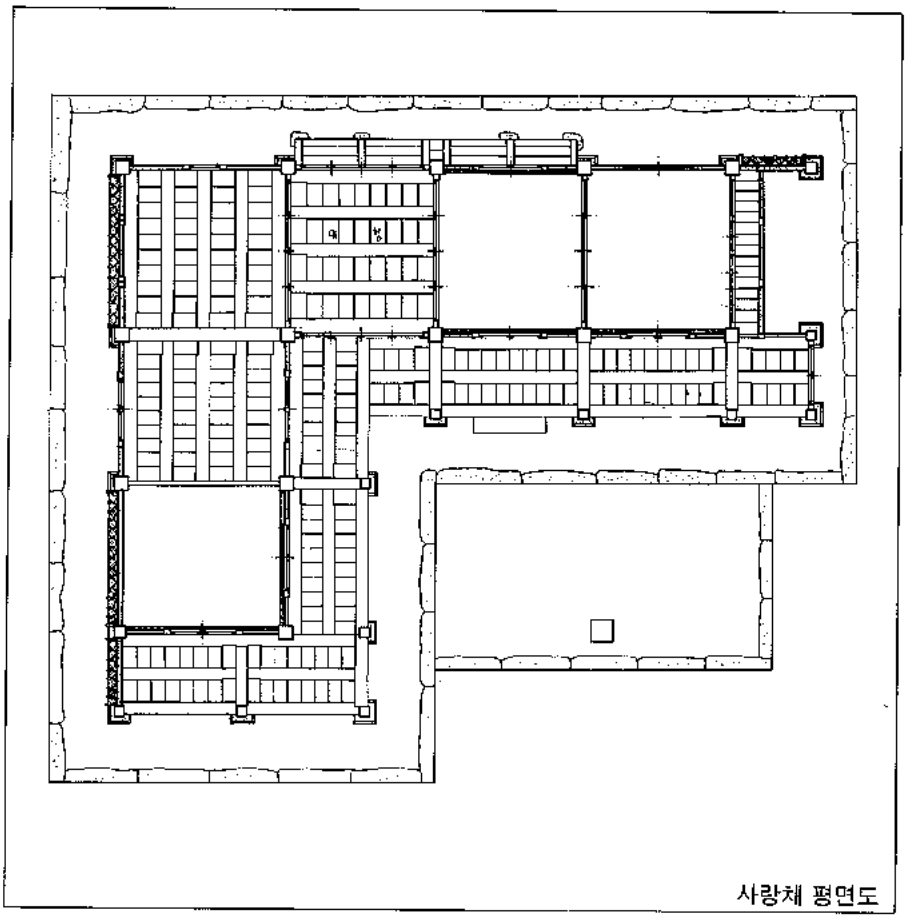

사랑채 평면도

退에 접속된다.

사랑방은 아래·위 2칸방의 중간을 4짝장지로 구획하였으되 개방해놓고 대청과의 사이에도 불발기달린 四分閤을 들어열개로 닫았다. 아랫목 東壁에 머리벽장과 다락문을 내고 다락의 남쪽과 동쪽벽에는 넉살광창 고정시켜 채광했다.

대청은 單間만의 廳이지만 四面壁이 모두 全開될수 있는 四分閤門으로 둘러져 있다. 대청의 前面에는 퇴마루가 고패된다. 대청에 西接해 격인 마루방 2間도 南壁만이 砂壁으로 옆의 구들과 구획될뿐 3面壁의 각 간에는 높낮이가 서로 다른 대소의 창호가 개설되어 내면벽에 변화를 준다. 세살쌍창, 불밝기사분합, 넉살로 만살된광창, 외짝세살창등 각종의 창과 지게문을 보인다. 옆에붙은 작은방도 퇴마루로 둘러쌓은 동·남면에 각각창호가 개설되어 있다.

이방에 아궁이는 西壁下部에 있고 굴뚝도 그쪽에 있어 연기는 방고래를 휘어놓아 나가게 되어있다. 대청과사랑방윗목 배면으로는 좁은 쪽마루 부설했다. 건물의 사면을 장대기단석 돌려지고 고패된 前面에 한단낮추어 花階가 있다. 면적은 23평으로 10.5間인 바닥에 구들은 3간뿐이고 나머지가 모두 마루이다.

사랑방은 주인의 일상거처실이다. 來客의 接待며 食事는 물론 따로 침방이 갖추어지지 않은곳에서는 침실의 역할도 한다. 이댁에서는 사랑채에 작은방이 한칸 더있어 여기에서 취침을 하거나 시중드는 아이의 수직방 또는 객실로도 활용한듯 하다.

사랑방에는 아랫목에 보료를 깔아놓고 案席과 長枕, 四方枕이 놓여져 있으며 南窓아래 문갑을, 벽있는곳엔 높은 책장이 놓여있으며 오른쪽엔 書案과 筆架, 冊櫃(책궤) 茶果櫃등을 정돈이 덜된 채로 있다. 웃목에는 사방탁자를 쌍으로 좌우에 놓아 자기류를 얹어 장식하였다. 보료주 위에 병풍을 둘러치고 창과 문에는 방장이나 무렴자 둘렀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대청은 매우 좁으나 좌우의 불발기 창호를 모두 접어 들쇠에 매달아 얹고 또 前後의 분합을 전부열어 놓으면 西接한 마루방과 사랑방까지 모두 터어져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랑채 외측에 보이는 각 기둥에 마다 精麗한 필체의 주련(柱聯)이 걸려있고 오래된 砂壁面에는 취흥에 젖어 벽면에 직접 쓰여진 肉筆흔적이 남아있다.

② 사랑채 구조

외벌대 기단에 높은 사라리꼴(梯形)주초석 배열한후 角柱를 세웠다. 礎石上面에서도 거리를 띠어 귀틀이 설치된 까닭에 전체 마루높이가 정충하게 높아졌다.

樓다락집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런까닭에 樓마루를 따로 설비하지 않은듯하다. 전체마루밑을 開放하고 온돌 설치한 방벽밑에만 고매기돌로 막았다.

사랑방 웃목칸에만 디딤돌(步石)을 놓아 마루에 오를수 있다. 모두가 우물마루이다. 귀틀을 바깥기둥의 2/3선 까지만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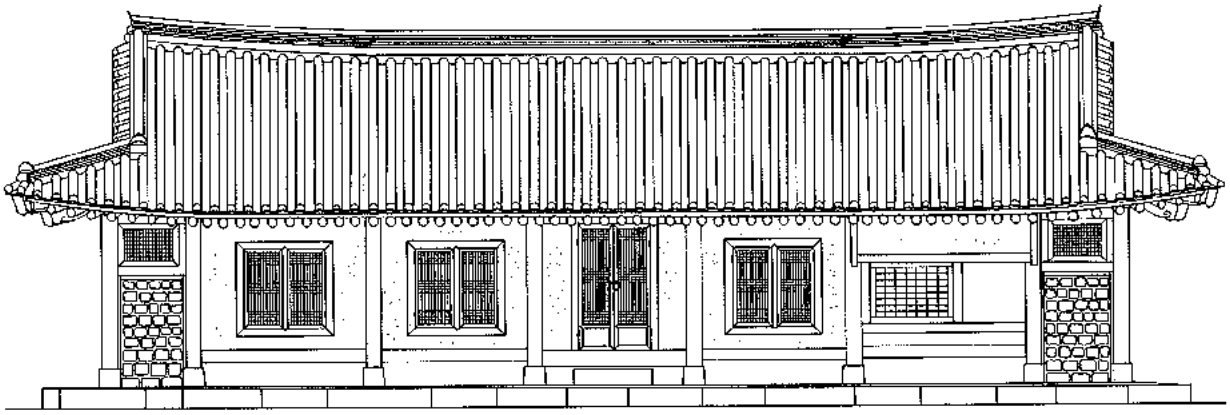

안채 서측배면도

안채 남측면도

려 접합시키고 外緣의 기둥 몸은 드러내었다.

분합문을 제외한 창틀은 퇴마루 위에 높이 떨어져 나지막하게 開口되었다. 머름대위에 세워놓은듯 보이나 前面에서는 머름을 생략한듯, 중방이나 인방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문얼굴의 주위가 砂壁으로 마감되었다. 엷은 미색 色調를 띤 壁體에 문얼굴과 창호만이 들어나 質朴하고 高雅한 기품을 자아낸다. 또 벽면 문짝폭에 알맞는 손잡이 받을 자리엔 받이목이 배열되어 있어 독특한 멋을 보인다.

문얼굴은 쌍사를 넣고 연귀맞춤하여 견실하게 제작되었고 두짝문의 가운데에 중간대를 세웠다. 세살창의 안목에 두껍다지대고 미서기창 넣음은 안채와 같다.

사랑방 아랫목벽에는 앉은 키 어깨높이 쯤에서 중방사이에 머리벽장을 3구 획하였고 그중 남쪽편의 것은 키큰 문짝으로 하여 다락에 오르게 하였다.

架構는 平柱위에 퇴보걸은 一高柱五梁架이다. 道理는 납도리에 네귀를 궁글리었고 퇴보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두툼한 운두하부를 점차 깍아내어 高柱에서 휘어오른듯이 결구되었다.

지붕은 東面한 채에만 八作들고 南面한 東端은 맞배로 하였다. 처마는 홋처마이나 추녀부분을 덧댄 알추녀로 하였고 선자잇기는 안채와 같이 엇선자 꼬임이다.

東쪽 맞배지붕의 박공아래 매어단 눈썹지붕은 邊柱에서 까치다리 빼어내고 그위를 긴장혀 걸쳐대서 서까래를 받게 하였다. 박공과 눈썹지붕, 고미다락과 머리벽장이 이루는 공간구성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각 構成材와 光窓, 바라지창등과 함께 외관의 흥취를 돋구어 준다. 시원해 보이는 樓식 사랑채와 口字로 폐쇄된 안채가 어울려 훌륭한 住家를 이루었다고 본다.

◉ 參考文獻

- 韓國住宅建築 朱南哲 著 一志社 刊
- 한국의 살림집 申榮勳 著 悅化堂 刊
- 韓國의民家研究 張保雄 著 寶晋齋 刊
- 韓國民俗調査報告書(住家편) 文化財管理局 刊
- 秋史故宅重修記「文化財」11號 申榮勳
- 忠南地方 上流住宅研究 朴萬植外 忠大「百濟研究」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주한 스웨덴 대사관 개최 ('86. 3. 14~15)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오는 3월 13일과 14일 여의도 대한생명빌딩에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에너지 생산, 건물내 에너지 절약 그리고 지역 난방에 대해 다수의 스웨덴 업체들이 참가하여 그 효과적인 방법 및 전략을 소개한 후 토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스웨덴의 에너지성 차관인 R. Annerberg 씨가 내한하여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 개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개회식 인사는 주한 스웨덴 대사 John Wingstrand 씨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최근 에너지 성력화(省力化)를 지향하는 한국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최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독특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모두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겨울에는 난방의 필요성이 큰점 등 많은 에너지 환경의 유사점이 있읍니다.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총 에너지 소비중 석유의 비율을 70%에서 40%로 줄였고 산업 생산에서 에너지 소비를 20%나 감소시켜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달성한 바 있읍니다.

스웨덴이 개인당 에너지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면서 또 효과적인 에너지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지역난방, 핵에너지, 폐에너지 재생 등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온 때문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자체 지사나 대리점을 통해 상당 기간 한국에서 활동해 온 업체들 입니다. ASEA 그룹은 ASEA Korea 를 통해, 「Fläk」 그룹은 Godelius Korea 를 통해, Alfa Laval은 Dekor 를 통해 그리고 Tour & Ardersson은 International Engineering을 통해 그간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각종 분야에서 활동해 왔읍니다.

심포지움에서 토의될 내용은 열생산 지역난방 그리고 건물내 에너지 절약의 순서인데 이를 위해 이들 업체 및 스웨덴 정부 기관들은 한국이나 스웨덴에 근무중인 고위 담당자들을 파견하여 각종 신기술과 개념을 소개 발표 및 토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열생산에 있어서는 ASEA 그룹이 MBC (Multi Bed Combustion) 와 PFBC (pressurized Fluidized Bed Combustion) 를 소개할 예정인데 이는 환경 오염의 위험을 줄이고 기존 한국의 저질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읍니다. 또한 ASEA 의 원자력 지역난방 시스템인 SECURE 역시 소개되어 핵에너지가 도시 난방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발표될 것 입니다. 폐열 및 에너지 재생을 위해서는 Alfa-Laval이 열교환기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Tour & Andersson의 자동 제어 장치에 대한 소개와 지역 난방 개념 및 전략 그리고 경제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설명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건물내 에너지 절약에 대해 그 사례 실적과 철학 그리고 도시 계획에 끼치는 공헌도에 대해 발표가 있을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Flakt가 옥내외 공기 교체시 효과적인 방법 등도 추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이밖에 참여하여 발표할 업체로는 S-MHI, Fluidcarbon, CTC, Swedis-District Heating Ass. , Swebx 등의 업체들 입니다. 이들 중에는 스웨덴 정부의 한 조직으로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 관리의 상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책적인 고려 사항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됩니다.

이들 스웨덴 업체가 제시하는 또 다른 협력 조건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입니다. 비행기로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에 위치한 한국에 최종 제품을 운반하기는 용이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들 스웨덴 업체들은 가능한 한 국산화율을 높여 장래에는 현지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진보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지국(理地國)의 부가가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의 제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개념 입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하는 양국간의 에너지 관계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이번의 심포지움에는 국내의 산업, 정부, 학교 기관 등 각계 각층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 (전화720 - 4767) 심포지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Start

> 자, 지금부터 새로운 경주가 시작하려 하고 있다. 경험과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배설해 놓은 혼란과 착오의 와중에서 우리의 갈길을 모색할 줄 아는 지혜와 반성과, 숨돌릴 여유도 생기었다.

金 武 彦/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고교 시절 이미 작고하신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사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람에겐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둘째는 있어서는 안될 사람, 셋째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세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 말을 잠간 빌리어 건축물에도 적용해 보자.

첫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건축물, 두번째는 있어서는 안될 건축물, 세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할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욕망은 샘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솟구친다. 그리고 이 무한한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사의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일부를 채워주는 하수인과 같은 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열심으로 만들어 내는 각종 건축물은 욕망의 부산물로써 건축주의 욕망과 건축가의 또 다른 욕망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단 6일동안에 인간까지 포함하여 순식간에 천지를 만들어 내시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 머리와 손으로 고통을 수반한 끝에 우주에 비하면 강난감과 같은 것을 만들고는 좋아한다.

이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성공작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실패작이 더 많다. 욕망(욕구)에의 충족은 희열을 느끼기에 앞서 엄청난 고통을 갖게 한다. 이는 마치 해산부의 진통과도 같을 수도 있다. 해산부의 진통과 분만후에는 안정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구조일수록 건축행위는 손쉬울수 없다. 법이라는 무자비한 수단을 통하여, 특히 이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운영하려는 부류들에 의하여 오히려 이상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도록 유발시키기도 하고, 건축사 자신의 심각한 착각에 의하여, 또는 사업주의 몰염치한 욕구에 의하여 우스꽝스런 건축물의 실패작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는 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우주를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정부나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단 시간에 해 치울려는 의도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규정에만 급급하다 보면 건축허가 행위가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편승한 건축인들은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다. 건축주들은 이러한 행위를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만들기에 앞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우리 사회, 경제구조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질서가 정립되고, 상당한 시간에 걸친 건축행위의 오류를 범한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투자가 많이 되었다. 요즈음에는 분명히 건축분야에서 각성의 기미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적당한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건축가의 고통을 겪고 탄생한 건축물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건물을 대할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경주가 시작하려하고 있다.

경험과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배설해 놓은 혼란과 착오의 와중에서 우리의 갈길을 모색할 줄 아는 지혜와 반성과, 숨돌릴 여유도 생기었다. 선진국이 되려라는 희망의 목표도 설정되었다. 그리고 잦은 외국과의 접촉에 의하여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을 준비도 되었다. 건축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정상화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인들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건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아울러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질서를 잃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시다.

建築照明③

自然採光을 이용한 照明에너지 節約

Economization on Lighting Energy

金 正 泰
慶熙大 助教授·工學博士

● 晝光과 人工光

인간의 눈은 晝光 아래서 물체의 색을 가장 자연적으로 느낀다. 주광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演色性이 좋은 인공광을 개발하면 된다. 근래에는 인공광도 주광에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많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주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광과 인공광은 빛을 발생시킬 때 열도 발생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는 열을 적게 발생시키고 光量이 많은 광원이 유효하다. 이것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發光效率이 있다. 발광효율은 단위시간에 광원이 발생하는 빛의 양을 그 광원이 단위시간에 빛과 함께 발생하는 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주광과 인공광의 개략적인 발광효율은 〈표1〉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용 전구는 10~20ℓm/w, 형광등은 50~80ℓm/w인데 비하여 주광은 전체적으로 90~126ℓm/w, 직사일광은 51~125ℓm/w, 천공광은 125~129ℓm/w인 것을 볼 때 주광이 인공광보다 발광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만으로 보면 자연채광이 건축의 에너지 절약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효율이 좋은 주광이 광원으로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인공광이 매우 안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광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실외에서 사입되는 주광은 빛의 방향성과 실내에서의 산란성 때문에 안정감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인공조명으로 안정된 실내의 視環境이 창에서의 불안정한 주광에 의하여 산란되어 버림으로써 시환경의 측면에서는 창이 적은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조명을 오히려 증가 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자연광의 영향을 적게하기 위하여 인공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생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표 1〉 광원의 발광효율

광원		발광효율(ℓm/w)
주광	전주광	90~126
	직사일광	51~125
	천공광	125~129
인공광	일반조명용전구	10~20
	수은등	30~60
	메탈할리오드등	50~80
	일반형광등	50~80
	나트륨등	90~140

실내의 재실자는 자연광의 불안정에 의하여 실외의 변화를 느낄 뿐만 아니라 창이 없는 실에서는 작업의 피로도가 크다는 연구들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연채광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란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생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채광계획은 처음부터 건강성과 쾌적성이 풍부한 실내의 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인공광은 주광을 얻을 수 없는 야간을 위하여 발명된 것이므로 주간에 주광을 얻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가능한 주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晝光의 照明에너지節約 프로세스

晝光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우선 채광창을 모의광원으로 가정하여 여러가지 자연채광 계산법으로 주광조도를 계산한다. 이 값과 실내의 설정조도와 비교하여 소등범위를 설정하고, 소등범위에 따라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병용하여 실내의 주광설계를 진행한다. 주광을 이용하여 조명에너지를 절약시키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림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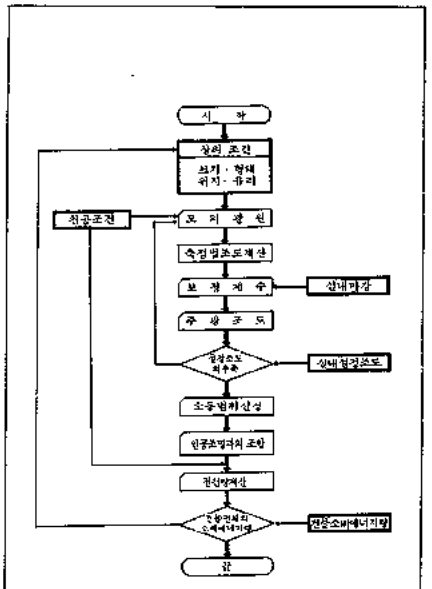

그림 1. 주광이용한 조명에너지의 절약 디자인 프로세스

● 自然採光을 이용한 消燈範囲

창 부근은 주광을 이용하여 채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주광을 이용하여 인공조명을 소등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주광의 이용범위 설정은 직사일광의 고려여부, 인접건물의 영향, 차양시설, 창면적, 창크기, 창높이, 창위치, 유리 종류, 블라인드 이용형태, 조명기구의 배치, 실내의 형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광의 이용범위를 해석한 문헌은 보이지 않지만 일부 요인들을 조합하여 연구한 논문들은 있다. Matsuura와 Tanaka (1979)는 천공광의 상태에서 주광을 이용할 경우 인공광의 소등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3]

이것은 전형적인 오픈 플랜의 사무소가 편측채광으로 이루어져 있고(그림2), 〈그림3〉과 같이 표준적인 조명기구로 전반조명이 되어 있을 경우 태양고도 10° 이상의 晝間(採光晝間)에 있어서 연간 작업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것으로 부터 창으로 부터 주광에 의해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을 때 창근처의 조명기구를 소등하는 경우 소등한 조명기구와 점등한 조명기구의 경계선(소등라인), 정해진 총 시간 중에서 소등할 수 있는 시간비율(소등률), 창 부근의 인공조명을 소등할 수 있는 범위(소등범위)를 구하는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파선으로 표시되었음).

① 소등률을 60%로 가정한다.

② 대상 작업시간을 연간 9~17시로 하면 소등률 60%를 확보할 수 있는 전천공조도는 16,500lx가 된다.

③ 사무소의 소요조도를 500lx로 하면 주광률 3% (=500÷16,500×100)가 된다.

④ 소등라인상의 인공조명 조도는 적어도 소요조도의 1/2은 확보되므로 필요한 주광률은 1.5%가 된다.

⑤ 이 필요 주광률이 충족되는 소등라인은 Q=15°, L=9m의 주광률 곡선에서 3.4m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등라인은 창에서 가까우면 소등면적이 적게 되고, 창에서 멀어지면 소등률이 작아지므로 에너지 절감이 최대로 되는 것은 그 중간 부분이 된다.

〈그림5〉는 최적소등범위를 구하는 그래프로서 B는 실폭, L은 차양길이, Q는 대향건물의 방해각이다. 2/3소등라인 보다 큰 소등범위의 값은 사용하지 않고, 그 경우는 2/3소등라인을 소등범위로 한다. 이것은 천공광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방위에서 쉽게 응용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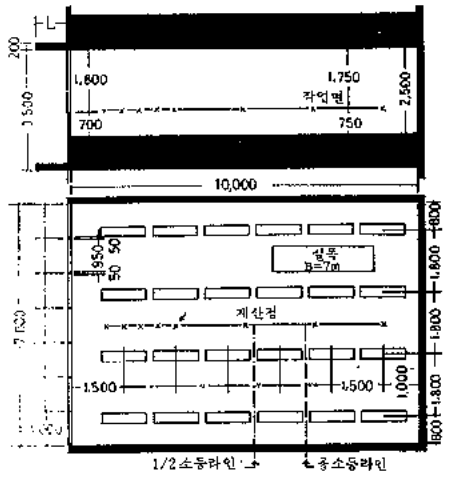

그림 2. 대상 사무실의 단면·입면·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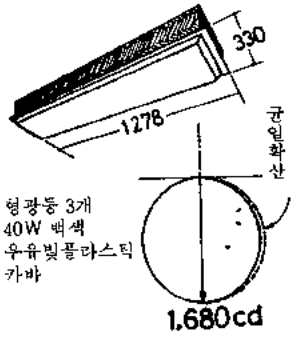

그림 3. 표준조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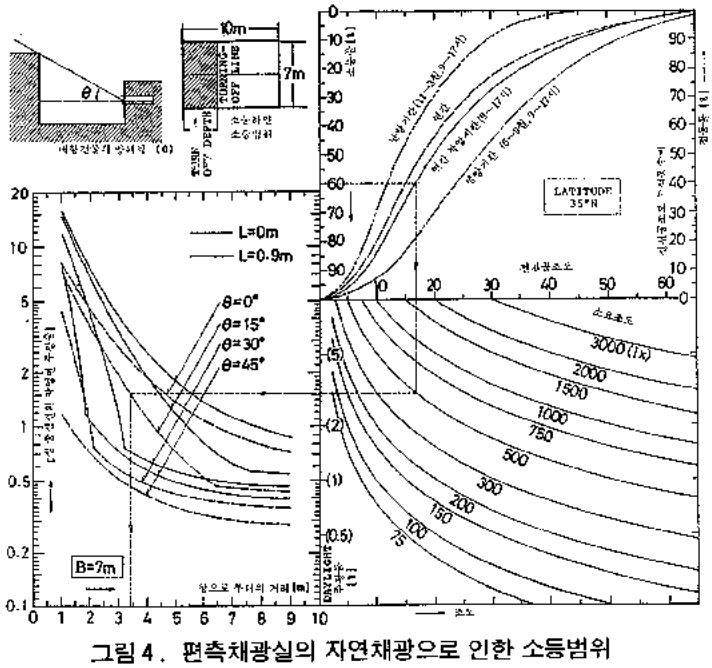

그림 4. 편측채광실의 자연채광으로 인한 소등범위

● 直射日光을 고려한 自然採光의 效果

천공광은 확산성을 갖기 때문에 실내 부까지 빛을 사입 시키기가 곤란하지만, 직사일광은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반사판 등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면 실 내부까지 빛을 사입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사무소 건축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 채광계획을 할 경우 천공광만이 아니고 직사일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사일광을 이용한 晝光照明의 효과를 연구[7]한 것이 있다. 〈그림6〉처럼 스팬이 9m, 실폭이 9m인 실에서 창 전면에 일조조정용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창면Ⅰ]와 직사일광을 이용하기 위하여 창상부에 반사루버를 설치하고,[8],[9] 하부에 일조조정용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창면Ⅱ]의 주광에 의한 실내조도를 비교하여 보자.

일조조정이 목적인 블라인드는 〈그림7〉의 (a) 같이 직사일광을 차폐하는 슬래트 경사각을 설정한다. 반면에 직사일광을 이용하는 반사루버는 (b) 같이 직사일광을 천장면 방향에 반사시켜 천장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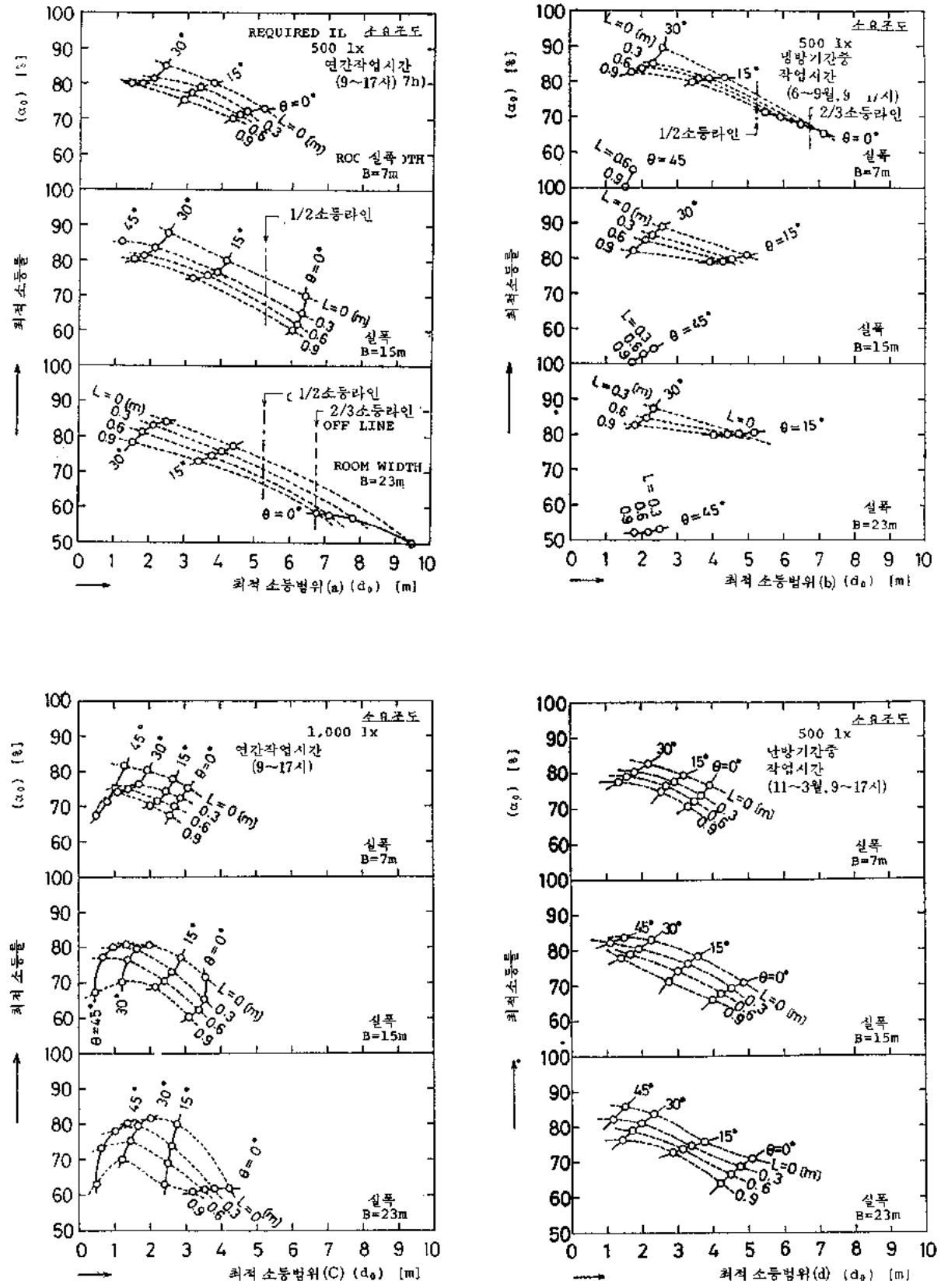

그림 5. 자연채광으로 인한 최적소등범위와 소등률

2차적인 광원으로써 채광하는데 용이하도록 경면반사성의 슬래트 표면과 경사각을 설정한다.

두 경우에 있어서 1년간 晝光의 이용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그림6〉 의 평면을 1.5×1.5m의 그리드로 분할하고, 각 그리드의 중앙점에서 주광에 의한 실내조도를 9시~17시 까지 실의 사용시간대에 따라 1년간 매일 매시각마다 계산한다. 1년간 주광에 의하여 실내조도가 소요조도 이상으로 되는 시간수를 1년간 실사용 전체 시간수로 나눈 값을 自然照明 時間率이라 하면, 자연조명 시간률의 실내분포는 〈그림 8〉과 같다.

창면Ⅰ의 경우 창에서 부터 6m이상에서는 자연조명 시간률이 0.1~0.6% 로서, 소요 주광조도인 500lx 를 얻을 수가 없다. 반면, 창면Ⅱ에서는 창으로 부터 6m 이상에서 자연조명 시간률이 30% 전후가 되어 실 내부에서도 주광 조도가 500lx 이상되는 시간이 연간 실사용 시간수 중에서 약 30% 정도인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창 전면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반사루버를 설치하여 직사일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절약에 약간이나마 유리한것을 알 수 있다.

●點滅調光의 에너지節約 效果

자연채광을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인공조명은 點滅調光으로서 인공조명용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조광시스템은 조명기구, 램프의 종류, 실공간의 사용방법, 실내조도나 휘도 등의 감지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가능한 조작하기 쉽고 경제적인 것이 유리하다. 점멸조광을 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지〈그림 8〉와 자연조명 시간률을 사용하여 인공조명용 소비전력량을 계산한다.

우선 〈그림 9〉와 같이 3×3m의 모듈에 40W 2燈用 기구가 2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조명용 전력은 안정기에서의 손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40W×2등×2대×1.2) ÷ (3×3m)
≒21.3W/m²

또, 1년을 통하여 실사용 중에는 조광하지 않고 점등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인공조명용 소비전력량은 다음과 같다.

21.3W/m² × (10h×5일+5h×1일)
×52주≒61KWh/m²·年

실 전체적으로 4,942KWh/年이 된다.

주광조도가 500lx 이상이면 인공조명이 불필요하므로 자연조명 시간률의 값만큼 인공조명의 소등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3×3m모듈인 경우에 창 부근에서 3m 마다 列에 따라 점멸조광을 한다면 〈그림 8〉의 자연조명 시간률에 따라 〈그림 9〉의 제1열에서는 29.2%, 제2열에서는 2.5%, 제3열에서는 0.2%를 절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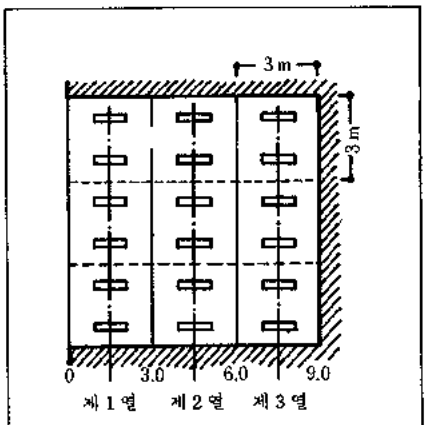

〈그림 9〉 인공조명기구의 배치

따라서, 창면Ⅰ에서 제1열의 조명에너지 절약량은 다음과 같다.

61KWh/m²·年×3m×9m×0.299
=492.5KWh/年

같은 방법으로 창면Ⅰ의 제2열, 제3열과 창면Ⅱ의 제1, 2, 3열을 계산하면 자연채광에 대하여 인공조명을 점멸조광할 때 인공조명용의 전력소비량과 조광에 의한 절약량 등은 〈표 2〉와 같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점멸조광을 실시할 경우 연간 조명용 전력소비량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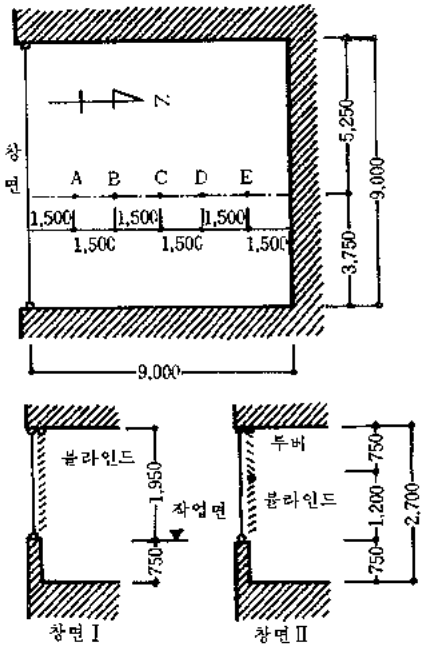

그림 6. 대상실의 평면 및 창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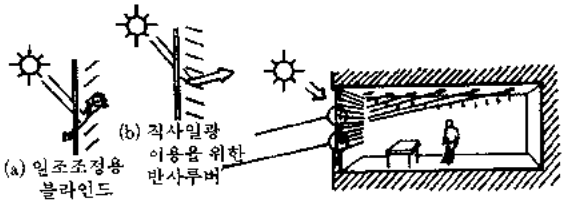

그림 7. 일사조정용 블라인드와 직사일광 이용을 위한 반사루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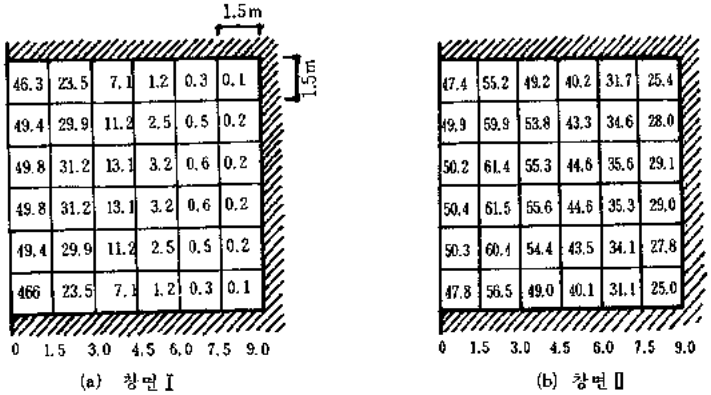

그림 8. 실내의 자연조명 시간율 분포

서 창면Ⅰ은 전체 점등시의 11%, 창면Ⅱ는 약 44% 정도 절약할 수가 있다. 또 창면Ⅰ과 Ⅱ의 전력소비량이 약 1,600KWh/年 정도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직사일광의 사용 유무가 인공조명 에너지의 삭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射 및 照明發生熱의 冷房負荷

반사루버를 이용하여 직사일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직달일사가 실내에 사입되기 때문에 창 전면에 일조조정용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에 비하여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가 증가하므로 직사일광의 이용은 오히려 에너지 절약상 마이너스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그림 6〉의 창면Ⅰ, Ⅱ에 대하여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와 조명발생열에 의한 냉방부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창면의 일사에 의한 열취득은 보통 차폐계수를 사용하므로 〈표3〉과 같은 차폐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우선, 남향의 3㎜표준유리 창면에 의한 연간 일사열 취득량은 약 654Mcal/㎡·年이 된다. 따라서, 창면의 일사에 의한 취득열량은 다음과 같다.

창면Ⅰ : 654Mcal/㎡年×195m×9m×0.53≒6,083Mcal/年

창면Ⅱ : 654Mcal/㎡·年×0.75m×9m×0.93+654Mcal/㎡年×2.2m×9m×0.53≒7,849Mcal/年

일반적으로 창면을 투과한 일사는 바닥·벽 등에 흡수되고, 타임 랙을 통하여 냉방부하가 되므로 열취득 값은 냉방부하 값과 다르다. 그러나 연간 적산치에서 볼 경우 열취득 값과 냉방부하 값은 거의 일치하므로 여기서는 열취득 값을 연간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로 고려한다.

조명발생열에 의한 냉방부하는〈표 2〉에 나타난 인공 조명용 전력 소비량 값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창면Ⅰ : 4,405KWh/年×0.86Mcal/KWh=3,788Mcal/年

창면Ⅱ : 2,773KWh/年×0.86Mcal/KWh=2,385Mcal/年

따라서, 창면Ⅰ, Ⅱ의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와 조명발생 열에 의한 냉방부하를 비교하면 〈표4〉와 같다. 창면Ⅱ에서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가 창면Ⅰ에 비하여 30%정도 증가하지만, 조명 발생열에 의한 냉방부하는 창면Ⅰ에 비하여 37% 감소하므로, 일사와 조명발생열에 의한 냉방부하를 합하면 창면Ⅰ, Ⅱ 사이에는 겨우 4%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또한, 창면Ⅱ의 경우 냉방부하 합계는 창면Ⅰ에서 점멸 조광을 하지 않을 경우의 냉방부하 합계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사 일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채광방식은 냉방부하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사일광의 이용이 인공 조명용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더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채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사무소 건물의 측창 채광이라는 한정된 예를 설명하였지만, 이와 같은 채광 계획은 학교건축, 공장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건축용도, 지역성 등에 따라서 자연 채광의 이용 방법을 개발하고, 인공조명의 점멸조광 방식을 개발하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자연채광에 의한 점멸조광의 효과

에너지소비량 / 점등방식	인공조명용전력 소비량(KWh/年)	조광에의한절약량 (KWh/年)	조광시의 전력소비량 / 전체점등시의 전력소비량 ×100(%)
전체점등*	4,942(61)**	0	0
창면Ⅰ에대한 점멸조광	4,405(54)	537	89
창면Ⅱ에대한 점멸조광	2,773(34)	2,169	56

*전체점등이란 조광하지 않고 실 사용중에는 항상 점등한것.
**(　　)내는 단위 바닥면적당의 값임.

표 4 일사 및 조명발생열에 의한 냉방부하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Mcal/year)	조명발생열에 의한 냉방부하 (Mcal/year)	냉방부하 합계 (Mcal/year)
창 면 Ⅰ	6,083(100)	3,788(100)	9,871(100)
창면Ⅰ(조광안함)	6,083(100)	4,250(112)	10,333(105)
창 면 Ⅱ	7,849(129)	2,385(63)	10,234(104)

●에너지 節約型 自然採光의 IBM 빌딩(5)

디트로이트市 교외 사우쓰 필드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사람의 눈을 끄는 사무소가 있다. 이것은 거너 버커츠 설계사무소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간결하게 표현한 철골조 14층의 IBM빌딩 이다(사진1, 2)

이 건물의 특징은 외관에 있다. 외벽의 구조, 건설기술, 시각효과 등이 새롭기 때문에 외관에 개성이 있다. 여기에는 산뜻한 금속면과 반짝이는 유리 리본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건물의 전체 외벽에서 유리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유리면의 연속과는 다르게 높이 2피트의 수평리본을 사용하여 효용과 美사이에 균형을 취하고 있다. 유리면은 실내 쪽으로 경사지게 부착되어 있어 이 창을 통해 외부를 보면, 옛날의 큰 석조창으로 외부를 보는 것과 같이 밝고 시야가 넓어 보인다.

주광은 유리창의 하단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스틸제 곡면 반사판에 닿아 실내로 사입된다. 실내로 사입된 빛은 유리면의 윗쪽에 부착된 달걀껍질 색채의 알루미늄제 반사판에 닿아 천장으로 유도되어 실내의 안쪽으로 비춘다. 곡면 반사판에 의하여 생긴 부드러운 빛은 바깥을 내다 볼 때 유리면을 실제 이상으로 크게 보이게 한다.

내부의 반사판이 닿는 천장 외주부는 형광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야간이나 어두운 날에 주광과 반대 방향의 빛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두운 겨울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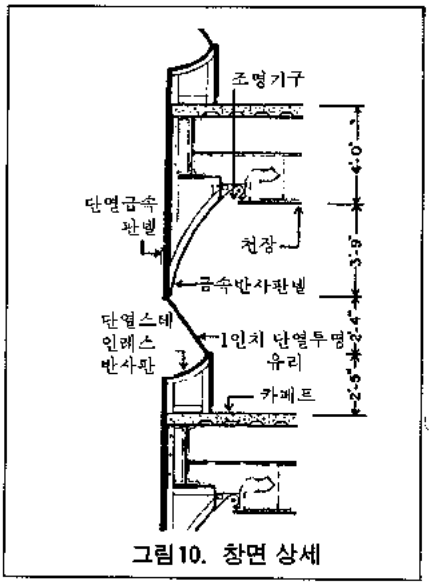

그림10. 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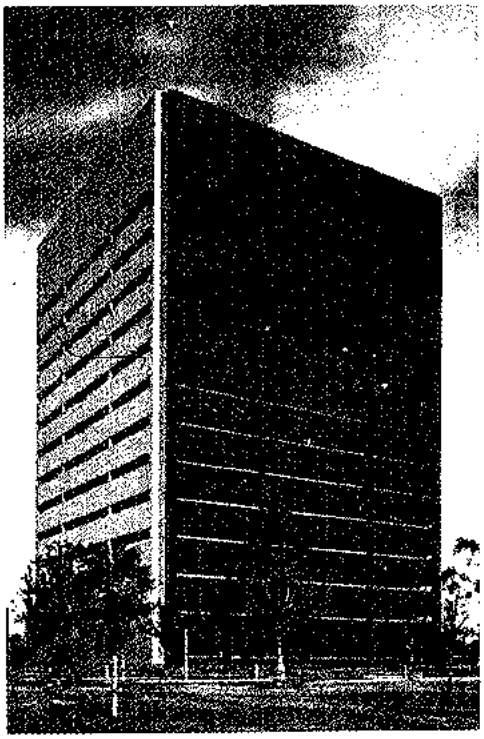

사진 1. IBM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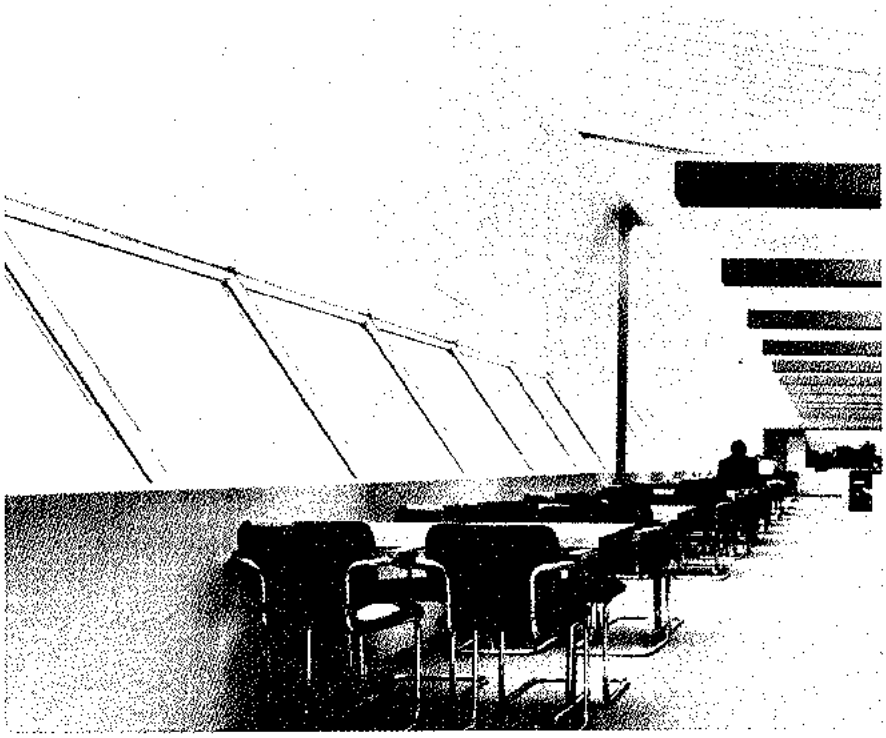

사진 2. IBM빌딩식당내부

형광등이 내부 반사판을 비쳐 외부에서 사입되는 주광의 부족을 보완한다. 이 반사판은 창위의 벽면에 있기 때문에 유리면이 작아도 비교적 크게 보인다.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건물의 벽과 다른 점이다. 일반적인 벽돌은 재래식 창틀로 개구부를 둘러싸 어두운 느낌을 주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형광등은 알루미늄제 반사판에 따라 광전판의 작용이 강해져서 형광등의 광량이 많아진다. 외부가 어두워져 형광등이 전부 켜지면 광전판의 역할은 완료된다.

위와 같은 에너지 절약 방식의 효율은 벽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두 반사판의 내곡면은 전체 두께가 24인치이다.

벽이 두꺼우므로 유효바닥 면적의 비율은 다소 적어지나 그 보상은 에너지 절약으로 약8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유리를 통하여 반사판으로 투과된 열을 고려할 때 최대 일사부하의 경우 약 40% 정도 에너지가 절약 되었다.

실내의 조명은 50fc로 유지되고 있으며, 2watt/ft²의 조명광이 프리즘 달린 아크릴 랜즈판을 통해 내부를 비추고 있다. 외벽과 창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인공조명의 의존도는 최소화 된다. 건물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도 54,000 Btu/ft²에 달하여 연방정부가 제창한 기준에 적합하다.

이 건물의 에너지 보존 방법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없었던 고효율의 설비나 대규모의 태양집열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대지의 향과 자연적 요소, 개구부, 재료와 색채의 선택 등이다. 건축가라면 누구나 알고, 또는 알아야 하는 "패시브"한 인자들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장에는 두 가지 색채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 남면과 서면에 붙인 은색 금속판은 빛과 열을 반사하고, 북면과 동면에 칠한 짙은 갈색은 빛과 열을 흡수한다. 이러한 색채 대비로 다량의 에너지를 절약한 것은 아니나 건물의 향이 얼마나 주의깊게 배려 되었는가를 잘 상징하고 있다.

자연 채광을 이용한 조명 에너지의 절약은 단순히 천공광이나 직사일광 및 점멸조광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창의 디테일에 대한 고려에서 부터 건축을 둘러싼 환경 전체까지를 종합적으로 생각 해야만 한다. 즉, 에너지 절약은 개개의 방법을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점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金正泰, 建築+照明, 技文堂, 1984

(2) 金正泰, 窓디자인 (5); 에네지 節約을 위한 窓開口部 計劃, 꾸밈, Vol. 57, 1985. 12

(3) Kunio Matsuura and Hisatomi Tanaka, Optimum Turning-off Depth for Saving Lighting Energy in Side-lit Offices, Journal of Light and Visual Environment, Vol. 3, No. 2, 1979

(4) B. Euans, Daylight in Architecture, MCGraw-Hill Book Co., 1981

(5) Walter F. Wagner (ed.), Energy Efficient Buildings, McGraw-Hill Book Co., 1980

(6) 編集委員会編, 建築設備の省エネルギー設計手法, 日本建築設備士協会, 1980

(7) 木村建一, 宿谷昌則, 直射日光利用による晝光照明のエネルギー評価のための室内照度の表示, 日本建築学会関東支部研究報告集, 1980. 7

(8) 木村建一, 宿谷昌則, 稲本忠彦, 直射日光利用の自然照明に関する研究(その1, 外側反射ルーバーの基本原理とその效果分析), 日本建築学会大会梗概集(北海道), 1978. 9

(9) 宿谷昌則, 木村建一, 直射日光利用の晝光照明のエネルギー評価に関する研究 (その1, 外側反射ルーバーの效果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論文報告集, 第285号, 1979. 9

(10) 日本建築学会編, 建築の省エネルギー計劃, 彰国社, 1981

정정 새로개선된위원회명당중실내디자인분과위원장

△조구현회원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 792-2497

建築藝術論考 (Ⅱ)

An Essay on Architectural Art

崔 椿 煥
명지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3. 建築藝術의 本質構成要素들

우리들은 前術한 바에 의하여 建築이 藝術의 한 분야임을 몇몇 美學者들의 논설에 의하여 알 수 있었거니와, 建築藝術이 다른 藝術과 구분되는 특성, 다시 말해서 건축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全一的으로 분석 추출하는 것이 建築論의 연구목적이며, 또 本稿가 이 연구목적을 향한 하나의 고찰이요 記術이라 할 때,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건축 예술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諸要素, 因子들에 대한 개별적 고찰과 이들 因子들의 相關관계의 논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들 여러 要素들에 관한 상황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모호한 「空間」 문제 부터 고찰을 시작하여 볼까 한다.

1. 建築藝術의 空間

前號 末尾에서 諸藝術의 分類와 제예술중의 건축예술의 위치에 대한 美學者들의 규정에서 건축은 空間이 主素材가 되는 空間藝術이다 라는 통념적 정의를 얻었거니와, 여기서 일컬어지는 「空間藝術」이란 말은 近代 美學에서 예술의 表現 樣式을 空間藝術(獨, Raumkunst)와 時間藝術(Zeithkunst 또는 musishekunst)로 2대별하여 음악·무용·시 등 시간의 경과 속에 각 구성 부분이 繼起的으로 배열되어 이룩되는 예술에 대비하여, 건축·회화·조각 등에서 空間 속에 並列的으로 배열되어 구성되는 예술이란 구분 기준에서 나온 용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술 구분을 위한 기준인 시간성·공간성은 흔히 각 예술에 공존될 수 있어서, 歌劇이나 무용이 시간 예술이면서 각기 무대 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건축·조각에서 형태의 리듬감이나 視覺의 이동, 시간의 변화에 따른(한낮, 月齊속등) 것등의 시간적 요소의 작용 속에 그 예술성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建築은 본질적으로, 超驗的으로 直觀되는 空間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인식되는 物體에 의한 形象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空間藝術이라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술구분 기준으로 쓰인 「空間」이라는 말을 건축예술의 본질 규정을 위한 개념 용어로써 쓰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건축의 가장 근본적 본질은 공간이다"라고 표현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는 같은 조형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회화·조각등도 다 각기 2차원적 공간과 3차원적 공간속에 성립되고 표현되는 예술로써 공간성을 주소재, 본질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空間」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들 예술의 본질이나 특성이 설명될 수 없을 것이며, 또 같은 3차원적 공간 속에 이룩되는 건축과 조각을 놓고 볼 때, 현대의 여러 조각작품이 건축과 마찬가지로 조각체내에 공허부를 갖는 內部 空間이 존재하는 일방 건축에서는 이집트의 피라밋이나 고대 로마의 개선문 등과 같이 내부 공간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구축물도 엄연히 건축 임에는 틀림없고, 또 내부공간 기능이 외부공간 효과에 미치지 못하여 조각적인 건축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희랍의 신전 건축중의 파르테논도 동서 고금을 통한 건축의 최대 걸작으로 지칭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예술구분 기준인 공간 개념 문제를 떠나서, 建築論上의 空間 問題를 살펴 보자.

「空間」이 建築本質 構成 要素가 될 수 없다는 이론과 최근의 대표적 예는 위선 철학 전공 학자로써 건축미학 이론을 추구한 스크루톤(Roger Scruton, 론돈대학 강사)의 저서 「건축미학」(The Aesthetics of Architecture, 1979) 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제비(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1957) 나 푸랑클 (P. Frank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1968), 기디온(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1941, Architecture and Phenomena of Transition 1970)들을 인용하여 이들의 「空間概念」을 논박하면서 "한마디로 「건축의 경험」이 「공간의 경험」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변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전개서, P43)라고 단정하여 근대 건축의 발생 이념이였던 기능주의와 건축 공간론을 동열에 두고 비판, 부정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 본질로써의 공간론에 대한 비판은 스크루톤만의 것이 아니어서, 建築 空間論의 體系的 系統 硏究를 行한 上松佑 - (東海大學敎授, 1981~1984)에 의하면, 위선 實存主義 哲學者인 하이데가(Martin Heidegger)는 「건축 · 거주 · 사유」(Bauen, Wohnen, Denken. 1952)에서 "건축 한다는 것은 어떤 「場」을 生成한다는것인 까닭에 空間은 諸室의 연결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넓혀짐(extentio)으로써 건축의 物的조직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 한다는 것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결코 空間을 造形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建築 造形이 결코 空間 造形이 아님을 단정하고 있고, 이러한 하이덱가의 所說을 근거로한 공간론 · 비판자들의 대표로써 바드(Kurt Badt, 1890 -)는 「空間槪念」이 도처에서 남용되어 예술 작품의 참다운 의미를 손상 시키고 있음을 경고하고, "조형 예술에서 공간 작용은 언제나 물체의 표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건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공간이 아니라 건축된 물체적인 것이다"라 하고 물체의 표현이 第一義이고 공간은 물체 창조의 결과로써 생기는 空虛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第二義的인 것으로 규정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 공간이 건축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건축 공간론」반대자들에 대비되는 지지자들의 예를 위선 創作의 입장에 선 作家들의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르 꼴뷔제(Le Corbusier 1887 - 1965)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그의 초기에 기능주의의 기수로써 "주거는 사는 기계다"라는 말로써 많은 사람에게 그의 조형 이념을 오해하게 한 그가 그의 노년기에 가서 그의 일생에 걸쳐 어떻게 하면 「건물」이 「건축」이 되는가를 탐구한 결과의 일부를 서술한 자서전적 저서인 「르 모듀롤」(Le Modulor 1948)에서 "1945년, 몇해 동안의 고뇌의 해를 겪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空間」에 대하여 그 감동의 근저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 · 조각 · 회화는 본래 그 종류상 공간에 의존하고, 각기의 방법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는 필요에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근원적인 것은 美的感動의 열쇠는 空間의 作用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신앙에서의 기적은 잘 모르나 造形感情의 完成이라 볼 수 있는 이 무어라 표현 할 수 없는 공간의 기적은 자주 보았다"라고 술회 함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9 - 1959)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가 마지막 저서로써 그의 죽음 2년전에 간행된 「遺書」(A. Testament 1957)에서 건축 창조의 기본적 개념은 곧 공간 개념임을 시사하면서, 인간의 건축공간 의식을 나타낸 最古의 것으로 老子(B.C.550경)의 「道德經」의 제11장의 구절을 음미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근대의 實存主義的 · 現象學的 原理의 철학적 對立槪念인 「實存」와 「非實存」의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뜻이 깊은 것이다. 여기에 이 구절의 외역을 옮겨보면,

30개의 바퀴살이 바퀴의 중심에 모여 하나의 텅빈 바퀴 구멍을 이룬다. 이 구멍의 無의 空間이 차축을 넣어 수레 구실을 할 수 있는 有用함을 낳는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의 텅빈 공간이 그릇의 有用함을 낳는다.

窓問을 달아서 室을 만들 때, 그 방을 쓸 수 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空間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有形의 利가 생겨남은 바로 이 無形의 것에서 비롯된다.

이상의 구절을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建物의 實存는 벽이나 지붕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內側의 空間에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이트의 생각은환 데 휀(Cornelis van de Van) 이 근대 이후의 건축 공간론의 이론 발전의 개요를 서술한 것인 「建築의 空間」(Space in Architecture, 1980)에서 그의 책의 末尾를 짓는 것으로도 인용되기도 하였거니와, 환 데 휀은 그의 결론에서 空間槪念의 연구가 현대와 미래의 건축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비존 속에서 그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 작가들의 공간 이념과 맥락을 같이하는 본격적인 이론 추구의 발생 시기를 환 데 휀은 힐데브란드(A.Hildebrand 獨. 조각가 1847 - 1921)에 의한 「造形藝術의 形式問題」(1893) 에서 건축 이념으로써의 空間의 美學的 知覺에의 形態理論이 창시 되었다고 보고, 전술한 上松佑二는 그 보다 앞서 세링 (F. W. J. Schelling, 1775 - 1854)의 「藝術哲學」(Philosophine der Kunst, 1802 - 1805)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세링은 널리 알려진 "건축은 「凝固된 音樂」이다"라는 말과 「空間의 音樂」이라고 표현하면서 "음악에서의 인터발은 시간의 간격이나, 건축의 것은 공간의 간격이다" 라 하여 건축의 미적공간 체험의 해명을 위한 이론을 제기 하였고, 이를 이어 「공간 이념」이 「건축의 생명」으로서 의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現代美術史 · 藝術學에 많은 영향을 준 불크할트(J. Burckhardt, 1818 - 1897)에 의한 「치체로네」(Der Cicerone, 1855) 로 보고 있다. 그 이후 수많은 哲學, 美學 · 藝術家들의 論者들에 의하여 1850년대부터 현재까지 哲學的空間論 建築空間論이 논의 되어 왔으나, 上松佑二가 지적하듯이 이들 연구가 지금껏 어떤 限界를 넘지 못하고 담보 상태에 놓여 있는듯 하다.

이와같이 「空間」내지 「建築空間」이론의 체계적 규명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첫째로 「人間과 空間」이라는 哲學的 · 認識論的 論究가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6 세기경)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랍 철학에 시발을 두고 근대의 칸트 · 헤겔 · 하이덱카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행하여 졌음에도 아직껏 未解決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와서 Otto Friedrich Bollnow의 「人間과 空間」(Munsch and Raum, 1963)나 Alexander Gosztonyi의 「空間」(Der Raum, 1976) 등에서 어떤 진전을 보인다는데 있고, 둘째는 上松佑二가 Reuger Banham의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1960)를 인용하여

말하듯이, 우리들의 言語體係가 「감각의 표현 보다는 「개념」의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에 「공간체험」이나 「美」의 정의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美的空間體驗」의 美學的 硏究는 여전히 「모든 학문의 한계」로써 많은 論者들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空間」또는 「空間體驗」이라는 것을 이해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서술을 얻지 못한채, 르 꼴뷔제가 「空間의 奇蹟」이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는, 言語를 넘어선 「美的空間體驗」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建築空間論의 근거가 될 諸理論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 空間論 一般의 영역이 어느정도 확장되어졌는가는 上松佑二가 제시 하듯이 위선 Gosztonyi가 그의 저서 「空間」에서 희람에서 현대에 이루는 모든 哲學的的·幾何學的·物理學的·心理學的·現象學的空間論을 體係的으로 論하여, 「體驗空間」「知覺空間」「環境空間을 위시하여 數學的空間」「物質的空間」「宇宙空間」에 이루는 29種의 공간 개념을 분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建築空間」은 이들 어느 「空間」과도 어떤 의미에서 관련되는 「複合空間」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建築空間論」에의 접근도 多岐多樣할 수 있어 建築論的空間論의 추구의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論理的 기초자료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建築論의 입장에서는 실제 작품에서 발생되는 感覺的現象과 그 體驗이 주요 과제가 되므로 「具體的·感覺的·現實的·現象的空間」에 촛점을 맞추어 논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상징공간」「의미공간」도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 공간을 살펴볼 학문적 근거를 갖는 것이나, 모든 고찰에 앞서 필요한 전제가 되는것은, 과연 「건축공간」을 우리들 감각·감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파악하고 감각·지각하는 것은 건축의 量塊(mass)와 벽·바닥·천정등을 구성하는 물질과 형태이지 공간 자체는 잡을 수도 없고 知覺할 수도 없는 空虛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Badt나 Heidegger 가 건축에서 물체가 第一義고 그 결과로 생성되는 공간은 第二義라 볼 때 건축 예술을 구성하는 근본요소·본질을 추출하는데에 「건축공간」을 운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도 생각된다.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Badt나 Heidegger의 논거에 비추어 해답을 구할 수 있을것 같다.

건축 공간이 벽·바닥·천정등의 형태에 의하여 구성됨은 누구에게도 분명하고 「이 형태」가 있을 때 「이 공간」이, 「저 형태」가 있을 때 「저 공간」이 知覺될 것이다. 분명히 form인 물체가 第一義的이고 공간은 第二義가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건축 내부에 들어서서, 바닥의 형태, 벽의 형태, 천정의 형태 등을 각기 다른 순간에 知覺하고 이들을 다시 뒤에 合成하여 그들 3자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室內 全體를 統一的으로 知覺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처음 순간부터 상하·좌우·전후의 3차원의 통일체로써 일시에 파악하는 「立體感覺」이라는 일종의 統覺器管의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들이 知覺하는 것은 분명 건축의 양과나 형태이지만 동시에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도 지각하는 것은 분명하며, 다시 엄밀히 분석하면 어떤 공간에 있어서의 mass form, 다시 말해서 공간이 중심이 되어 공간이 이들 제구성 요소들을 통합 구성하여 각 요소에 표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어떤 管廳건물 내부에서 권위의 위엄성을, 어떤 銀行의 홀에서 財力에 대한 신뢰감을, 어떤 주택 실내 공간에서 인간의 따스함을 체험하는 각기 특유의 空間感과 空間體驗·美的感情등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體驗」은 享受美學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創作美學的 입장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作家가 設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간 그 자체이지 결코 어떤 물체·형태가 추구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작가는 어떤 空間理念을 具理시키기 위하여 材料·構造·마감·장식 등을 사용하고 이것이 可視的 형태가 되어, 공간 표현의 구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간은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간적인 작용은 물체의 표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된다」라는 命題는 「공간은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 대상이며, 공간 작용은 물체의 표현과 더불어 직접 형성된다」라는 命題와 대치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創作과 享受가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合一이되며, 共感을 이룩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건축의 실현은 작가의 설계 행위에서 비롯되어 지는데, 이 설계 행위란 작가의 「理念空間」을 投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시간 후에 이룩 될 「現實空間」에 대한 「미리 投企된 現實空間」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작가는 享受者의 「공간체험」을 미리 체험하는 「空間의 予體驗」을 가지며, 이 작가의 「空間予體驗」이 「建築空間」이 실현되어 향수자의 「공간체험」에 의하여 건축의 완성이 이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 할 것은 創作·享受의 접촉에서 건축 공간을 대하는 향수자의 「主體」의 성격이다. 즉 「건축공간」을 향수자가 단순한 「客體」로써 「自我」의 感性作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건축공간」은 「事物的空間」이 될 것이고 어떤 「建築藝術」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건축 공간이 「聖스러운 공간」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들의 「自我」가 이것을 「超越的空間」으로 感覺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自我空間」과 作家에 의한 「建築空間」이 接合되어 건축의 「美的空間體驗」이 형성되고 이 「自我空間」이 여러 사람에게 공통될 때 「우리 공간」이 형성 되어진다. 이 「自我空間」은 外界의 모든 事物에 대한 자신의 精神的·魂的·理念的 空間이고 이러한 作家와 觀客의 個的空間理念의 共鳴에서 건축 예술이 성립 된다고 요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建築藝術의 本質性을 지녔다고 仮定되는 이 「建築空間」을 구성하는 基本因子는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앞서 건축 공간이 바닥·벽·천정등의 물체들의 형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짐을 보았다. 그런데 이 「형태」는 材料가 갖는 材質感·色感·量感·상세처리·장식마감 등 物性과 모양·크기·선 등의 형태적인 것과 여기에 作家의 「空間理念」의 작용으로 이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理念」이란 그 作家에게 작용하는 文化的要素들, 즉 社會·經濟·時代精神·傳統性·藝術性·기술 등의 社會的·個人的·人文的條件들과 自然的條件(風土·기후·지리등)의 영향하에 형성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原因들이 직접·간접으로 연관을 갖고 하나의 「건축공간」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의 因子들을 정리·분류하여 보면, 결국 上松佑二가 결론으로 정의한 것에 일치하여, 「建築空間」은 「機能」(이것 없이는 애초에 건축이 발생되지도 않는다), 형태(모든 物的·기술적·예술적·요소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건축 공간이 형성될 수 없다) 아이코노로지(iconology; 圖像學, 이 藝術記號論的 성격을 띤 용어는 어떤 예술작품의 유형이 지니는 특성·의의·의미를 뜻함, 이것 없이는 건축 공간이 지니는 理念·意味가 없다)을 內包하고 構成되어져서, 이 「空間」을 「體驗되여 지는 空間」(이 개념은 O. F. Bollonow 가 「人間과 空間에서 쓴 용어이다), 또는 「生이 부여된 空間」(이 개념은 E. Minkowski가 「宇宙論」에서 쓴 용어이다)으로 感覺되어 성립되는 空間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참다운 건축예술 작품이란 이들 기능·형태·아이코노로지·공간체험 이 조화를 이룩하는 「建築空間」에서 구현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 다음號에 계속 -

고층 아파트의 방화 및 피난업무 처리 기준 통보

최근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용 조치에 따라 신축 고층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시 방화 및 피난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아래 내용과 같이 시달한 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무) 예방 02412-4469('85. 12 4) 및 주정 30400-1032('85. 12. 6)의 관련임.

2.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용 조치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상의 방화 및 피난규정의 일부를 보완내지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시 방화 및 피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목적 :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신축이 허용됨에 따라 건축법령상의 방화 및 피난규정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일선시도에 시달하여 운영함으로서 주거안전을 기함에 있음.

나. 대상 : 16층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다. 기준의 세부내용

(1) 피난시설의 보강

(가) 중복도식, 계단식, 타워식의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복도나 계단에 소방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할것. 다만, 편복도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발코니에 인접세대로 피난을 할수 있는 피난구 또는 용이하게 파손할 수 있는 경계 칸막이벽을 설치하고, 피난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를 40미터이내가 되도록 할것. 다만, 건물 양단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와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의 규정을 그 유효폭을 10층 이상의 층에서는 90센티미터 이상, 9층 이하의 층에서는 100센티 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중 1대 이상에 대하여는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할것. 다만, 비상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복합용도 아파트의 구획

(가) 아파트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계단(피난계단을 포함한다) 및 승강기등은 그 아파트 이외의 시설과 내화구조등에 의하여 분리된 구조로 하여 화재등 비상시 긴급대피에 용이하도록 할것.

(4) 21층 이상의 아파트에 관한 유지관리 강화

(가) 2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1)-(3)항에 의한 방화시설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시장·군수가 실시토록 하고, 준공후에는 동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관리주체가 년 1회 이상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할 것.

(나) 21층 이상의 아파트의 관리는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의41항 전문관리업체에 의한 위탁 관리가 되도록 적극 권장 할 것.

라. 행정사항

본 기준은 내무부의 예방 02412-61('86. 1. 10)의 건축법령 관련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 시달하는 것으로써, 아파트의 구조 형식이나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등에 대하여 향후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함과 동시에 본 기준의 운영과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착오없기 바람. 끝.

건 설 부

空氣調和負荷計算法

Heat Load Calculation for Air Conditioning

金 信 道
서울市立大學 助教授 工博

1. 空調負荷計算의 概要

空調負荷計算의 일차적인 목적은 건물에 소요되는 각종 空調機器의 필요한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합리적으로 공조 장치를 계획하고 연간 운전비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건물에 소요되는 각종 기기 및 동력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精度가 높은 실용적인 부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는 곧 건물에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空調負荷의 計算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구분하면 最大熱負荷計算法과 動的熱負荷計算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대열 부하계산법은 공조 장치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그目的으로 특정한 月이나 時刻에 대해서만 계산을 행하는 것이며, 동적열 부하계산법은 1年間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모든 시각의 부하를 계산하는 것이다.

동적열부하계산법은 어느 일정 기간의 부하를 파악할 수 있어 그 부하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공조 방식을 계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운전비를 예측할 수도 있다.그러나,그 계산량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稿에서는 最大熱負荷計算法을 중심으로 建築設計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負荷의 形態 및 種類

실내를 어떤 온습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室外로 부터 유입되는 열과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熱取得」이라 하고 실외로 유출되는 열을「熱損失」이라고 한다. 다음에 그 실을 일정 온습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 또는 공급해야 될 열량을「熱負荷」라고 하며 이는 熱取得이나 熱損失과는 약간 다른 수치가 된다. 그 이유는 창유리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온 태양 복사열의 일부는 건물 구조체에 흡수되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경과한 후 熱負荷로 되기 때문이다.

실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상기의「열부하」그 자체가 제거해야 될 열량이지만 장치 정지 후 실온이 변화 하였을 때 다시 가동하는 경우나 실내 설정 온도를 운전 도중에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특별 부하가 부가되고 熱負荷와 다른 열량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除去熱量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실내에서 생긴 부하와에 취입 외기를 실내 온습도 상태로 변화 시키기 위한 열량, 송풍기의 동력열, 닥트에서의 침입 또는 손실되는 열량을 모두 합한 것이 공조기에 걸리는 부하로 되고, 일반적으로 冷房負荷, 暖房負荷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계산한 합계치를 말한다.

한편, 단독실인 경우에는 그 冷(또는 暖)序負荷가 그대로 空調機에 걸리는 부하로 되지만 다수실을 하나의 공조기에 부담 시키는 경우는 각 실부하의 합계치와는 약간 다르며 이것을 裝置負荷 (空調機負荷)로서 계산한다. 또한, 건물 전체로 되면 각 계통의 장치 부하의 합계와는 또 다른 부하로 되고 이것에 의해서 얻어진 냉동기나 보일라 등의 熱原機器의 負荷를 熱源負荷라 한다.

以上의 사항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1〉, 〈표 2〉는 각각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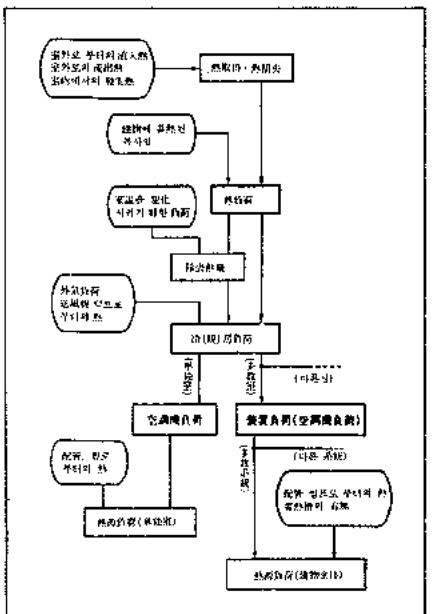

〔그림 1〕 負荷의 形態

最大熱負荷計算에서는 空調裝置의 容量을 산정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냉방부하 또는 난방부하가 최대로 되는 시각의 부하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최대부하란 막연히 최대가 될 때의 부하가 아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부하가 되어야 한다. 또, 냉방부하의 경우에는 일사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냉방부하가 최대로 되는 시간은 반드시 외기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냉방부하를 계산할 경우에는 부하량이 최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를 2～3개 예상해서 각 시각별 부하량을 산출하고 그중 최대가 되는 부하량을 선택한다. 반면, 난방부하의 계산에서는 보통 일사열에 의한 취득열량을 여유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각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다.

〈표 2〉 暖房負荷의 分類

分	類	例
1.室內 負荷	가. 溫度差에 依한 전도열	•外壁·지붕 및 바닥 등을 통과하는 열량(현열)
	나. 틈새 바람	•창의 새쉬, 출입문의 회전등으로 부터의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현열)
2. 시스템에 의한 負荷		•덕트 및 배관에서의누출 및 열손실(현열)
3. 外氣 負荷		•外氣를 室內溫度까지 가열하는 열량(현열)
4. 가습 負荷		•틈새 바람 및 外氣를 室內의 습도까지 가습하는 열량(잠열)
5. 기타		•환기덕트 및 배관에서의 열손실에열부하 등

〈표 1〉 冷房負荷의 分類

分	類	例
1. 室內負荷	가. 太陽 복사열	• 유리창을 通過하는 일사에 依한 熱취득(현열) • 일사를 받는 外壁 및 지붕으로 부터의 負荷(현열)
	나. 溫度差에 依한 전도열	• 유리창을 通過하는 熱취득(현열) • 外氣에 면하는 지붕과 벽을 통과하는 열량(현열) • 간막이, 바닥, 천정을 통과하는 열량(현열)
	다. 室內 發生熱	• 조명에 依한 발열(현열) • 人體로 부터의 발생열(현열, 잠열) • 기구 및 기기로 부터의 발생열(현열, 잠열)
	라. 틈새 바람	• 창의 새쉬, 출입문의 회전등으로 부터의 틈새 바람에 의한 취득열(현열, 잠열)
2. 시스템에 의한 부하		• 덕트 및 배관에서의 열취득, 송풍기 등의 동력열 등(현열, 잠열) • 냉각 코일을 관통하는 외기(현열, 잠열)
3. 재열 부하		
4. 外氣 負荷		• 外氣를 室內 온습도까지 냉각·감습하는 열량(현열, 잠열)
5. 기 타		• 환기덕트, 배관에서의 열취득, 펌프의 동력열 등.

3. 冷房負荷의 計算

3.1 室內負荷

(1) 太陽복사열 – 유리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日射에 의한 취득 열량은 蓄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_G : $A \times I_{max} \times P_{esh} \times P_{est}$

단, G_G : 유리창을 통한 취득열량[hcal/h]

A : 유리창의 面積[㎡]

Imax : 最大透過日射量[hcal/㎡h]

k_{sh} : 차폐계수

h_{st} : 축열계수

蓄熱을 고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축열계수법 (Carrier : Storage Load Factor法)이 있으며 이 때의 축열계수는 건물의 단위 체적당 중량과 공조 장치의 운전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2) 太陽복사열 – 外壁, 지붕

여름철에는 日射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外壁과 지붕으로 부터의 熱取得量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외벽면의 경우 일사를 받으면 그 표면 온도는 외기온도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외기온도와 일사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상당온도(또는 실효온도라고도 한다)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_{wo} = \triangle_{te} \times K \times A$

단, Qwo : 일사를 받는 부분의 열 취득량(hcal/h)

$\triangle_{te}$: 상당온도차[℃]

K : 열관류율[hcal/㎡h℃]

A : 면적[㎡]

(3) 온도차에 의한 관류열량

유리창, 칸막이벽, 천장 및 바닥등 열관류를 통한 취득 열량은 ←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_{wi} = K \times A \times \triangle t$

단, Qwi : 온도차에 의한 관류열량[hcal/h]

K : 열관류율[hcal/㎡h℃]

A : 면적[㎡]

$\triangle t$: 온도차[℃]

(4) 실내발생열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인체, 조명기구 및 기타 기기에 의한 것이다.

인체로 부터의 發生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_{ps} = N \times H_s$

$Q_{pL} = N \times H_L$

단, Q_{PS} : 인체로 부터의 취득 현열량[hcal/h]

Q_{PL} : 인체로 부터의 취득 잠열량[hcal/h]

N : 재실인원[人]

Hs : 1인당 발생 현열량[hcal/h·人]

H_L : 1인당 발생 잠열량[hcal/h·ㅅ]

또한, 조명 기구로 부터의 발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_{Ii} = 860 \times W \times f$

$Q_{If} = 1,000 \times W \times f$

단, Q_{Ii} : 백열 전등일 경우의 열 취득량[hcal/h]

Q_{If} : 형광등일 경우의 열 취득량[hcal/h]

W : 조명 기구의 소비전력[KW]

f : 조명 기구의 동시사용율(일반적으로 ㅅ o 으로 한다)

(5) 틈새 바람에 의한 취득열량

실내로 칩입하는 틈새 바람의 량은 창문틀의 극간이나 출입구의 개폐 특성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냉방의 경우는 난방의 경우보다 틈새 바람에 의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실내외의 온도차가 난방시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틈새바람 량을 구하는 데는 불확정한 요소가 많고 각종 문헌에 나타나 있는 데이타도 전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틈새 바람에 의한 취득 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_{is} = 0.288 V_I (to - ti)$

$Q_{iL} = 720 V_I (x_o - x_i)$

단, Q_{is} : 틈새 바람에 의한 현열 취득량[hcal/h]

Q_{iL} : 틈새 바람에 의한 잠열 취득량[hcal/h]

V_I : 틈새 바람량[㎥/h]

t_o : 외기온[℃]

t_i : 실내온도[℃]

x_o : 외기의 절대습도[kg/kg′]

x_i : 실내 공기의 절대습도[kg/kg′]

3.2 시스템에 의한 부하

시스템에 의한 부하는 실제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부하는 아니지만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관 또는 급기덕트의 열취득, 급기덕트의 누설손실, 송풍기등의 동력열 등 실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부하를 말한다.

이러한 부하는 정확한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내 부하의 총량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실내 부하에 포함 시킨다. 상태에 따라서 5 ~ 15% 정도를 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 %정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3.3 외기부하

공조 장치에서는 실내에 거주하는 재실자에게 항상 쾌적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신선 외기를 취입하여 온습도를 조절, 실내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취입하는 外氣를 실내 공기의 온습도와 같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외기 부하라 하며 외기 부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_{os} = 0.29 \times V_O \times \triangle_t$

$Q_{OL} = 720 \times V_O \times \triangle x$

단, Q_{os} : 외기 도입량에 의한 현열 취득량[hcal/h]

Q_{OL} : 외기 도입량에 의한 잠열 취득량[hcal/h]

V_O : 외기 도입량[㎥/h]

$\triangle t$: 실내외 온도차[℃]

$\triangle x$: 실내외의 절대 습도[kg/kg′]

3.4 기타부하

기타 부하는 還氣덕트, 배관에서의 열취득, 펌프의 동력열등 이상의 계산에 나타나지 않은 부하나 예상외의 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부하로서 일반적으로 실내부하 시스템에 의한 부하 및 외기 부하를 합한 냉방 부하의 일정 비율을 취한다. 보통 5 ~15% 범위이다.

4. 暖房負荷의 計算

暖房負荷의 計算에서는 冷房負荷의 計算時 고려한 태양 복사열, 실내기구 및 재실자로 부터의 발열등은 안전치로 가정하여 일반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냉방 부하의 계산에서와 같이 시각별로 나누어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냉방부하의 경우와는 달리 틈새 바람의 영향이 크고 특히 연돌효과(Stacpe effect)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냉방 부하의 계산에서는 현열과 잠열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공조기를 설계 하지만 난방 부하의 계산에서는 현열만 계산하고 가습 부하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1 실내부하

실내 부하는 온도차에 의한 관류열 손실과 틈새 바람에 의한 열 손실이 있으며 계산 방법은 냉방 부하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지만 外氣에 접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방위에 따라서 보정한다. 이때 보정하는 계수를 방위 계수라 하며 이는 같은 벽체라도 방위에 따라서 풍속이 다르고 또, 일사에 의한 벽체의 건조도등이 달라져서 열 전단율, 열 전도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정하는 할증 계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外氣에 접하는 벽체를 관류하는 손실 연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_T = K \times A \times \triangle t \times h$

단, Q_T : 벽체를 관류하는 손실열량[hcal/h]

K : 열관류율[hcal/㎡h℃]

A : 면적[㎡]

$\triangle t$: 실내외 온도차[℃]

h : 방위계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위 계수는 〈표 3〉과 같으며 외기에 접하지 않는 벽체의 경우는 방위계수를 1.0으로 한다.

〈표 3〉 방위계수

방 위	H	N	NE	E	SE	S	SW	W	NW
방위계수	1.2	1.2	1.15	1.1	1.05	1.0	1.05	1.1	1.15

4.2 시스템에 의한 부하, 外氣부하, 가습부하

시스템에 의한 부하, 外氣부하등의 계산은 냉방 부하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이며 가습부하는 절대 습도차에 의한 가습량을 산정한 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Q_H = H \times 539$

단, Q_H : 가습부하[hcal/h]

H : 가습량[kg/h] *

病院建築의 空氣調和 조닝計劃

Zoning Plan of Air Conditioning in Hospital Architecture

孫 章 烈
漢陽大學校 建築工學科 工學博士

1. 머릿말

병원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환자를 다수 수용하여 치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세균이, 환자에게는 2차감염 및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1은 병원내에서의감염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병원내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내를 적절한 온·습도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내 공기의 청정도 확보, 기류분포 및 압력밸런스 유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종합병원인 경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관공조(全館空調)를 하고 있지만 시설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야간공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24시간 재실하는 병동부에서는 오염공기가 병실내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공조설비의 Zoning 계획 및 압력밸런스 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관공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소한 수술실, 중환자실, 회복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은 고청정도(高淸淨度)로 유지시키면서 실내 전체를 최적환경으로 유지시키는 공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종합병원의 각부분에서의 감염방지를 위한, 공조설비 계획 및 조닝(Zoning) 계획에 대해서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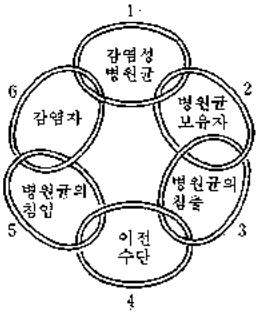

그림 1. 感染 연관성

2. 病院 空調設備의 特殊性

병원에 있어서 공조설비의 필요성은 도심에 있는 병원과 외적환경(외기의 먼지, NO_x, SO_x, 세균, 소음 등)이 비교적 좋은 교외의 병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병원공조설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① 병원내를 적절한 공기청정으로 조절하여 위생적인 환경유지.

② 의사, 병원종사자를 위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유지.

③ 환자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④ 정밀한 의료기기의 열적조건 만족.

병원공조설비는 일반건물과는 달리 이러한 각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병원공조설비에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수 있다.

① 각실은 청정도 요구가 다르며, 오염실의 공기가 청정실에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오염공기에 의하여 병원내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공조설비의 신뢰성, 수술실, ICU, CCU 등의 위험한 장소에 있어서는 특수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열원설비(熱源設備)를 포함하여 신뢰성이 요구된다.

③ 다목적이며 복합건물이다.

④ 위생적인 제품이여야 한다.

⑤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에는 우주개발에 관한 무균실 제약 공장의 기능으로부터, 외래식당, 주생활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건물내에 기능적으로 배치, 총합시켜야 한다.

3. 空調시스템과 조닝

1) 空調設備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고청정도 구역에서는 전 공기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일반구역, 특히 병동에서는 팬 코일유니트 + 덕트방식(FCU+D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 방식은 공조부하의 처리라는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냉각코일, 배수팬등에서의 세균, 진균의 번식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오염제어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을, 병원내에서의 감염방지, 오염관리란 측면에서 고찰하고, 또한 각 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다.

(1) 水空氣方式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CU+D방식은 공기오염관리, 병원내 감염방지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필터의 청소와 교환은 실내에서 한다.

② 보통 FCU 에어필터의 효율은 중량법으로 60% 정도 이내가 되므로, 그이상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되고, 설치 Space가 커지고, 또한 소음이 커진다.

③ 습윤상태의 배수팬은 세균, 진균의 번식체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수팬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한번 정도의 청소가 필요하다. 그림2는 먼지의 발육범위와 온·습도와의 관계이고, 그림3은 녹발생과 상대습도와의 관계이다.

④ 외기 취입의 부족에 의한 취기, 오염.

⑤ FCU 배수관에 의한 오염.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조계획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배수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으로 하거나 배수팬을 심형 또는 트럼프형으로 개조한다.

② FCU 휠터효율은 비색법으로 60% 이상이 되게 한다.

③ 휠터를 떼어내지 않고 청소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다.

④ 병실에서 FCU를 천정에 설치하는 것을 피한다. 그 이유는 필터의 청소시에 먼지가 실내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⑤ 고청정도가 필요한 실은 반드시 전공기방식을 사용한다.

(2) 全空氣方式

전공기방식은 수공기방식의 결점을 공조기계실에서 모두 처리하므로, 병원내 오염방지, 오염관리의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방식을 병원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적절한 죠닝을 하여야 한다. 특히 외래진료부에 있어서는 공조외부 부하뿐 아니라 내부부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각 공조계통의 에어밸런스를 충분히 고려한다. 부분적으로 공조가 정지된 경우에도 압력밸런스가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하면 각실마다 취출구 뿐 아니라 흡입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병원의 성격상 리턴덕트(Return Duct)를 바닥까지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류분포에 주의를 기울인다. 겨울철에 외부부하가 큰실은 보조히터를 창측에 설치하고, 이것이 곤란할때는 페리메타측 천정에 보조히터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 방사효과가 있는 판넬형의 히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부부하의 차이에 대해서는, 덕트내에 재가열 히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죠 닝

병원에서의 죠닝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 부하특성에 의한 죠닝방법, 요구 청정도에 의한 죠닝방법, 시간사용대에 의한 죠닝 방법이며 각 죠닝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부하특성에 의한 죠닝

부하특성에 의한 죠닝은 일반건물과 그 분류 방법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지만, 직접난방을 병원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남북·동서 방향으로의 죠닝은 최소한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죠닝을 하지 않더라도 일사의 영향에 의해 과잉 난방이 되는 장소가 생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난방을 하면서 창을 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때에 막대한 에너지의 손해가 있게 된다.

(2) 요구되는 공기청정도에 의한 죠닝

이 경우는 공조기로 부터 공급되는 공기가 청정도가 다른 구역, 특히 청정도가 낮은 구역으로 부터 높은 구역으로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법이다. 즉 청정도가 다른 구역 또는 각실의 말단부에 고성능 필터를 두어, 동일 공조계통으로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고성능필터의 손상 등으로 인해 압력 밸런스가 붕괴된 경우에, 저청정구역 또는 오염구역으로 부터의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사용시간에 의한 죠닝

대규모 종합병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죠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병동부

병실 및 간호원실은 24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공조도 24시간 동안 계속 운행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병동부를 24시간 공조운전 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현재 여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어느정도 부득이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계획설계 초기단계에서 부터 병원 경영자와 그 병원의 경영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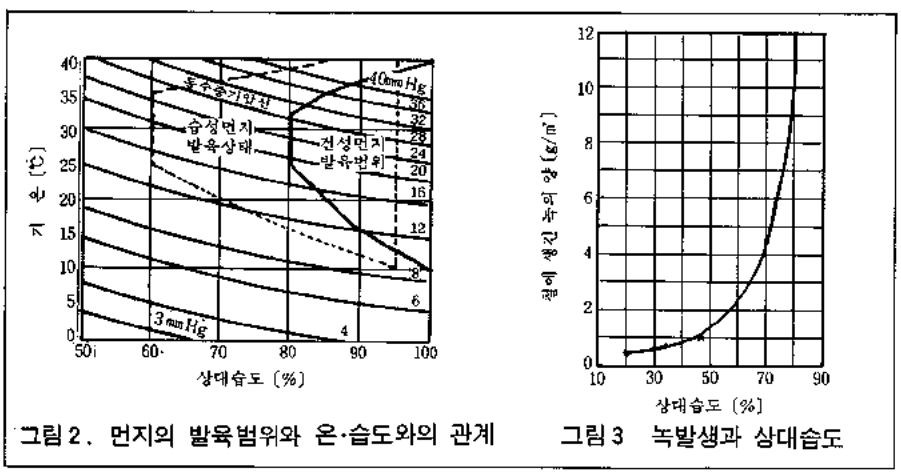

그림2. 먼지의 발육범위와 온·습도와의 관계

그림3 녹발생과 상대습도

② 외래 진료부

③ 수술실과 그 부속실 등 수시로 사용하는 실.

④ 구급실, 긴급수술실, 분만실 등 수시로 주야간에도 사용하는 실.

⑤ 관리실

한편 시간에 의해 조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1) 주간 계통 (晝間系統)

외래환자 진료부, 검사부, 방사선부, 물리치료부.

특히 주간계통중에서도 외래환자 진료부는 사용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독립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2) 주·야간 계통 (晝·夜間系統)

병동부, 중환자실, 일반병실, 관리부 중 일부.

특히 관리부에서 사무실은 주간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긴급사용 계통

외래구급실, 수술실, 분만실 등

4. 各部 計劃上의 要点

1) 中央診療部(外來 診療)

(1) 待合室

대합실은 많은 외래환자가 모이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악화되기 쉬우며 먼지 발생도 매우 많다. 그러므로 외래 대합실에서는 환기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전공기방식이 바람직하다.

(2) 診療室(一般 外來 診療室)

진료실은 대합실에 비해 겨울철에는 2-3℃, 여름철에는 1℃ 정도 실온을 올리는 것이 좋다. 만약 대기실이 있는 진료실에서는 대기실의 실내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취출구, 흡입구의 위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視聽覺室·眼科檢査室

커튼, 칸막이 벽등에 의해서 다른실과 분할되어 용적이 작아지므로 다른곳보다 더워지기 쉽다. 또 청각검사를 할때에는 방음을 위하여 잠시 공조를 중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整形外科室·水治療室

환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걷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닥난방이 바람직하며 또한 水치료실은 다른 진료실보다 2℃정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철에는 판넬히터 등에 의해 발생한 복사효과를 이용한 난방 방식이 바람직하나, 실내 습도가 높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로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5) 放射線 診斷部

환자와 X선기기를 조작하는 제어실에서는 별도의 온도제어장치가 바람직하다.

2) 産科部

산과부(産科部)는 병원에서 유일하게 건강한 사람이 입원하는 곳으로 분만실, 육아부, 병실로서 구성되며, 이들 병실은 다른 병실과는 달리 독립계통으로 한다. 특히 진통실, 분만실 등은 밤동안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열원을 반드시 독립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생아실은 단독계통으로 하여 24시간 운전하고 있지만 특히 유아에게 바람이 닿지 않도록 취출구와 취입구의 풍량, 풍속, 배치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부의 모든실은 병실을 제외하고 전공기방식으로 한다.

3) 病棟部

상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층(多層) 병동에서는 특히 공조가 정지될 때 덕트를 통한 감염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병실과 복도사이의 문은 야간을 제외하고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복도는 병실과 같은 정도의 청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장실, 오물처리실 등의 배기를 충분히 하여 공조가 정지된 때도 이러한 실의 오염공기가 복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건축 계획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

建築學會40年史 發刊

建築學會는 創立40周年을 맞아 그간 산재해 있던

學會 및 建築에 關한 各種 資料를 수집, 정리하여 大韓建築學會 40年史를

發刊하여 建築界 人士에게 普及中에 있읍니다.

普及価格 : 10,000원 問議電話 大韓建築學會 : 553-4715·4716 大韓建築士協會 : 581-5711~4

건축개정법령

◉건설부령제396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을 "별표2의 기준"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를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을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를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을 "법 제2조 제2호 각 '목'"으로, "100분의 2를"을 "별표3에서 정하는 비율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일반 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을 "별표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근린공원"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제4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을 "별표2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근린공원"으로 하고, 동항 제5호 다목중 "대중음식점"을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목중 "·전망대"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희시설등의 종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은 별표1에서 정하는 유희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중 "수평순환회전차, 경사순환회전차 및 수직순환회전차"를 "순환회전차"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을 "별표2의 근린공원중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신설한다.

"〔별지〕 도시공원대장작성기준"을 "〔부표〕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8호중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별표3의 건폐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재원부족등의 이유로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의 종류의 다양화와 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한 적정선까지의 건폐율상향조정으로 민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공원시설	종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폭포, 동릉, 정석, 징검다리
2. 휴양시설	야외탁자,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정, 노인회관
3. 유희시설	씨소, 정글짐, 사닥다리,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삭도, 도섭지, 주유지, 낚시터
4. 운동시설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한다), 스케이트장, 조정장, 철봉, 평행봉, 씨름장, 레슬링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롤러스케이트장
5. 교양시설	도서관, 온실,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고분, 성적, 고옥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6. 편익시설	우체통, 공중전화실,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을 포함한다), 약국, 유드호스텔,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수세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정호
8. 기 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별표 3〕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5조 관련)

공원구분	면적	건폐율
어린이공원	1천500제곱미터이상	100분의 5이하
근린공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00분의 20이하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이하	100분의 15이하
	1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10이하
도시자연공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100분의 10이하
	30만제곱미터이상 50만제곱미터이하	100분의 8이하
	5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4이하
묘지공원	1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2이하

자유치의 요인을 유발하여 공원조성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시공원시설중 운동시설에 씨름장·레슬링장·탁구장·유도장·태권도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추가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함(영 제2조 및 별표1).

나.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종래에는 도시공원의 종류에 불구하고 2/100이하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5/100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5/100이하로,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최고 20/100이하에서 최저 10/10이하까지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도 그 규모에 따라 최고 10/100이하에서 최저 4/100이하까지로 건축물의 건폐율을 각각 상향조정함(영 제5조 및 별표3).

〈건설부 제공〉

〔별표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4조 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미터이하	1천500제곱미터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근린공원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500미터이하	1만제곱미터이상
-도보근린공원 (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1천미터이하	3만제곱미터이상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도시계획 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광역권근린공원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제곱미터이상
○도시자연공원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 건설부령제396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24조의 3"을 각각 "영 제24조의 4"로 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본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대지 내부에 이전하는 행위
3. 도로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이취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도시가스·전기통신사업용 시설 및 상수도 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차양을 설치하는 행위
12. 과적차량 단속용 시설의 설치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제26호서식〕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3"을 각각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부산시·도·시 및 군 도로원표"를 "직할시·도·시 및 군 도로원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주요골자

접도구역중 도로양측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5미터 이내의 구역안에서는 본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본 건물의 동일대지 내부에서 이전하는 행위, 지형의 특수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가·상수도등 시설의 설치는 종래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함(영 제23조제1항)

會員動靜

변경 □서울지부 ＝△민중식 · 손동익 · 신재석회원 / 일우 · 내외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대치동943－15/ 557－8880

△김원안회원 / 동남건축사사무소 / 도봉구수유동176－71 / 994－1551

△염기섭회원 / 건축사사무소기산 / 중구장충동 2 가188－8 / 275－7144

△이정균회원 /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601－15 / 462－6388 553－7998

△조재원 · 전봉수 · 이종철회원 / 주 ·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여의도동34－8 / 782－7596, 7597

△임장열 · 이영성 · 박현철회원 / 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10－1 / 544－6684, 6685

△김형인회원 / 세한건축사사무소 / 도봉구수유동191－27 / 903－4442

△엄덕문 · 송명규 · 이춘상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심원 · 신양 / 영등포구여의도동13－25 / 784－7378, 7379, 783－6935

△허경회원 / 성진건축사사무소 / 중구봉래동 1 가82 / 756－1363

△한숙원회원 / 우보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10－1 / 549－6015

△김병일회원 / 삼산건축사사무소 / 구로구구로2동721－11 / 857－2522

△이근주 · 홍순덕 · 김요철회원 /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예관동70－7 / 269－8151

△안길원 · 성하덕 · 오은택회원 / 주 · 우영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04－4 / 547－2447

△이강호회원 / 법화건축사사무소 / 종로구명륜 4 가187 / 765－2344

△윤인묵회원 / 가야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신길동159－50 / 846－5863

△강철구 · 김태선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우건축 / 영등포구여의도동17－10 / 783－4011～3

△이석규 · 송시준회원 / 부경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동구잠실동176－4 / 423－3619

△김춘광회원 / 수도건축사사무소 / 성동구송정동68－18 / 466－1741

△이기범 · 조승택 · 조영민회원 / 주 ·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서초동85－1 / 547－7722, 548－8833

△표상권회원 / 건축사사무소상현 / 종로구청운동39－6 / 724－7837

△안욱회원 / 대림건축사사무소 / 은평구응암동84－9 / 386－2848

△황문택 · 조벽연 · 유원동회원 / 정화삼경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자양동220－365 / 447－7442, 444－6494, 446－5635

△김강석 · 조순영 · 성미자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삼 · 현익 · 미성 / 강남구서초동12－7 / 555－1462, 566－7469, 567－5879

△김용엽회원 / 주 · 태양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01－4 / 548－0056

△차동명 · 이강범 · 서천식 · 강남익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건축 / 강남구논현동81 / 549－6000, 545－0995, 549－3100

△임종현회원 / 원일환경건축사사무소 / 강동구송파동19－7 / 415－5620

△이재철회원 / 제일건축사사무소 / 강서구화곡 5 동998－5 / 696－1785

△이영필회원 / 영일건축사사무소 / 구로구구로동1125－1 / 853－0355

△김용호회원 / 동원건축사사무소 / 용산구한강 1 가305－1 / 797－7895

△정연준회원 / 연일건축사사무소 / 성북구삼선 5 가298－3 / 923－4998

△류시락회원 / 건축사사무소풍산 / 강남구청담동134－20 / 546－5252

△오기수회원 / 해청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42－30 / 545－9830

△이영복 · 강의식 · 구재완 · 이해백회원 / 도양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방배동750－14 / 590－4446, 590-4467

□부산지부＝△김종문회원 / 신생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0－1 / 89－8511

△허인회원 / 모든건축사사무소 / 동래구거제동817－36 / 83－6809

△박상한회원 / 삼영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8－31 / 89－6786

△이효동회원 / 건축사사무소구정에성 / 동구초량 3 동1153－7 / 462－2914

△윤근수회원 / 중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부평동 2 가31 / 22－1908

△허선행 · 최정일회원 / 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85－17/ 89－2053

△이경진회원 / 이경진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351－14 / 802－6500

△김원일회원 / 원일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 1 동351－14 / 89－2366

△이태호회원 / 남영건축사사무소 / 남구광안동338－1 / 753－2419

△윤수근 · 김종욱 · 양희도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한길 / 부산진구부전동475－3 / 803－3400

△안일성 · 류광홍 · 문용규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광장 / 동구초량동1169－11 / 44－3737～8

△이강득회원 / 신보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352－14 / 804－8370

△박정덕회원 / 건축사사무소대성 / 동구범 2 동830－196 / 66－1676

△김하원회원 / 건우건축사사무소 / 남구남천동27－23 / 622－6042

□대구지부＝△박정택회원 / 고려건축사사무소 / 중구동문동13 / 44－7370

△정현수회원 / 정현수건축사사무소 / 중구동문동13 / 46－3020

△이주영회원 / 삼덕건축사사무소 / 서구내당동101－1 / 624－1636

△이성완 · 이성영회원 / 중구공평동72－2 / 422－6624

△임봉수 · 이택붕 · 최병국 · 임성영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남양 / 중구태평로 1 가 1 － 3 / 44－1544

□인천지부＝△황용연회원 / 대신건축사사무소 / 중구중앙동 2 가23

□경기지부＝△신현수 · 양하섭 · 신현범회원 / 신현수 · 양하섭 · 신현범종

합건축사사무소 / 안양시안양동505－8 / 3 －2408

△안일남회원 / 안일남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64－2 / 44－2374

△우종선회원 / 우종선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204－14 / 42－8005

△연진명회원 / 연진명건축사사무소 / 파주군금촌읍아동리68－4 / 2－5583

△박재만회원 / 박재만건축사사무소 / 부천시원미동105－9 / 64－6117

△유봉정회원 / 유봉정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안양동524－18 / 2－5224

□강원지부＝△김재철회원 / 가일건축사사무소 / 강릉시성내동25－2

△홍영배회원 / 대하건축사사무소 / 강릉시성내동 6 －14

□충북지부＝△표재범 · 김영욱회원 / 표재범 · 김영욱건축사사무소 / 청주시북문로 2 가116－257 / 2 －2477

△박성인 · 정경수회원 / 박성인 · 정경수건축사사무소/ 청주시북문로 2 가116－165 / 3 －5453

△김석근회원 / 천일건축사사무소 / 청주시북문로 2 가116－168 / 52－9750

△박성식 · 오수복회원 / 수복건축사사무소 / 청주시북문로 3 가87－4 / 3－5075, 2－0894

□충남지부＝△조석명회원 / 건축사사무소한양 / 공주시반죽동128－2

△송재길회원 / 송재길건축사사무소 / 공주시교동118－1

△김세환회원 / 김세환건축사사무소 / 공주시중동147－68

△김중근회원 / 아도건축사사무소 / 공주시반죽동 1

△신기현회원 / 신기현건축사사무소 / 대천시대천동197－10

△류인수회원 / 류인수건축사사무소 / 대천시대천동197－19

△한상건회원 / 한상건건축사사무소 / 대천시대천동179－1

△이문석회원 / 온양건축사사무소 / 온양시온천 1 동86－23

△류경석회원 / 유림건축사사무소 / 온양시온천 1 동98－8

△박공로회원 / 대원건축사사무소 / 온양시온천 1 동89－1

△안병섭회원 / 신진건축사사무소 / 온양시온천 1 동86－23

△류근열 · 정인협 · 김종민회원 / 중도건축사사무소

△박홍식회원 / 건축사사무소대전종합건축 / 대전시중구태흥동 477－1

△이영순회원 / 영건축사사무소 / 대전시중구봉명동448－14

□전남지부＝△이재필회원 / 이재필건축사사무소 / 목포시무안동 9 － 5 / 2 －3067

△이하종회원 / 대양건축사사무소 / 동구금남로 5 가152 / 33－3584

△고재선 · 민성기 · 정경래회원 / 중앙 · 조양 · 한남종합건축사사무소 / 동구충장로 1 가22－2 / 22－7977, 232－7275~6, 27－9930

재개 □서울지부＝△허경회원 / 성진건축사사무소 / 중구봉래동 1 가82 / 86. 1. 18

재입 □서울지부＝△조건영회원 / 건축사사무소기산 / 중구장충동 2 가188－8 / 275－7144

□경기지부＝△박태신회원 / 박태신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92-6 / 3 －4116

전출 □서울지부＝△조종삼회원 / 주 · 원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천시남구구월동159－6 / 86. 1. 29

□충남지부＝△안상범회원 / 안상범건축사사무소 / 연기군조치원읍교동 1 － 5 / 86. 1. 29 / 충북

□충북지부＝△정진억회원 / 청호건축사사무소 / 청주시북문로 2 가 2 － 1 / 86. 1. 6 / 강원

□경기지부＝△김중근회원 / (주)김중근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134－3 / 85. 12. 19 / 충남

전입 □경기지부＝△김재황회원 / 김재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수원시원천동85－21 / 34－0911 / 전북

△오수암회원 / 오수암건축사사무소 / 수원시교동201－1 / 44－3840 / 85. 12. 21 / 서울

△황철동회원 / 황철동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91－1 / 2 －2826 / 85. 12. 24 / 인천

□강원지부＝△정진억회원 / 정건축사사무소 / 영월군영월읍하송리187－1 / 3740 / 86. 1. 17 / 충북

결혼 □서울지부＝△오용근회원 / 장녀결혼 / 85. 12. 7. 12：00 / 운산예식장

△서현진회원 / 장녀결혼 / 85. 12. 8. 13：00 / 대전귀빈예식장

△임용택회원 / 장남결혼 / 85. 12. 20. 12：00 / 서교동경남예식장

△신국범회원 / 장녀결혼 / 85. 12. 21. 14：00 / 소망교회

△이택주회원 / 장녀결혼 / 85. 12. 29. 10：30 / 경남예식홀

□경기지부＝△장신기회원 / 장녀결혼 / 85. 12. 7 / 동원예식장

△유성종회원 / 삼남결혼 / 85. 12. 7 / 태극당예식부

△조정희회원 / 제미결혼 / 85. 12. 7 / 부천예식장

△윤문혁회원 / 사녀결혼 / 85. 12. 14 / 주신예식장

△홍재혁회원 / 차남결혼 / 85. 12. 19 / 파노라마예식부

△정은용회원 / 삼녀결혼 / 85. 12. 21 / 결혼의집궁원

수연 □서울지부＝△조태종회원 / 부친수연 / 85. 12. 22 / 경남

별세 □서울지부＝△임양섭회원 / 부친별세 / 85. 12. 8 / 충북자택

△김상준회원 / 모친별세 / 85. 12. 15 / 관악구남곡동자택

△윤용창회원 / 본인별세 / 85. 12. 17 / 이대부속병원

△이종관회원 / 부친별세 / 85. 12. 19 / 경기도자택(포천)

新入會員

□崔光守 / 38. 4. 10 / 서울 / 한양대건축공학과 / 국민대학대학원 /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예관동70-7 / 269-8151

□韓忠國 / 51. 4. 4 / 서울 / 홍익대학교건축과동대학원도시계획과 / 종합건축사사무소중원건축 / 서울강남구서초동427-3 / 585-2281

□曺建永 / 46. 1. 9 / 서울 / 서울대학교동대학원건축과 / 펜실베니아대학원도시계획 / 건축사사무소기산 / 서울시중구장충동2가188의8 / 275-7144, 7145

□李鍾贊 / 51. 7. 17 / 서울 / 한양대학교건축공학과 / 건축사사무소원양 / 강남구논현동237-10 / 547-6534

□金國泰 / 46. 12. 5 / 경북 / 포항동지고등학교 / 세진건축사사무소 / 경북포항시죽도동48-15 / 73-4383

□權五雄 / 52. 8. 20 / 경북 / 경주공고건축과 / 부성건축사사무소 / 경주시노동동117/42-2600

□吉錫俊 / 48. 12. 21 / 서울 / 서울공고건축과 / 태웅건축사사무소 / 서울동대문구답십리5동530-27 / 249-7660

□宋容守 / 52. 8. 15 / 부산 / 동의공업고등학교 / 송림건축사사무소 / 부산시남구남천동9-2 / 623-0008

□安貞熙 / 49. 3. 15 / 경남 / 한양대학교건축공학과 / 건양건축사사무소 / 서울도봉구수유동134-58 / 906-2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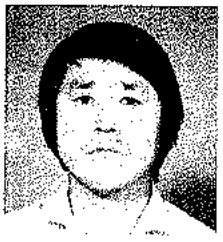

□金勇哲 / 52. 10. 28 / 제주 / 서울대학교동대학원건축과 / 종합건축사사무소중원건축 / 서울강남구서초동427-3 / 585-2281, 2282

□白椿根 / 50. 4. 20 / 부산 / 동의공업고등학교 / 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부산시부산진구부전2동485-17 / 89-2050

□尹承文 / 53. 1. 2 / 경남 / 울산공고건축과 / 아성건축사사무소 / 울산시중구남외지구 / 92-3637

□金洛中 / 50. 8. 13 / 서울 / 홍익대학교건축과 / 종합건축사사무소중원건축 / 강남구서초동427-3 / 585-2281, 2282

□權世京 / 53. 9 17 / 전북 / 전주공고건축과 / 종합건축사사무소홍건축 / 강서구화곡동 105-5 602-2660

□孫明文 / 53. 9. 28 / 경북 / 경희대학교건축공학과동대학원 도시계획 · 연세대학교산업대학 / 건축사사무소건 · 환 / 강남구 논현동88－9 / 549－0996

□朴勝彬 / 54. 2. 11 / 부산 / 성지공업고등학교 / 가나건축사사무소 / 부산시동래구수안동491－1 / 54－1110

□周外植 / 54. 5. 15 / 성지공고건축과/은승건축사사무소/부산동구초량5동1196－1 / 462－8687

□金軟培 / 54. 12. 1 / 동도공고건축과 / 건축사사무소가람 / 서울강남구대치동1000번지/552－7182

□金興基 / 55. 4. 15 / 경남 / 경남공업전문대학건축과 / 건축사사무소구정예성 / 부산시동구초량동1153－7 / 44－0550

□尹永熙 / 55. 9. 20 / 충남 / 성균관대학교건축공학과 /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 강남구 논현동106－8 / 542－8264 4644

□李京龍 / 56. 1. 8 / 대구 / 영남공업고등전문학교건축학과 / 건축사사무소미주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197－2 / 754-5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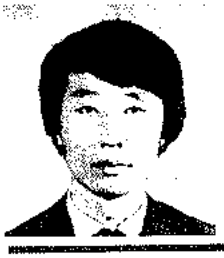

□趙吉弘 / 경남공업전문대학건축과 / 대웅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이동1776－8 / 53－2707

回 준회원

□李錫永 / 47. 4. 8 / 충남 / 인하공업전문대학건축공학 / 대전시청 / 대전시중구대흥2동 / 250－2269

□金亨鎭 / 48. 8. 15 / 충북 /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 부산동구좌천3동1116－1 / 643－0942

□金建陽 / 49. 3. 20 / 인천 / 인천공업고등학교건축과 / 안양시교육청 / 경기도안양시호계1동 / 52－5004

□鄭求平 / 49. 6. 7 / 서울 / 한양대학교건축과 / 대한주택공사 / 서울강남구논현동 / 545-2101

□李鎭洙 / 52. 10. 18 / 전남 / 경기개방대학건축학과 / 한신공영주식회사 / 강남구잠원동130－17 / 591－5165~7 교 35

□李商浩 / 52. 12. 26 / 충남 / 대전공업고등학교건축과 / 충남도청 / 대전중구선화동 / 26－3071

태평양지역 건축구조용 강재회의

PACIFIC STRUCTURAL STEEL CONFERENCE

뉴질랜드오크랜드에서 (1986. 8. 5~7)

이 회의는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제 1 회 건축구조용 강재회의 입니다. 회의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철강재 디자인의 최근의 발전, 세부사항 및 연구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지대 및 비지진지대의 철강재 적용 모두를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인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이 9개국으로 부터 123편이나 접수되고 있는 바 이 회의에 대한 반응은 압도적 입니다.
이 사실은 이번 회의가 진정한 국제 회의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것이며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여지껏 다른 철강재 회의에서 발표 되었던 논문들보다 뛰어나고 흥미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철강재 디자인과 연구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다섯분의 저자가 회의에서 기조연사로 연설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은 축적된 전문기술로 부터 상당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prof. B. kato	prof. of Civil Engineering Univ. of Tokyo, Japan 철골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 순서
prof. E. P. popov	prof. Emeritus of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 S. A. 캘리포니아 지역의 철골조내진 설계
Mr. H. A. krentz	president of the Canadi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willowdale, Ontario, Canada. 제한된 지역내의 설계 – 합리적인 해결 방안
Mr. g. w. butcher	senior partner of Morrison. Cooper & ptnrs Wellington, NZ 철골조 내진 설계 원리
MR. T. J. Hogan	Assoc. of stigter Clarey & partners Sydney, Australia. 경제적인 설계 그리고 철골조를 사용한 중층 상업용 빌딩

회의장소는 호화스러운 쉐라톤 호텔이며 주요 프로그램 이외에도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 견학여행, 무역전시회 및 젊은이를 위한 사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은 아래 주소로 Craig McIlroy 씨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rganizing secretary 1986 pacific Structural Steel Conference P. O. Box 76-134 Manukau City, Auckland, New Zealand.
·Telex 60334 FERANZ Telephones: (09) 278-9693, (09) 278-5179

회원작품 출품안내

건축사지를 아껴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건축사지의 질적 향상과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위하여 '86년 3월호 부터 회원작품란에 게재되는 작품의 사진을 본 협회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인 林正義씨가 촬영하여 게재키로 하였읍니다. 다음 서식에 의거 많은회원의 참여를 바랍니다. 단, 건축사지에 게재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원고는 본 협회에서 보관합니다

회원작품카드

회 원 명 ●

등록번호 ●

분류번호 ●

설계년도 ●

준공년도 ●

건 축 주 ●

소 재 지 ●

설계자 사진

간략사진 및 도면 (변도첨부)

직 종 명 ● 국 한 문 ●

영 문 ●

설 계 자 ● 국 한 문 ●

영 문 ●

사무소명 ● 국 한 문 ●

영 문 ●

주 용 도 ●

규 모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면 면 적 ●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구 조 ●

주요설비 ●

설계개요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전화 581 – 5711~4

大韓建築士協會

會館賃貸案內

協會會館은 一般人에게도 賃貸합니다.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대구분

- 전시관 : 전시회 또는 경양식업등
- 강 당 : 회의장 또는 예식장(460석)
- 사무실 : ㉮ 기히 설계제도용품상회 입주완료
  (三亜商社 전화 586－1945 (代) 5009)
  ㉯㉰ 임대신청접수중
  (지도, 도서전시판매, 컴퓨터등)
  ㉱ 기히입주완료(건축행정서식판매)
  (한일사 전화 581－6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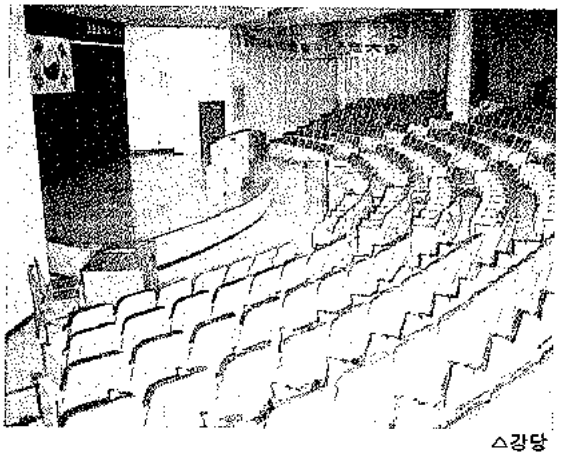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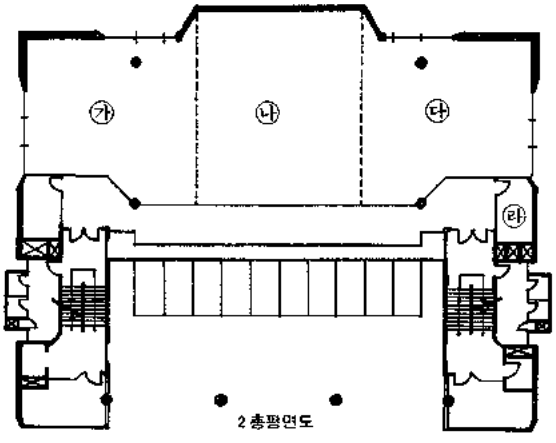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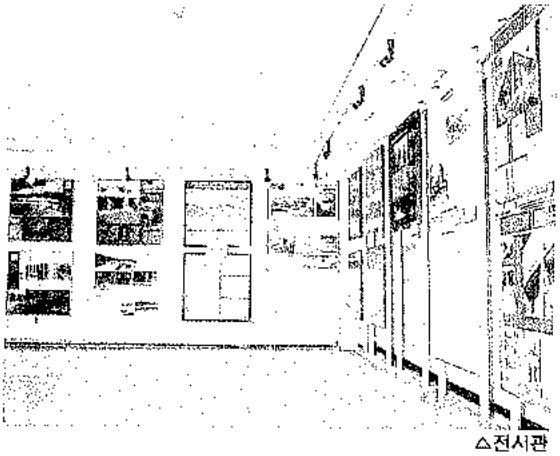

△전시관

●임대부분전용면적 ㉮ 88.98㎡ (26.92평) ㉯ 104.76㎡ (31.69평) ㉰ 88.98㎡ (26.92평)

會員에게만은 實費로 제공하오니 많은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협회 총무부로 연락 바람. (전화) 581－5711～4

현대 건축물에
• 생명력을 불어넣는 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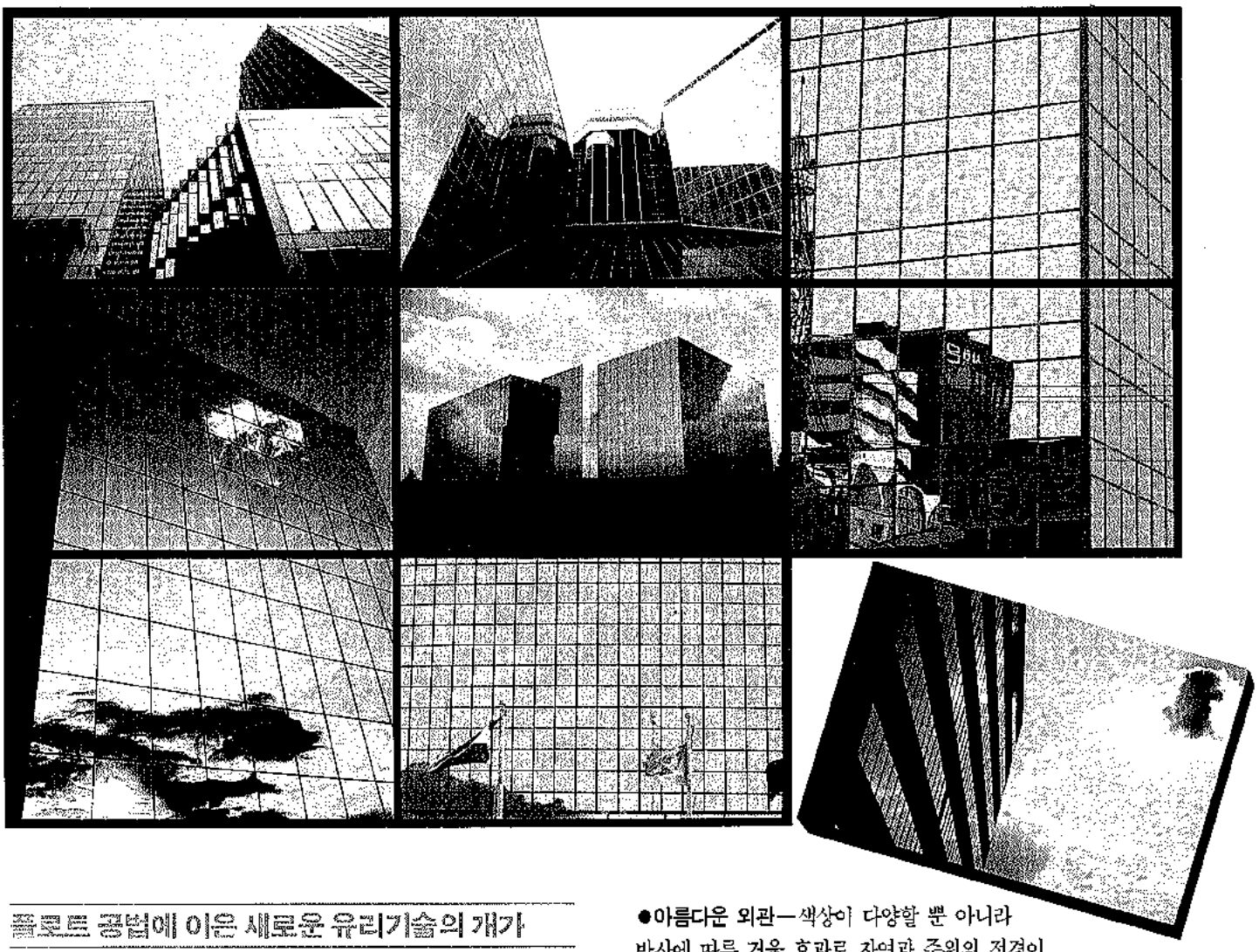

플로트 공법에 이은 새로운 유리기술의 개가

한국의 유리문화를 주도해 온 한국유리는 플로트 공법에 이어 미국의 Airco사로부터 이온 스파트링(Ion Sputtering) 공법을 도입하여 더욱 우수하고 다양한 반사유리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이온 스파트링 공법은 이온의 확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고진공에서 가스를 방전시켜 가속된 가스이온이 금속 타케트를 때려 코팅시키는 공법으로 막의 밀도가 높고 밀착성이 뛰어나며 전체가 균일하게 코팅되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코팅물질에 따라 그 색상이 다양하며 빛이나 열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생동감 넘치는 외관, 쾌적한 실내환경

●**에너지 절약**—태양광선의 투과와 반사를 적절히 조절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냉난방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큽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반사유리는 빛에 대한 성질을 변화시켜 커튼이 없어도 외부시선이나 직사광선에서 실내를 보호하며,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안락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아름다운 외관**—색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반사에 따른 거울 효과로 자연과 주위의 전경이 건축물에 담겨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유리의 반사유리는 태양광선의 반사율이 높은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와 한랭한 지역의 보온을 위하여 개발한 난방보온유리(Low-E Glass)가 있읍니다.

●**용도** — 일반건축 및 고층 빌딩의 창(특히 공기조절 설비를 갖춘 건물에 좋습니다)
— 건물로비 등 대형 스크린창
— 복층유리 등의 가공제품
—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
— 태양열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 실내 보온이 요구되는 곳

새로운 유리문화를 창출하는
韓國유리
HANKUK GLASS INDUSTRY CO.,LTD.

한남화학주식회
본사 : (영업)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43(미원빌딩15·17층) 78
공장 : 경 남 울 산 시 성 암 동 45-25 TEL. 7

설계자와 시공자가 자신있게 선택하는 위생적인 단열재—

청색·녹색 한남스치로폴

4계절 한결같은 쾌적한 주거환경

한남화학의 원료로 생산되는 건축용 단열재 청색
녹색스치로폴은 단열 및 방음,방습효과가 뛰어나
알맞은 실내온도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유해요소가 없는 위생적인 단
열재입니다. 이제 청색,녹색 한남스치로폴로 아늑한
실내 환경을 연출하십시요.

품질보증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건축용 단열재 청색,녹색 스치로폴에는 정부가 인
하는 품질보증 KS표시와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특징

스치로폴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 단열재에 물기가 스며들면 바로 벽이나 지붕을 헐고 다시시공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번 흡수한 단열재는 이미 단열재가 아니고 열을 전달하는 전열체가 되어 버립니다.
- 흡습성이 없는 스치로폴은 한번 시공한 후 안심해도 됩니다.
- 겨울에는 실내보온 효과가 커어나므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여름에는 열차단 효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읍니다.
- 외부 소음을 통제하는 뛰어난 방음성으로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읍니다.
- 운반과 절단이 용이하므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 우수한 원료로 제조되므로 유해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한남스치로폴

한남 스치로폴의 청색, 녹색은 건축용 단열재로, 백색은 일반 포장재로 사용

영업소 : 부산영업소863-3121~4/대구영업소32-0193, 8267/광주영업소362-6856~7/대전영업소22-5129